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내용은 청소년폭력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바탕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대책방안 중에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되었다.

청소년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기본입장에서 인간의 일반적 폭력적 공격성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인간의 공격적 행위는 한 특정 개인의 생득적 성향이나, 인간 상호간 작용과정 속에서 생겨난 주변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의 복합적 원인의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있어서는 부모, 교사, 단속 공무원, 정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총체적인 원인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폭력의 원인제공에 가정과 부모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음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 대책수립에 있어서 인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먼저, 가정, 학교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 있는 폭력문화, 성인들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개별적 책임의식 부재 및 청소년폭력에 관한 신고의식과 신고문화의 부재 등에 관한 철저한 비판적 의식이 대책수립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기초로 가정에서는 구성원간에 화목한 가정 운영 등에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최대한도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입시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된 정부의 청소년폭력 대책을 종합평가해 보면 실효가 적은 편이며 유관 부처간 상호협조체제의 미흡과 업무 중복에 따른 정책 혼선이 많은 것을 지적할 수가 있었다. 정부대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내외 상담기관과 유

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상담활동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지방단위 청소년보호 전담 행정기관의 신설이 요청되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학교-가정-사회단체-유관기관 간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공조(共助)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적인 대책 제안에서는 청소년폭력을 감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속의 유기적 연결시스템을, 즉 지역사회 내의 행정공무원, 경찰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청소년단체, 청소년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시스템 개발과 활동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첫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방향 전환을 주도(主導)하여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며 셋째, 공동 참여 지원체제로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구체적 형성과정 및 방법은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분석, 청소년 포함 구성원의 욕구조사, 청소년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실태조사 및 결과 제시,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열린 사회공간 조성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진행자(coordinator)의 투입이 필요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문성 고려와 계속교육이 있어야 하고 진행결과에 대한 feedback과 청소년폭력예방에 대한 대(對) 국민홍보를 통한 전국적 인식확대와 대중매체의 참여와 여론사업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독일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의 핵심구성원들이 지도자그룹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로서 “컴넷”(ComNet)의 모델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후속사업 및 연구는 제시된 모델의 시범적용과 feedback을 위한 시범적용 결과에 대한 검토·분석이 요구된다.

I. 서론

1. 연구 목적

‘청소년폭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의미는 그 어느 시대보다 심각하다. ‘청소년폭력’은 이제 사회의 여러 현상 중에서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를 위협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청소년은 장차 그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고 이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바로 미래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청소년들의 폭력문화가 그대로 성인사회의 문화로 이어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둡고 불행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남녀 중·고등학교 2,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1996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학생의 57.1%가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40.8%로 가장 높고 다음의 성적(性的) 피해, 금품갈취, 협박 등의 순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특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1994년도의 14.1%에 비해 급속히 증가한 것이 무엇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체적 폭행의 증가와 함께 피해학생의 반수 이상이 교사나(36.6%) 부모로부터(16.6%) 폭력적 피해경험을 당했다는 사실은(김준호 외, 1997:9~32)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원인의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은 폭력의 증가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물론 최근의 급작스러운 청소년폭력의 증가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청소년폭력이 오늘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늘 있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청소년폭력 상황의 추이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거나 청소년폭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청소년폭력을 형사적 차원에서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제도적 규

제강화에 편향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만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청소년폭력이 사회전반에 가져다주는 과장이 단지 청소년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과 청소년폭력의 원인도 청소년 자신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기성사회로부터 기인하는 범사회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우리나라 청소년폭력에 관한 연구가 그 동안 단편적이고 산발적이었으며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형사적 차원의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표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대안적 응급 대책의 소개 내지는 열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청소년폭력에 대한 보다 심도 높은 학술적 원인 규명과 아울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 대책마련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해 청소년폭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서로서 관련 학계와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분야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내용은 이미 과제의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청소년폭력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바탕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대책방안 중에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되었다.

먼저 청소년폭력에 대한 원인분석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청소년폭력의 개념정립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청소년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인간의 성향 중 가장 원초적 성향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폭력성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을 역사적 고찰과 그간의 실증적 자료분석을 통해 조명해 본다.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향 일반에 관한 고찰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진 후 인간의 성장과정 중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폭력에 관한 고찰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폭력의 개념정립이 시도되고 확정되며 이러한 청소년폭력의 개념정립을 바탕으로 청소년폭력의 원인분석에 착수하였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의 청소년폭력 원인분석에 있어서 주로 피해자적 입장에서 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있어 왔던 것을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관련된 부모, 교사, 단속 공무원, 정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총체적인 원인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청소년폭력의 대책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이해·조사·분석·비판된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근거로 이러한 원인제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도로서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책은 그 내용의 초점이 현 시대와 현 사회, 그리고 현재의 우리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근간으로 정부, 학교, 가정, 언론, 제도, 유관기관 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소년폭력에 대한 치료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연구함으로써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책적 제안에서는 청소년폭력을 감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속의 유기적 연결 시스템을, 즉 지역사회 내의 행정공무원, 경찰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시스템의 개발과 활동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의 개발도 최종적으로 시도하였다.

이상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진의 집필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은 이민희가 집필하였다. 단, 연구방법 중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부분은 이춘화가 집필하였다. 제2장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이민희가 집필하였다. 단, 청소년기의 폭력 중 “청소년기의 발달심리학적 특성” 및 “청소년기 폭력의 사회환경적 원인” 부분은 이명숙이 주로 집필하고 이민희가 보완하였다. 제3장 “청소년폭력실태의 현황 및 평가”는 이춘화가 집필하였다. 단, “외국의 청소년폭력실태” 중 “일본”은 이춘화, “미국”은 정희옥이 집필하였다. 제4장 “청소년폭력대책의 현황 및 평가” 중 “청소년폭력대책의 현황분석 및 평가” 부분

은 이명숙이 집필하였고, “청소년관계자 의식조사 결과분석” 부분은 정희옥이 집필하였으며, “외국의 청소년폭력 대책사례” 중 “일본”은 이춘화, “미국”은 정희옥이 집필하였다. 제5장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네트워크 개발”과 제6장 “요약 및 결론”은 이민희가 집필하였다. 설문지는 이민희가 초안을 작성한 후, 이명숙, 이춘화, 정희옥의 제안을 일부 추가하여 완성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폭력에 관한 학술적 체계를 갖춘 기본서로서 관련 학계는 물론 실천영역에까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제인 청소년폭력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연구내용의 각 부분의 성격에 따라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각 부분은 가능한 한 외국의 자료들을 비교 연구하여 최대한도로 연구내용과 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폭력의 주제와 근접한 학문일 수 있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인간학, 역사학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적의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부분에서는 주로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일반적인 인간의 폭력성과 그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해석학적(*historical-hermeneutical*) 접근을 시도하여 인간의 원초적 폭력성향과 시대적 추이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청소년폭력의 개념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기초작업 위에 계속되는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폭력의 개념이 주로 발달심리학적, 심층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청소년폭력과 관련된 생득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분석적(*empirical-analytical*) 자료를 종합해 정립하려고 시도했다. 이어서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의 작업 위에서 고찰된 청소년폭력의 생득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서 먼저 인간

의 폭력성향이 인간의 원초적 성향이라는 관점에서 가치판단이 없이 가능한 한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판적-합리주의적(*critical-rational*) 방법의 演繹的 反證(*falsification*)을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득적 요인과 관련된 인간의 원초적 폭력의 성향이 행위로 표출된 것에 대한 원인의 규명과 판단은 피할 수 없고 이는 가치판단의 척도에서 비판적(*critical*) 방법을 통해 주로 폭력의 원인제공 대상인 사회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 가치관 등의 이데올로기가 비판적으로 고찰되었다.

청소년폭력의 대책에 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연구방법은 역시 우선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을 문헌연구를 통해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하면서 그간의 경험-분석적 방법을 통해 조사·연구·개발되었던 대책들의 실효를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을 받고 이를 통한 기존대책의 비효율성을 가려내고 그의 원인을 비판적 방법을 통하여 고찰하는 한편, 독일의 사례를 기초로 연구하며,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새로운 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기존 대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관련공무원 900명을 표집하여 1997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실시는 학부모 및 교사의 경우 중·고등학생 모집단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실시하였는데, 학부모조사는 학생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지도사는 1995년부터 1997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공무원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직원, 소년원 직원, 경찰, 서울시 및 각 구청의 청소년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서울시 및 구청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직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1〉 표집방법

표집대상	표집대상자 구성	표집 수
학부모	-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모집단의 교급 및 계열별 학생 수 와 학교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6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해 학생의 부모 1인 이상 300명 - 중학생의 부모 : 150명 (2개 학교 남녀학생 부모 각 75명씩) - 인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 100명 (1개 학교 남학생부모 50명·2개 학교 여학생부모 50명) - 실업계 고등학생의 부모 : 50명 (1개 학교 남학생 부모 25명·1개 학교 여학생부모 25명)	300명
교 사	- 학부모조사 실시 6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대상 150명 - 중학교 교사 : 80명 - 고등학교 교사 : 70명	150명
청소년 지도사	- 1995년~1997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취득자 300명	300명
관 련 공무원	- 현재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150명 - 청소년국 직원 : 20명 -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 : 20명 - 소년원 직원 : 40명 - 경찰 : 40명 - 서울시 및 각 구청 청소년담당 직원 : 30명	150명
계		900명

회수된 설문지는 675부이고 그 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5부를 제외한 670부에 대하여 SPSS/WIN(ver. 7. 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3) 응답자 특성

분석에 앞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670명으로 학부모집단이 43.0%, 교사집단이 22.4%, 청소년관련공무원집단이 22.1%, 청소년지도사가 12.5%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집단별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경우는 남자가 33.3%, 여자가 66.7%로 어머니가 응답해 준 경우가 아버지에 비해 두 배가 많았다. 교사,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거의 절반씩 고르게

〈표 I-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 명)

집 단	성별		평균연령 (세)	청소년관련업무 평균재직기간 (년)	직업
	남자	여자			
학부모	33.3 (95)	66.7 (190)	44.12	-	43.0 (288)
교 사	49.3 (74)	50.7 (76)	42.38	14.28	22.4 (150)
지도사	46.4 (39)	53.6 (45)	38.40	8.42	12.5 (84)
공무원	66.2 (98)	33.8 (50)	37.08	5.50	22.1 (148)
전 체	45.9 (306)	54.1 (361)	41.40	9.58	100.0 (670)

응답하였고, 청소년관련공무원의 경우는 남자가 66.2%, 여자가 33.8%로 학부모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별 평균연령은 학부모가 44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사 42세 청소년 지도사 38세, 청소년관련공무원 37세의 순이다.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청소년 관련업무 재직기간은 교사가 14년, 청소년지도사가 8년 반, 청소년관련 공무원이 5년 반 정도이다.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표집한 학생집단의 특성은 〈표 I-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

〈표 I-3〉 학부모집단의 자녀특성

(단위 : %, 명)

구 분		남자	여 자	전 체
교 급	중 학 교	50.7 (73)	49.3 (71)	50.0 (144)
	고등학교	49.3 (71)	50.7 (73)	50.0 (144)
계 열	인 문 계	49.5 (48)	50.5 (49)	67.4 (97)
	실 업 계	48.9 (23)	51.1 (24)	32.6 (47)
전 체		50.0 (144)	50.0 (144)	100.0 (288)

〈표 I-4〉 공무원집단의 직업특성

(단위 : %, 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시·구청 청소년담당과	42.9 (9)	57.1 (12)	14.2 (2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85.0 (17)	15.0 (3)	13.5 (20)
청소년보호위원회	60.0 (12)	40.0 (8)	13.5 (20)
소년원	56.0 (28)	44.0 (22)	33.8 (50)
경찰서	86.5 (32)	13.5 (5)	25.0 (37)
전 체	66.2 (98)	33.8 (50)	100.0 (148)

을 절반씩 표집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인문계의 비율을 실업계의 3분의2 정도로 표집하였다. 또한 교급 및 계열별로 성별은 절반씩 표집하였다.

공무원집단의 표집 특성은 〈표 I-4〉와 같다. 소년원 종사자가 33.8%로 가장 많고, 경찰이 25.0%, 시청 및 구청의 청소년담당직원 14.2%,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이 각각 13.5%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연구방향

이 연구의 큰 기본방향은 연구의 제목이 말해 주듯이 청소년폭력에 관한 원인의 정확한 규명의 시도와 이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적·실천적 연구보고서로서 학계와 실천영역에의 발전적 기여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방향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연구들과의 차별성과, 또한 청소년폭력의 연구에 관한 기본적이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청소년폭력의 원인 부분에서는 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폭력을 청소년비행의 일부로만 간주하여 형사적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 연구의 방향이 소극적이거나 미시적 차원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청소년폭력의 원인분석에 있어서 지나치게 학교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청소년폭력이 교육적 문제라는 의미로 축소 인식되어 사회문제라는 범국민적 인식이 약하여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마련도 그 범위와 방향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폭력의 원인분석을 거시적으로 인간의 생득적 욕구와 주변환경과의 갈등에서 청소년폭력이 야기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들의 종합적 이해와 분석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청소년폭력 대책에 관한 연구 부분에서는 이러한 원인 부분의 미흡한 연구방향의 결과로 인하여 주로 청소년폭력의 대책이 정부 주도로 제시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관한 검증에 대한 연구결과도 미진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청소년폭력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폭력의 대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청소년폭력에 관한 치료와 예방적 대책을 고려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에 두고 우선 기존의 청소년폭력에 관하여 소개되었거나 실행되고 있는 대책들을 종합·분석·평가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이 잘 시행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항시 가동될 수 있는 청소년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부와 사회의 연계라는 큰 범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제시하게 된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보고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의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실천적 사례 등을 고찰하여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기대하여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외국의 이론과 실천들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

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몽하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기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사례에 관한 것은 후속연구로 미루어져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II.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폭력의 본질¹⁾

1) 폭력의 개념

(1) “폭력적 인간”

“폭력적 인간”이란 말을 대할 때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 중에는 특별히 폭력적인 인간이 있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모두 누구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어떠한 생각을 가진다고 꼭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늘 폭력범죄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전자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폭력 뒤에는 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이 항상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인간은 원래 누구나 폭력적 성향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후자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에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그의 생각과 판단의 대상 모두가 선악(善惡)을 가리려고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폭력 그 자체는 나타난 결과로 볼 때에 악(惡)으로 판단될 수 있겠지만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폭력을 했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 인간 전체를 죄악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은 일종의 병적(病的) 현상이고 설사 그것이 타고난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폭력성향은 치료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폭력을 행하는 인간은 때로 선(善)을 행하기도 하며 또 선(善)을 행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이 부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가 경산대 주최 청소년문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폭력적 인간-청소년폭력의 원인을 중심으로”(1998)에서 발췌하였다.

(2) 개념정의의 상대성과 역사성

모든 개념의 정의가 그러하듯 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 개념 정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이고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하려는 대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상의 현상(現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有限)한 존재로서 대상을 이해하는 주체인 인간이 내리는 개념 정의는 극히 주관적이거나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례로 인간 자체의 본질 규명에 있어서 아직도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이 고금(古今)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과 제한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개념 정의에는 절대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성(相對性)을 부여하게 되는데 상대성만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개념 정의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모든 종류의 개념 정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개념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는 여기서 개념 정의의 역사성(歷史性)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역사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개념 정의의 대상이 역사의 시공(時空) 속에서 보여준 그의 현상의 궤적(軌跡)을 이해나 분석 또는 비판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의 본질에 수렴(收斂)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3) 폭력의 개념과 형태

위에서 언급한 개념 정의의 상대성과 역사성을 생각해 볼 때에 폭력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열려져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정의되어 왔거나 있어 왔던 폭력의 형태들을 고찰하는 일은 폭력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작업이다. 이러한 고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인류학자,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의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폭력의 개념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한 폭력의 이론화로 인해 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폭력담당 관계공무원, 교사, 학부모, 청소년 폭력의 가해·피해 당사자들까지 서로 다른 폭력에 대한 시각을 가

지고 공방을 벌이거나 폭력에 관한 실천대책을 제각기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① 폭력의 형태

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폭력의 형태를 먼저 말하게 된다. 그것은 폭력이 그의 모습을 겉으로 나타난 그의 형태들에서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을 형태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여러 형태를 말할 수 있겠으나 Hans Tiersch에 따르면 크게 물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 그리고 구조적 폭력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²⁾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 폭력은 폭력이 직접 신체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이와 관련된 의도적 협박 내지는 신체적 괴롭힘과 신체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으며, 심리적 폭력에는 언어적, 상황적 협박과 강요,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일, 두려움을 주는 일, 좌절감을 주는 일 등이 여기 속하며, 구조적 폭력에는 주어진 주변 사회 및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삶의 위협, 강압적 사회관계 및 제도와 상호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심한 갈등을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물리적 형태의 폭력이 가장 쉽게 이해되고 정의될 수 있는 폭력의 개념으로 말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폭력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직접 육체적으로 행하여진 상해(傷害)로 정의되는 것이다. 우리가 청소년폭력에 관하여 말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리적 폭력의 형태를 가장 먼저 연상하면서 청소년폭력에 관하여 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 또는 사회구조적 폭력도 언급하게 되는 것이다.

② 폭력의 역사

폭력은 인간의 표출행위 중 가장 오래된 행위 중 하나이다. 폭력은 인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원시사회 이래로 힘과 지위를 대변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폭력은 많은 신(神)들과, 지배자, 정복자, 전능자들의 수식어였으며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중세까지 인간 사이에 행하여진 가혹한 신체적 폭력은 강한 힘과 권력을 스스로 시위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묵

2) Tiersch, H. (1995), *Lebenswelt und Moral*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pp. 138~172.

인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드러난 인간 폭력의 잔인성은 현금의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고 비이성적이었던 것이다.³⁾ 그러나 시민사회의 출범과 함께 계몽주의에 이어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국가 선포되고 또한 학교제도의 공교육화 등으로 국민 저변에 폭력에 대한 계몽적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폭력은 그 동안 누려 왔던 힘과 권위를 차츰 잃게 되었고 폭력의 자리에 법이 들어서게 되면서 폭력의 의미는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인간들의 삶의 형태와 가치관 그리고 사회구조 등이 변화하면서 산업사회 속에서의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출현하면서 물리적 폭력은 이제 힘과 권력을 대변하기보다는 이러한 무수한 갈등들을 해소하고 정복하려는 시도로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각 시대 속에서의 폭력의 의미를 추적하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과거에 행해졌던 것까만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거의 폭력이 없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국가와 그의 기관들이 물리적 폭력에 관한 행사를 독점적으로 떠맡아서 시민들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행위를 금하고 또한 시민들도 직접 폭력을 행하기보다는 — 이 경우 자기 자신도 법의 심판을 받으므로 — 법을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의 폭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폭력에 해당하는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아들이 불량학생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직접 신체적인 폭력을 통해 보복을 하기보다는 법에게 맡겨 폭력의 결과에 해당하는 피해만큼의 간접적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행사가 금하여 지게 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폭력에 관한 새로운 양상은 심리적 폭력의 증가이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대신 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인간들 사이의 무수한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인간들이 상대에게 행하고 싶은 변하지 않은 폭력의 욕구는 이제 그의 형태를 바꾸어 심신을 괴롭히거나 심한 모욕을 주거나 상대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등의

3) Elias, N. (1969),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Bd. I (Frankfurt/M : Suhrkamp), pp. 263~283.

심리적 폭력형태로 많이 행하여지게 된 것이다.⁴⁾ 한편 심리적 폭력과 함께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폭력의 형태는 바로 사회로부터의 구조적 폭력이다. 사회가 인간에 대하여 강압적 존재로 등장하면서부터 사회로부터 인간이 받는 많은 스트레스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 속에 있는 많은 법과 제도, 기관들, 관료주의, 행정규제, 위계질서, 부정부패, 그리고 많은 사회구조 및 계층들로부터의 총체적인 구조적 강압으로부터 인간이 받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피해정도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강압을 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방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③ 폭력의 개념

위에서 서술한 폭력의 형태와 그의 개략적 역사 고찰을 통해서 보면 폭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그의 본질 규명에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시공(時空) 속에서 폭력의 형태와 폭력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개념정의의 상대성과 역사성’의 논리가 폭력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에 따라 우리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외부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내면정신에 가해지는 상해(傷害)나 사물의 손상 또는 이러한 상해나 손상을 인간이나 사물에 행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폭력의 개념정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정의한 폭력의 개념은 폭력의 겉으로 나타난 현상(現象)은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폭력이 왜 있게 되는지, 폭력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말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인지(認知)구조의 형성에 관한 논란과도 같이 인간의 폭력이 ‘인간의 자연(自然)’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하는 논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폭력이 R. M. Brown이 주장하는 “한 개인적 특성의 폭력”(a violence

4) 이러한 심리적 폭력의 형태는 특히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심리적 폭력을 통해 상처를 입으면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 극복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 자기파괴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of personhood) 인지⁵⁾, Freud가 말하는 것처럼 “파괴의 충동”(Destructionstrieb)과 같은 인간 공통의 원초적 특성인지에⁶⁾ 대한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에 관한 성급한 개념정의의 시도보다는 이러한 면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폭력의 개념을 열어 놓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폭력의 개념 가운데에 개념의 무분별한 난무를 막고 인간의 폭력성의 근원을 탐사하기 위하여 먼저 인간의 폭력에 관한 대표적 견해들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2) 폭력에 관한 이론⁷⁾

폭력에 관한 이론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공격”(aggression) 성향과 함께 논의된다. 이것은 우리가 폭력은 그것이 주먹으로 행해지거나 말로 행해지거나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서도 인간의 공격성은 폭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폭력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격성향을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⁸⁾ 이러한 인간의 공격성과 공격행위에 대한 이론들은 그것이 한편 생물학적이거나 신체적, 생태학적, 유전학적으로 연구되거나, 다른 한편 환경학적이거나 사회적인 연관 속에서 연구되거나 견해의 일치나 일반성을 가지고 모두

5) Brown, Robert M. (1987), *Religion and Violence* (2nd. ed.)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p. 7 참고. Whitmer, B. (1997), *The Violence Mythos* (New York : State Uni. of N.Y. Press)에서 재인용.

6) Freud, S. (1920). “Jenseits des Lustprinzips,” in Freud, S. (1982), *Psychologie des Unbewußten, Studienausgabe* Bd. III (Frankfurt/M. : Suhrkamp), pp. 213~272와 같은 책의 “Das Ich und das Es”(1923), pp. 273~325 참고.

7) 아래의 폭력에 관한 견해들은 이에 관하여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Bründel, H./Hurrelmann, K. (1994), *Gewalt macht Schule* (München : Droemer Knauer)를 기초로 하여 서술되었다.

8) 윤진도 그의 폭력의 이론에 관한 서술에서 인간의 공격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윤진(1986), “폭력의 이론,” 김광일 편저(1987), 《가정폭력》(서울 : 탐구당), pp. 15~32 참고.

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연구결과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인간의 공격적 행위가 한 특정 개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인간 사회 속에서의 인간 상호(相互) 간의 작용(interaction) 과정 속에서 생겨난 반응(reaction) 이냐가 역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공격에는 여러 가지 동인(動因)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자발적인지, 계획되어진 것인지는 해명되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폭력에 관한 여러 견해도 이와 같은 인간의 공격성향과 관련하여 이야기될 수 있다.

(1) 충동이론과 본능이론

이 견해의 인간학적 입장은 인간은 인간 속에 타고난 공격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대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견해에는 많은 학자들이 고금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른바 서양의 Hobbes나 동양의 순자(荀子)가 주장하였던 성악설(性惡說)이 대표적으로 이와 연관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른바 “악함”이 내재하고 있어서 공격과 파괴, 잔혹의 성향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주장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Sigmund Freud(1856~1939)이다. 프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삶을 향한 충동(Trieb : drive)과 동시에 자기파괴적인 충동이 있다고 생각했다.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사랑[성욕]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이 그것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인간의 충동은 서로 연결되어 섞여져 합해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연결에는 다세포의 삶을 향한 충동체가 죽음을 향한 충동의 단세포를 중립화시켜서 한 특수한 기관의 중개로 이러한 죽음의 충동을 외부로 유도하고 — 근육조직과 같은 기관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 이러한 충동은 파괴의 충동으로서 외부세계와 다른 생물체를 향하여 행사될 수 있다고 하였다.⁹⁾ 또 다른 그의 글 “Das Unbehagen in der Kultur”(1930)에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가정에서 죽음의 충동

9) Freud, S. 앞의 책, pp.307~308 참조.

에 관한 설명이 사랑의 충동보다 더 어려움을 시인하고 이러한 충동은 생체 내부에서 삶을 지향하는 사랑의 충동을 왜해시키려 일하고 있지만 그 중의 어떤 부분은 외부로 공격과 파괴의 충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충동은 삶을 향한 충동에 강압적으로 스스로 봉사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외부로 유출되는 충동을 억제하게 되면 자기파괴의 경향이 상승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이러한 현상의 실례를 인간의 학대(虐待) 성욕도착증(*sadism*)과 피학대(被虐待) 성욕도착증(*masochism*)으로 설명하였다.¹⁰⁾ 하지만 프로이드 자신도 이러한 자기 견해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이후의 정신분석학자들도 프로이드의 죽음의 충동에 관한 가정을 임상의학적(臨床醫學的)으로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비판을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심층심리학(深層心理學) 전반에 대한 비난의 시각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심층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그의 무의식적 욕구의 충동에 관해 스스로 알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충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행위도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인간의 공격이나 폭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회피의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있을 법한 비난의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¹¹⁾

또 다른 이론은 인간과 짐승의 행동을 비교하여 나온 결과에 대한 견해로, 여기서는 인간이나 짐승은 공격에 대한 본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자기보호나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거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한 본능으로 일반적으로 생(生)에 대한 적응의 욕구로 이해되고 있고, 대표적인 학자로는 Konrad Lorenz를 들 수 있다. Lorenz는 Freud의 비(非) 생물학적인 정신분석학적 가정을 거부하고 그 대신 인간의 종족보존의 창조적인 공격충동의 기능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고무적인 전투본능은 인류의 정치와 사회를 결정한다고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까지 하였다.¹²⁾

10) Freud, S. (1930). "Das Unbehagen in der Kultur," in Freud, S. (1982), *Fragen der Gesellschaft, Ursprünge der Religion, Studienausgabe* Bd. IX(Frankfurt/M.: Suhrkamp), pp. 246~247 참조

11) Hacker, F. (1971), *Aggression* (Wien-München-Zürich: Verlag Fritz Molden), p.113 참조

(2) 정신분석학적 이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의 ‘죽음의 충동’이나 ‘파괴의 충동’을 통한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가정보다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될 수 있는 공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견해는 인간의 공격행위를 공포와 불안 또는 실망의 표출,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공포나 협박을 통제하여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간주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상태는 공포나 협박의 강도가 높아질 때에 이러한 상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자유로운 평정(平靜)상태를 유지하려는 회귀적(回歸的)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는 강한 폭력을 수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포나 협박으로부터 순간적으로 해방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새로운 폭력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키가 유난히 작은 한 학생이 가정에서도 막내로, 거칠고 엄한 형들에게 매맞고 시달리며, 학교에서도 키가 큰 학생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해 스스로 쓸모 없다고 여기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주먹질을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학생일 것이다. 이러한 자기주장적인 공격적 공포해소 방법은 또 다른 폭력의 위협을 야기하고 공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무력한 학생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폭력으로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더욱 폭력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좌절(frustration)의 상태에 빠지게도 되는데 J. Dollard 등에 의해 주장된 좌절-공격이론에 따르면 좌절은 위축·우울·환상 등의 병적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공격행위를 의식적으로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¹²⁾ 즉 좌절을 통해 여러 행동이 표출될 수 있지만 그것이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폭력 행사자의 순간적인 감정의 상태나 교육경험, 개인의 행동습관에 따라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2) Lorenz, K. (1963), *Das sogenannte Böse* (Wien : Dr. G. Borotha-Schoeler Verlag) 참고.

13) 윤진, 앞의 책, p.18 참조.

(3) 학습이론

인간의 폭력이나 공격행위의 또 다른 견해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공격적 행위도 마찬가지로 배워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대전제가 말해 주는 중요한 점은 폭력이나 공격행위가 인간 스스로의 원초적 성향이 아니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주변으로부터 배워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행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교육학이론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교육학적 학습이론 가운데에 폭력이나 공격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매개체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그로부터 제시된 모델을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이다. 교육에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많은 교육적 모범상(模範像)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행했던 모범적 행위는 모델이 되어 학생들에게 모방을 통한 학습으로 주입되어 배워지게 되는 것이다. 학습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모방을 통한 행위의 습득은 강화나 통제에 의하여 권장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칭찬이나 벌과 같은 제재(制裁)를 통한 학습과정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즉 칭찬이나 제재의 강도에 따라 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한 제재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공격적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심지어는 모범상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그와 상반되는 폭력적 모델을 모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모범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 가운데에는 영화나 TV 등의 대중매체 속의 폭력물을 즐기고 그 속의 주인공을 모방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종종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배워진 폭력적 행위가 행사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러한 행위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많게 되는 것이다.

(4) 아노미이론

지금까지의 폭력의 원인에 대한 견해들은 대부분 폭력이 인간에 내재하는 본능적 욕구나 충동에 의해 기인하거나 또한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외부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밖으로 표출되는 행

위로 주장되어졌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의 폭력성향은 인간의 자연으로부터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도 기인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운 논제이고 이 가운데에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가 아노미(anomie) 이론이다. ‘아노미’란 원래 Emile Durkheim 이 그의 《자살론》(1897)에서 무법상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anomia*를 인용하여 자살의 사회적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회적 제(諸)조건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전통적인 사회규범이 해체되고 사람들의 욕구나 행위가 사회화되지 못하면서 방종(放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적 사실은 전통적인 사회의 규범이나 법칙과 인간 개인들과의 소외(疏外)이다. 이러한 소외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여러 행위 중 하나는 개인이나 사건의 행위가 한 사회의 규범과 시스템, 그리고 법칙들과 양적, 질적 차이를 보일 때 일컫는, 이른바 인간의 ‘일탈(逸脫) 행위’(deviant behavior)인데 공격이나 폭력행위도 하나의 일탈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행위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라는 판단이 질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규칙들을 위반했는가와 결과에 따라서만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 사회적 통제 이론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사회적 통제이론은 인간의 공격과 폭력행위는 사회적 통제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거나 조장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특히 이 이론은 어떠한 한 행위가 환경의 영향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없는 고정행위로 만들어져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출발한 이론인데, 예를 들면 한 인간이 그의 타고난 자연에 의해서이든지 또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이든지 공격적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 이 때에 주어지는 사회적 통제가 욕설이나 비난 또는 다른 수용하기가 어려운 처벌일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적 행동을 강화하여 이러한 공격적 행위를 제재하려는 대상에게 더욱 거부감과 공격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견해이다.

2. 청소년기의 폭력

1) 청소년폭력의 개념

(1) 청소년폭력의 양면¹⁴⁾

“청소년폭력”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청소년문제,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요즘의 청소년폭력은 학교 안팎 주변의 “학교폭력”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집단이 한 개인에게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피해학생은 두려움, 수치감, 모욕감, 소외감 등의 정서적, 심리적 변화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해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의 정도와 본인의 기질에 따라 분노, 공격성, 우울증, 대인(對人) 공포증, 학교 기피증, 가출,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도피의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폭력의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피해학생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며 그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치료, 그리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대책 등을 분주하게 준비하게 되고 가해청소년을 찾아내 형사처벌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 피해청소년과 같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청소년폭력의 예방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에 폭력을 행사한 가해청소년도 피해청소년과 동일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가해청소년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청소년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왜 가해청소년은 동료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공격적으로 폭력으로 몰고갔는가, 그의 공격성, 폭력성은 병적(病的) 현상은 아닌가, 병적이라면 그 또한 판단되거나, 정죄되지 말고 먼저 치료되고 보호되어야 하지 않은가, 혹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기성사회가 가해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끔 조장하지는 않았는가, 혹

14) 이민희, 위의 글(1998) 참조.

은 직접 가해청소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했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우리 인간 모두는 원래 가해청소년과 같이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언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청소년폭력문제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가해청소년의 변호를 위해서, 즉 어디로부터 폭력의 충동과 행위가 있게 되었는가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생각해 봄으로써 가해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예방과 치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청소년폭력의 개념

① 청소년폭력의 역사

위에서 서술한 일반적인 인간의 폭력에 대한 개념은 폭력의 형태와 그의 개략적 역사 고찰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공(時空) 속에서 폭력의 형태와 폭력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폭력에 관한 개념의 정의는 쉽지 않으나 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고찰을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대상(對象)에 관한 본질의 규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게 되는 대상의 무수한 현상(現象)들의 일별(一瞥) 속에 내재하는 실재(實在)들이 수렴(收斂)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개념도 그의 본질규명을 위하여 역사적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아래의 Edward Shorter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역사적 고찰은 이체로운데 이를 통해 청소년폭력의 개념에 가까이 가 보기로 한다(Shorter, 1988:45~51).

Shorter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이해는 앞서 말한 충동이론과 본능이론에 가깝다. 그는 청소년, 특히 남성 청소년들에게는 성장호르몬의 욕구로 활동성이 높아지고 성적(性的)인 공격욕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찍이 고대(古代)사회로부터 사회의 안정된 제도의 운영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를 극복하려는 이성적(理性的)인 사회적 통제의 메커니즘이 있어 왔다고 한

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의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청소년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밀접한 관계는 급속히 변화되고 전통적 통제의 메커니즘이 와해되면서 청소년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Shorter는 이를 시기적으로 전통적 시기,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누어 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A. 전통적 서구 사회

Shorter는 종교개혁이 있었던 16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를 “전통적”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는 가정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통제하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모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Shorter에 따르면 이 당시 가족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가정의 조화가 최우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각 가족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사회의 문화에 대한 책임이 더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주로 마을 단위의 “남성문화”가 지배적인 시기여서 가족 중 부부간의 결속이 약했고 이성(異性)으로서 부부간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가족생활이란 것도 유산의 상속이나 가문의 명예를 중시했던 시기다. 남자 청소년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의 중요한 정서적 소속감을 가정에서 찾지 못하고 마을에서 같은 또래 그룹의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깊게 고착되어 있었다.

Shorter가 소개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유리(遊離)된 삶을 나타내는 사례들을 보면 스웨덴마을 청년들이 마을처녀 집을 밤에 방문하여 처녀를 범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규율의 행사를 치르면서 스스로 성적 욕구를 다스리며 공동사회적 질서를 훈련하는 것이나, 마을에서 높은 위치의 어른이 어린 처녀를 성적으로 범하면 그 어른의 집 앞에서 마을 청소년들이 매일 밤새도록 나팔을 분다든지, 프라이 팬을 두드린다든지 하여 소란을 떨어 그에게 마을을 결국 떠나게 하는 엄격한 성적 도덕이 지배하게 하여 청소년들 사이에도 이러한 성폭력으로 비롯한 도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폭력들이 집단적으로 배타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성적(性的) 욕구를 승화시키기 위한 허용된 직접적인 폭력 행사의 의례가 있었는데 이는 이웃마을 청소년들과의 종교적인 행사일에 거행된 연례적(年例的)인 싸움으로 여기서 이들은 그들의 공격성을 마음껏 상대방에게 행사함으로써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통적 시기에서는 청소년폭력은 가정보다는 사회에 더 관련이 되어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 양상은 모더니즘시대의 산업화와 국가의 관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전통적 가정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B. 모더니즘(modernism) 세계

Shorter는 모더니즘을 19세기 초엽 도시의 중산층들이 이루어서 196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끝나게 된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관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된 시기로 보고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폭력의 양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먼저 전통적 시기에서 볼 수 있었던 청소년들의 사회제도적인 욕구의 통제와 승화의 형태는 모더니즘에 와서는 수용될 수 없었고 위에서 들었던 사례들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나 경찰권에 의해 점차 제지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Shorter가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는 한마디로 가정이 사회적 통제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농가의 가정이 해체되고 시민사회 속에서의 가정은 이제 이른바 “사랑스러운 보금자리”로 변하게 되어 가족구성원들간의 결속과 친밀도가 높아지고 어린이들은 가정의 중심이 되었고, 특히 어린이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린이의 성장과정과 사회화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특히 서로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 복종을 강요하는 관계가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착한 모범청소년이 되어야 했고 자기에게 헌신한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상과제가 심리적으로 깊이 점유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Shorter에 의하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는 전통적 시기의 또래 사이의 공동사회적 통제보다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대신 부모 사이에서의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죄책감을 넣게 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이 시기에는 청소년폭력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차단되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성폭력이나 패싸움, 혼전 성경험들이 이 시기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더니즘의 가정들은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를 맞으면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청소년폭력은 급증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C.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가정의 등장

Shorter는 1980년대에 와서는 앞서 언급한 시기의 또래 공동체사회나 부모와 자녀가 밀착되었던 가정이 청소년들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마을 단위의 공동체는 죽어 버렸고, 가정도 이제 스스로의 통제와 규범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Shorter가 말하는 1960년대 이후의 청소년폭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가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부부간의 “새로운” 친밀도가 형성된 사실로 이는 무엇보다 더 밀도가 높은 남녀관계에서 성적(性的) 변화와 형태들에 기인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어린이들의 가정에서의 중요성과 기대 가치는 이차적으로 되어서 “모자(母子)”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한편 결혼과 성적(性的) 생활이 이분화(二分化)되어 혼전(婚前) 성경험이 활발하게 되었고, 개인의 자유로운 성(性) 생활과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와 가치가 높아져 가면서 가정생활의 최고목적이 파트너간 애정의 충족과 개인의 만족이지 자녀들의 행복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 또한 결혼에서 성(性)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면서 이러한 욕구를 서로 충족시키려 하는 실험적 혼전 성관계가 늘어나면서 결혼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도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부부관계와 성적(性的) 만족이 우선된 가정의 변화에서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 버려서 요즘 자녀들에 대한 유산의 상속도 점차 부부들의 노후대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경향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달라진 가정의 양상과 모자의 관계는 어린이들도 느끼게 되고 이들은 일찍부터 그들의 정서적 결속을 그들의 또래 문화 속에서 찾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그들의 통제에 대한 책임은 학교의 상담교사

나 청소년지도사,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 “street worker” 등의 국가에서 위임된 직업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이들의 임무는 청소년들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아발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Shorter는 이러한 사회적 직업인들의 작업결과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시민적 가치관에 사회화시키는 총체적 메커니즘은 이제 와해되었고, 오직 그들의 유일한 행동통제는 그들 또래의 sub-culture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orter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시대에 따른 통제방법이 다를 뿐이고 이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의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② 청소년폭력 개념 이해의 전제조건

위에서 소개한 E. Shorter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역사적 고찰은 청소년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Shorter는 청소년폭력은 인간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타고난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성향은 주변환경에 의하여 어떻게 통제 또는 승화되느냐에 따라 외부로 표출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승화시키는 그의 주변환경은 변하게 되므로 청소년폭력의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결국 한 시대적 청소년폭력의 양상은 그 모습만으로는 청소년폭력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시공(時空)의 연장선 속에서 고찰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Shorter는 청소년폭력의 이해는 이러한 시공 속에서 더욱 폭넓게 이해되어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청소년, 가정, 사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가정과 청소년폭력의 관계는 중요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고¹⁵⁾ 또한

15)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III장 참조).

사회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폭력 양상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Shorter의 견해는 우리의 사회발전과 그에 따른 가정과 청소년폭력의 증가 양상을 대비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성공한 산업사회의 모델로 평가되는 우리 사회는 많은 가정적,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대도시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과 시민생활은 전통적인 농촌의 공동체 삶을 파괴하고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기회주의를 낳았으며 이러한 가운데 수세기에 걸쳐 변화한 서양과는 달리 불과 삼십 년만에 이룩한 이른바 경제기적은 부모세대의 자식들에 대한 전통적 과대 기대와 최첨단의 서양문화를 피부로 접촉하고 있는 신세대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유리하고 있으며 게다가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적 이기주의 형태의 잔재인 우리의 대학입시제도는 표류하는 이들의 관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직 결혼과 성(性)에 대한 모델은 서양에 비해 다행히 덜 급진적이지만 이도 우회적인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서양보다 덜하지 않을 것은 볼을 보듯 확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폭력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도 이러한 우리의 지역사회 내 사회, 가정, 청소년들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전제를 통해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③ 청소년폭력 개념의 분류

위에서 말한 청소년폭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청소년폭력의 개념에 접근을 한다면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폭력의 개념’이 외부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내면정신에 가해지는 상해(傷害)나 사물의 손상을 가져다 주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폭력의 현상(現象)으로부터 결과적 측면에서 정의된 폭력의 개념이고 이 밖에도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몸짓]” 형태의 폭력이나 무기소지와 같은 “폭력 전(前)단계”도 넓게 보아 행위 자체나 행위의 가능성 측면에서 보아 폭력의 개념 범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앞서 말한 공격성과 폭력은 폭력에 대한 이해나 개념정의에 있어서 구

분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Krumm, 1997:65).¹⁶⁾ 이와 함께 폭력이나 청소년폭력의 개념 고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실은 폭력은 “권력행사의 한 형태”이고 폭력은 폭력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적이거나 잠재적이거나 “한 목적 달성”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의도를 관철하기까지는 반대의견에도 부딪히지만, 결국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⁷⁾ 한편 이러한 의도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 행해졌을 때는 “직접적 폭력”이고, 폭력 대상자의 사물에 행하여졌을 때에는 “간접적 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Böttger, 1997:158).¹⁸⁾

D. Olweus가 정의한 학생간의 폭행 또는 희생자 발생에 관한 정의를 보면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다른 학생의 부정적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학생은 폭행 당하고 있거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⁹⁾ 여기서의 부정적 행위는 위협, 조롱, 때림, 발로 찰,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 등의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지만 Olweus는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폭력에 개념정의의 핵심을 두고 있다. 이는 Olweus의 말대로 어쩌다 한번 저질러지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부정적 행위를 제외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정의이기는 하지만, 단 한번의 폭력이 살인을 할 수 있는 사실과 한번의 가벼운 폭력은 다음의 폭력의 예고편이나 습관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폭력의 횡수가 폭력의 본질에 결정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Olweus는

16) 이와 관련하여 공격행동과 공격성을 구분하여 “공격행동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폭력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김준호 외, 1997:26)고 하는 입장이 있으나 이는 공격행위나 공격성과 폭력의 본질적 상이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서술로서, 단지 둘의 차별을 위한 현상(現象)에 대한 인위적인 포장과 같은 개념 정의로 볼 수 있다.

17) Krappmann(1994), Krumm, 위의 책, pp. 65에서 재인용.

18) 이와 관련하여 Olweus는 ‘희생자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직접적 폭력’으로,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그룹에서 고의로 추방하는 식’을 ‘간접적 공격’으로 정의하였다(Olweus/이동진, 1996:25).

19) D. Olweus(1986, 1991). D. Olweus 저/ 이동진 역(1996),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서울 : 삼신각), pp. 23~24에서 재인용.

또한 힘이 비슷한 두 학생이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말을 적용하지 않고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는데(Olweus, 위의 책:25),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폭력이 사실 ‘힘의 불균형’과 앞에서 말한 ‘권력행사의 한 형태’에서 발생하지만, 라이벌인 개인관계나 집단관계에서의 폭력을 보면 둘간의 힘이 엇비슷해도 그의 형태는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전통적 시기의 마을간 청소년들의 싸움에서처럼 폭력이 승화되는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심한 증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힘의 균형상태의 폭행도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그의 보고서에서 폭력에 관한 개념규정을 Elliot Aronson을 재인용하여 “다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격행동을 하는 것”으로의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aggression)과 “폭력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목적인 경우”의 “증오적 폭력”(hostile aggression)²⁰⁾으로 구분한 것 등을 참고로 일반적인 폭설·위협과 같은 언어적·심리적 폭력, 따귀·폭행 등의 신체적·물리적 폭력, 증오적 폭력의 대표적 예로서의 ‘괴롭힘,’ 도구적 폭력의 상징으로서의 ‘금품갈취,’ 그리고 ‘성희롱 및 성폭력’의 다섯 가지 유형의 폭력을 제시하고 있다(김준호 외, 1997:26~27). 증오적 폭력에 관하여는 개념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힌다든지, 사람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증오적이거나 적대적인 청소년들의 폭력이 사실 우리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와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단지 ‘괴롭힘’의 형태뿐만 아니라 신체적·물리적 폭력이거나 심리적·언어적 폭력·성폭력 유형에서도 차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폭력 유형이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장소와 때와 방법 및 대상을 가리지 않고 행하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주변 폭력의 적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과 어린이

20) “hostile”이란 단어의 뜻은 “증오적”이라는 번역보다는 “적대적”(敵對的)이라는 번역이 원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들의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의 유형에 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Shorter가 언급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청소년들의 “주차장 subculture”와 “MacDonalds subculture”는 성인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힘든 일들과 물질적 관심들에 복종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의 성인문화에 대한 거부와 직접적인 개인적 만족만을 목표로 하는 쾌락주의적 가치관과(Shorter, 1988:51) 가정과 학교, 그리고 성인사회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의 결핍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④ 청소년폭력의 개념규정의 요소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인식 대상의 개념정의는 절대적 개념 정의가 어렵다는 의미의 상대성(相對性)의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념정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그의 역사성(歷史性)을 통해 절대적 개념 정의에 수렴해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고찰한 청소년폭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개념정의의 전제조건, 그리고 여러 청소년 개념에의 접근을 통해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어느 정도 현재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서 청소년폭력에 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폭력의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데에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청소년폭력의 유형, 청소년폭력의 관련자, 청소년폭력의 목적, 청소년폭력의 원인, 청소년폭력의 상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A. 청소년폭력의 유형

먼저 청소년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의 분류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폭력, 또한 앞서 언급한 도구적, 증오적 폭력, 그리고 직접적, 간접적 폭력 등의 분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폭력에 관한 여러 분류는 사실 청소년폭력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분류라고 하기에는 부분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고 서로 그 내용과 의미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Böttger와 Olweus의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에 관한 개념정의가 서로 다르듯이 청소년폭력의 어떤 측면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또 분류의 언어적

표현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그 개념정의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나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심리적 또는 인간관계에서 배제시켜 고립시키는 사회적 폭력이며 동시에 Olweus의 의미로 간접적 폭력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청소년폭력의 유형에 따른 청소년폭력의 개념정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소년폭력 개념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유형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청소년폭력이 유형에 관한 언급은 대체로 폭력행사의 방법이나 폭력의 결과에 따른 분류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폭력의 행위와 결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분류하면 언어적, 물리적, 심리적 폭력으로 압축해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신체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의 하위 개념으로, 사회적 폭력은 사회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폭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B. 청소년폭력 관련자

청소년폭력 관련자에 관해서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나 하는 문제이다.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인 한 개인이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이 집단을, 개인이 개인을, 그리고 가장 우려되고 있는 집단이 개인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폭력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들에는 한마디로 청소년간에 행하여지는 폭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成人)이 청소년을 폭행하는 경우와 청소년이 성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도 청소년폭력 개념정의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청소년폭력 문제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 내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청소년폭력을 청소년간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학교 밖을 벗어나거나 청소년들의 폭력대상이 교사나 어린이, 심지어 부모 등 청소년들을 벗어난 경우를 생각한다면 청소년폭력이 단지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폭력행사의 주체가 누구나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청소년폭력의 범주에서 빠지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은 한마디로 대인(對人)과 대물(對物)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행하는 폭력행사라고 할 수 있다.

C. 청소년폭력의 목적

어떤 행위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그 행위의 목적을 밝히는 것은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교육적 행위를 할 때에도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폭력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은 청소년폭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폭력에 있어서는 먼저 청소년폭력이 의도적이었나 혹은 비의도적이었나 하는 분류에 대한 사항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폭력의 처벌에 있어서 결정적인 핵심사항이 되겠으나 청소년폭력의 개념규정에 있어서는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모두 청소년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중요적 폭력’의 경우에서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괴롭힌다든지, 사람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요즈음 점차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 이유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깊이 잠재되어 버린 특별한 시대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 폭력의 의도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신분석학적 표현을 빌려서,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의 애정결핍과 같은 욕구불만이 억압(Verdrängung)되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표출되는 잠재적 의도로 보아서 의식적 의도이건 무의식적 의도이건간에나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았든 안 받았든간에 폭력은 넓게 보아 모두 상대에게 의도적인 것으로, 즉 폭력을 거부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은 어찌되었든간에 의도적인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 폭력의 목적은 폭력의 대상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겠지만 ‘중요적 폭력’의 경우에서처럼 가해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

는 것과 같이 가해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목적은 가해의 의도나 결과보다는 폭력을 통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욕구불만에 대한 보상적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D. 청소년폭력의 원인

청소년폭력의 원인은 그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폭력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폭력에 있어서도 앞서 서술한 인간의 일반적인 폭력성향에 관한 원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생득적(生得的) 원인이거나 환경적 원인으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고 원인규명에 관한 목적도 사실 청소년폭력의 개념규명에 있기보다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수립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청소년폭력의 개념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소년폭력의 원인이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폭력의 목적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로 보아야 하며 이는 앞서 고찰된 폭력의 일반적 이론인 충동·본능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학습이론과 같은 생득적 원인이거나, 아노미이론, 사회적 통제이론과 같은 환경적 원인 등의 여러 이론을 관련적용시킬 수 있으며 단지 청소년폭력 원인의 일반 폭력원인과의 차별성은 인간의 성장과정 중 청소년기라는 특별한 과정과 또 그 시기와 관련된 주변환경에의 관계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에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개념의 관련부분은 이성(理性)보다 감성(感性)이 앞서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며 감정과 들끓는 솟과 같은 성장호르몬으로부터의 충동욕구와 에너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청소년기의 특수한 성장과정 자체가 청소년폭력의 개념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E. 청소년폭력의 상황

청소년폭력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폭력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이와 관련하여 폭력을 ‘권력행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다. 물론 양자간이나 양 집단간에 힘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엄밀한 의미의 폭력이 일어나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청소년들 사이의 실태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힘이 우월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요즈음 청소년폭력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개인이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²¹⁾ 많은 경우가 여럿이 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청소년폭력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상황이 청소년폭력의 개념정의에 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청소년폭력은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⑤ 청소년폭력의 개념

지금까지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청소년폭력의 유형, 청소년폭력의 관련자, 청소년폭력의 목적, 청소년폭력의 원인, 청소년폭력의 상황 등 청소년폭력의 개념 규정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면 “청소년폭력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란 특정한 생득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 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말한다” 라고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2) 청소년기의 발달심리학적 특성

(1) 신체적 특성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의 신체·생리적 특징은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신장과 체중, 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21) 과거의 청소년폭력의 양상을 보면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나, 집단 대 집단의 청소년폭력이 대부분이었고 다수가 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피해학생을 도저히 개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만 한했고 집단이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을 비겁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청소년 또래 문화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력의 발생 건수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는 성적 성숙과 성의식이 달라진다. 남녀 모두 성기능의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남녀간의 신체·외모나 기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2차 성징(性徵)이 나타난다.

신체발달은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발달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갖는다. 즉 신체의 건강 여부, 결함의 유무, 운동능력의 우열 등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내분비선의 발달은 제2차 성징으로 나타나서 남녀의 성차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성적 욕구가 싹트게 되어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접근하게 된다. 성의식의 발달은 커다란 동요를 초래하고,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여 고민과 불안에 쌓이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급격한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은 각종 불안의 원인이 되어 정신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성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수치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신체 각 부분의 불균형적 발달로 인해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부적응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2) 지적·사회적 특성

지적 발달이란 일상생활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지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최고수준에 도달하여, 통찰력·판단력은 물론 사고력을 통한 추상력과 논리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상상력과 철학적 사고의 발달로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지고, 선악과 가치기준에 대한 판단력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지적 세계를 회귀하고 풍부한 미래상을 그리며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꿈꾼다.

청소년기 사고의 특성이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긴 하지만, 현실생활에 기초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관념적·이상적 사회를 동경하는 경향이 강하여 성인기 사고의 특성과 다르다. 즉 청소년기에는 시대 사조의 영향을 받기 쉽고 독선주의와 흑백논리 및 극단적 사상에 빠지기 쉬우며, 경험 및 실증적 기초의 부

죽으로 주위의 감언이설이나 선동에 휩쓸리기 쉽다.

청소년기가 되면 타인이나 외계 사물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감춰져 있던 내면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자아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며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회구한다. 청소년들은 이제까지 의존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 이탈하여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른 독립된 행동을 하려 한다. 즉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 이유기(離乳期)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발달과 독립심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이 줄고 자립적·독립적 인간관계가 가능한 동료집단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집단정체감(group identity)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동료집단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그에 소속되어 소속감을 얻으려고 추구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동료의 관심과 주위에 예민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발전에 유익한 기회로 활용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청소년기는 청소년 자신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친구와 상호대응·수평적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적 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친구에의 의존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독립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아가 성인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청소년 자신의 가치 및 이상과 맞지 않는 기성세대의 가치·제도·관습을 강요당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신적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와 탈출구를 찾아간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극단적 이상주의와 현실부정·현실도피 경향간에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자기부정 혹은 사회부정을 선택하게 된다.

(3) 정서적 특성

청소년기 초기에는 급격한 신체적·성적(性的) 성숙으로 인해 민감한 감정변화와 사소한 외부자극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무엇에 쫓기는 듯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청소년 전기에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판단하여 정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로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정서반응을 나타낸다.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정서가 성숙하여 안정되므로 비교적 이지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행동하게 된다. 정서가 안정되면, 격심한 정서의 표출보다는 자아의식의 고양과 아울러 고독을 즐기는 등 낭만적·감상적 경향을 보이고, 점차 자기도피에 빠지는 일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주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등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간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이 성숙으로의 기초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청소년기의 불안이나 고민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큰 폭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됨으로 해서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요구되며,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기타 적응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될 수 있겠다.

3) 청소년기 폭력의 심리학적 원인

앞서 고찰한 것과 같이 인간의 폭력의 원인을 말하는 이론으로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충동이론과 본능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학습이론, 아노미 이론, 사회적 통제이론을 들 수 있다. 이중 아노미이론과 사회적 통제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들은 대부분 심리학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간의 일반적인 폭력성향과 관련된 이론을 청소년기에 적용해서 사례를 들어 이해하고자 한다.

(1) 충동이론과 본능이론

〈사례 1〉 교사폭행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일찍 귀가하라고 타이르는 교사를 집단 폭행한 하모군(16·J고 1년)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군 등은 지난 10일 오후10시경 김천시 평화동 S오락실 뒷길에서 김천 K고교 체육교사 이모씨(49)가 “밤늦게 배회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이교사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일간신문, 97.06.28).

충동과 본능이론은, 인간은 인간 속에 타고난 공격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대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충동과 본능이론을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먼저 인간은 청소년시기에 이러한 충동과 본능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은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욕구가 가장 많아 넘쳐나는 시기이고 내면적으로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청소년기는 일촉즉발의 휴화산과 같고, 에너지가 들끓고 있는 가마솥과 같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격적 행위들은 꼭 신체적 폭력행위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끼리의 힘겨루기나, 장난에 가까운 격투 등의 자발적인 유희적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 행위는 자기 자신의 강함을 측정해 보려는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카타르시스적 공격행위는 때로는 우발적인 신체적 폭력행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공격행위가 장난의 한도를 넘어서 그 공격의 강도가 심해 상대에게 심한 상해를 가져다 준다는지, 또한 습관적인 괴롭힘의 형태가 되어서 상대의 폭발적 공격을 불러일으켰다는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넘치는 공격적 에너지가 <사례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승화(昇華; sublimation)되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억눌리거나 다른 불만족한 신체적, 환경적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발적인 신체적 폭력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례 2> 자살

고3인 피해자는 98년 6월 30일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였다. 피해자는 하루 전날 평소 그를 괴롭혀 왔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피가 터지자 준비했던 칼로 가해자에게 충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찌르기 전 여러 사람 앞으로 유서를 써 놓았고 피해자의 형의 밑에 따르면 동생은 1, 2학년 때에도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 왔다고 한다. 학교측은 이 문제를 빨리 종결하려고만 하고 검찰에서는 단순 자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사례, 98. 07. 18).

정신분석학적 견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간의 공격행위를 공포와 불안 또는 실망의 표출,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공포나 협박을 통제하여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간주하는 생각이다. 즉 인간의 심리상태는 공포나 협박의 강도

가 높아질 때에 이러한 상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자유로운 평정(平靜) 상태를 유지하려는 회귀적(回歸的) 욕구를 가지게 되어 강한 폭력을 수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견해는 특히 여러 이유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의 유발 가능성으로,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또래집단에서 모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보충을 위하여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2>의 경우 피해자의 자살 이전의 정신을 분석해 보면 장기간 폭력에 대한 공포나 협박에 시달려 오다가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달림의 근원을 파괴하고 함께 자폭하겠다는 심리상태로 가해자를 보복한 후에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다.

(3) 학습이론

<사례 3> 모방폭력

췌군 등은 카지노의 '롤렛게임'과 흡사한 '번호뺑 게임조'를 구성, 길에서 주워온 담뱃갑에 적힌 숫자나 합계가 출석번호와 일치하는 학생을 나머지 학생들이 집단폭행하기로 약속한 뒤 지난달 22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일을 저질러 왔다. 췌군 등은 "지난 연말부터 학교에 이런 놀이가 퍼지기 시작, 학급마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열중하고 있다"며 "담뱃갑으로 지진 것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일본만화책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 흉내 낸 것"이라고 말했다(일간신문, 97.07.02).

인간의 폭력이나 공격행위의 또 다른 견해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공격적 행위를 포함해 배워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학습이론에 따른 견해는 우리가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찾을 때에 자주 거론되는 원인 중 하나인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정 내에서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폭력은 대부분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이다.²²⁾ 그 중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청소년폭력의 환

22) 실제로 지난 96년 김준호 교수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시 전역의 실업계, 인문계 남·녀 중·고등학생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미 피해학생의 반수 이상이 교사나(36.6%) 부모(16.6%)로부터 폭력을 체험했고 또 폭력의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들이 조사 학생 전체의 4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

경적 근원지로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언어적, 신체적인 위협과 욕설, 매질, 구타 등을 익히게 되고, 경험을 쌓아서 학교나 기타 학교 주변에서 배워진 폭력을 다른 대상에게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진 폭력의 경험과 반복되는 현장실습을 통해 청소년폭력의 가해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공격적 행위는 부모들의 공격적 형벌을 유발, 가정 내의 폭력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례 3>의 경우도 비록 만화를 통해서 배웠지만²³⁾ 이러한 모방된 폭력경험은 차츰 습관이 되어 인간의 이른바 “이차적 자연”(二次的 自然)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4) 청소년기 폭력의 사회환경적 원인

청소년 시절에 보이는 폭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청소년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환경 중에서도 청소년의 준거집단(예컨대, 교우집단)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감이나 준거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 등이 중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 개인의 내적 요인과 내적 통제(*internal contro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관계 상황, 아동양육패턴,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규제와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의 연구조사 결과들에서도 청소년폭력 가해자의 80%가 이미 가정에서 피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준호(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청소년폭력》(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pp. 9~32; AGAG (2/1996), *Jugendarbeit Live und in Action* (Berlin : Kupjaj & Prochnow), p. 17 참조

- 23) <사례 3>의 경우는 ‘학습이론’ 이외에도 ‘욕구점화모형’(Cathexes Priming Model)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서술한 충동이론과 본능이론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론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인지적 통제력을 해제한다는 이론으로 주로 유해대중매체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나 청소년들의 성적(性的) 폭력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최충욱 외, 1997: 54~61).

(1) 비행성 교우집단에서의 소속

〈사례 4〉 조직폭력

29일 서울노랑진경철서는 일일 록카페 표를 강매하며 폭력을 휘두른 박모(17, S공고 2년) 군 등 일진회 회원 10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도 역시 '일진회'를 결성, 후배들을 집단폭행하고 2백여 차례 1천5백여 만원을 뜯은 장모(17) 군 등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본만화 '캠퍼스블루스'에서 '일진회' 회원들은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로서 다른 학생들을 '이진'으로 부르며 집단 따돌림(이じめ) 하거나 다른 학교의 일진회와 패싸움을 일삼는다(일간신문, 97. 07. 01).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유대감이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은 아동기를 벗어나서 청소년기에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준거집단이 부모에서 교우로 바뀐다는 학교상황이 청소년의 생활에 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교우집단이 일차적 준거집단으로 자리바꿈한다.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된다는 것은, 초기에 가족과 부모가 가르쳤던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과 행동규범에 대한 순종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찍이 집안에서부터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문제를 야기했던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유사한 비행행동을 하는 교우집단에 심리적으로 소속하게 되면, 교우들의 인정 속에서 초기의 문제행동이 더욱 심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 설명한 사회적 통제이론은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들에는 이러한 비행성 교우집단에 소속하는 것과 같이 그룹행동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공격과 폭력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와 진로선택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부당한 사회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집단으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안에서 폭력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강화하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세워 스스로 폭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룹의 동질성(identity)을 확인하고 또한 그 속에서 상처받은 자기 자신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4〉의 경우도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배척 당하던 청소년이 자기를 받아 주는 비행성 또래집단 속에서 인정받아 더욱 빨리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비행성 교우집

단에 동화되어 폭력을 일삼게 되는 경우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이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교우집단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갖는 건전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소속되는 청소년이 심각한 만성적 비행자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2)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취도

〈사례 5〉 폭행 타살

충남 부여경찰서는 저수지에서 급우를 폭행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이모군(17·B고1년) 등 교고생 3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이군 등은 이날 오전10시경 피해자 이군 등 2명을 학교 복도에서 불러내 반산 저수지에 끌고 가서 보트에 태워 물가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러 수영을 강요했다. 그러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군은 가해자 이군 등으로부터 폭행 당한 끝에 물에 빠져 숨졌고 숨진 이군과 함께 끌려온 김모군(16)은 가까스로 헤엄쳐 나왔다(일간신문, 97.06.28).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기존중감(*self-esteem*)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업성취도이다. 특히 한국적 교육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뒤떨어진 청소년이나 학습지진아는 결국 학교중도탈락자가 되거나 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학업에는 흥미를 못 느끼고 자신의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행위들에 개입할 소지가 높다. 앞서 인간의 일반적 폭력성향을 설명한 이론 중 아노미이론에 의거하면 결국 우리의 학교중도탈락자도 그들의 욕구나 행위가 사회화되지 못하면서 일종의 소외(疏外) 형태로 방종(放縱)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들의 행위가 우리의 사회가 정해 놓은 규범과 시스템, 그리고 법칙들과 양적, 질적 차이를 보여 결국 일탈(逸脫) 행위(*deviant behavior*)에 속하는 공격이나 폭력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비록 폭력행위들은 청소년 각 개인에서 유발되지만, 유발된 경로를 추적하면 가정, 학교, 친구들 그룹, 또래집단들의 관계구조에서, 즉 사회적 환경 속의 여러 관계상황들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회환경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서로가 함께 하는 공동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관계, 행위, 의사가 반복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무력감과 함께 의지할 곳 없는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공격이나 폭력행위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비록 청소년들의 공격과 폭력행위는 그들의 생활환경들이 그들에게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이나 사회적인 성공과 인정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이지만 많은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이나 좌절-공격 이론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빈부의 차이가 심한 사회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이른바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균등하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므로, 예를 들면 직업의 기회나 여가활동의 기회, 소비생활의 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폭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청소년들의 공격과 폭력행위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법칙들이 모두에게 명백하게 수용되거나 인정받아 적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각기 힘과 폭력에 의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기 주장의 공격과 폭력행위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이런 일탈 학생들이 그나마 다니던 학교를 벗어나면 더더욱 반사회적 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사례 5>의 경우를 보면 학생이 수업중인 오전 10시경에 피해자들을 불러내었다는 것은 이미 학교라는 제도에서 일탈된 학생들이고 이러한 행위 속에서 여러 이유와 함께 복합적으로 폭력의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문제 학생의 퇴학을 가급적 억제시키고 학교 내에서 선도하게끔 하는 특별한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것이다.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청소년비행자의 75%는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학업실패, 퇴학 등의 학업문제를 가졌던 청

24) 이러한 ‘아노미 이론’에 따른 청소년폭력의 가능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서 낙오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직업의 기회에서도 사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스스로를 자포자기의 상황으로 빠뜨려 사회와 점점 유리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의 지원을 받는 경제침체로 인한 실직 가정의 증가가 눈 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더욱 폭력 청소년들이 늘어날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

소년들이었다.

(3)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이러한 청소년비행을 심화시키는 원초적 원인으로는 일찍부터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가정의 역할,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행행동의 전조(前條), 이러한 비행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가정의 지도능력 등에 관한 것이다. 수많은 아동심리학연구들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태도나 아동양육에서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차 강조해 오고 있다. 예컨대 영국 런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비행행동의 원인이 되는 가정 내 요인은 부모간의 불화,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따뜻하고 일관성 있는 인간관계의 결여, 부모의 변덕스럽고 비정상적인 양육태도 등을 보고하는가 하면, 미국 뉴욕의 청소년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는 비행아동일지라도 그들의 부모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들의 비행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스웨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Olweus(1980)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즉 남자청소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4가지 요인은 ① 아동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가만히 놓아 두는 허용성, ② 삶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태도, ③ 아동 자신의 공격적 기질, ④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강압적인 권력투쟁 방식 등이다.

Patterson, DeBaryshe, & Ramsey(1989)는 아동이 커서 나중에 비행이나 심지어는 강력범죄까지 저지를 가능성을 어린 아동기에 이미 알 수 있다고 한다. 그가 가장 중요한 비행예측 지표로 제시한 것은 아동의 불순종이다. 부모들은 아동이 부모의 지시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자주 그냥 넘어가곤 한다. Patterson이 아동정신과 병원이나 심리상담소에 만성적으로 맡겨지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분석한 결과, 비행 행동들은 순차적 발전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자주 거짓말하는 행동”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훔치는 행동”이 뒤따라 나타난다. 그런 다음에는 학교 무단이탈과 약물남용 행동으로 발전한다. 청소년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비행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반면에 외면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비행(예컨대, 폭력)은 아동기에 과잉활동성(hyperactivity) 증후를 보이는 아동이거나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아동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결국, 가정 내에서 가족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청소년들은 비행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청소년기 폭력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대책은, 폭력이란 습관적인 것이거나 억압된 감정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성격이 단순하고 자기표현 능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지지해 주고 받아들이 주며 — 정상적인 표현의 경우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표현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습적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신경질적 증세가 없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이 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격성은 하나의 심리적 기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대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우선은 청소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욕구나 좌절감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게끔 안정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조직의 일원인 경우에는 청소년 혼자만을 강압적으로 집단에서 빠지게 하기는 어렵다. 집단의 구성을 알아보고 “그 모임의 목적과 하는 일” 등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판단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집단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그 집단에서 빠져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잘못 보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3. 청소년폭력 원인의 종합적 평가²⁵⁾

1) 인간의 역사적 조건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폭력에 관한 여러 견해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폭력에 대한 이론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크게 인간의 자연이거나 그의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두 가지 견해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위에서 지적한 인간의 폭력에 관한 두 가지 원인을 놓고 볼 때에 한편으로, 폭력의 원인이 인간의 자연에서 기인한다고 하면 폭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연은 원래 고쳐질 수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잠재적 자연을, 즉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성의 결정적 원인이 되는 자연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폭력의 원인이 인간이 접하고 있는 그의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하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간의 사회적 환경조건들이 더욱 나빠지고 있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인간의 자연이나 그의 환경 중 어느 한편이 개선적으로 변화되어도 인간의 공격이나 폭력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인간은 죄가 없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한 명제를 분석하여 나올 수 있는 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해석과 함께 동시에 어떠한 환경도 인간에게 완벽하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죄성(罪性)의 자연도 없이 태어난 한 인간이, 평생 동안 완벽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폭력도 행하지 않고 일생을 마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바꾸어 말하면 청소년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모

25) 이 부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폭력적 인간’(1998)의 글에서 발췌하였다.

든 가해청소년들은 공격성 없는 자연에서 태어났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공격성을 가지게 될 수 없는 완벽한 환경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인간의 조건은 분명 짐승의 조건과 다르다. 인간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자연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이 있다. 인간의 자연적 조건에게는 타고난 “일차적 자연”이 있고, 이후에 습득된 “이차적 자연”이 있다. 환경적 조건에도 “자연적 환경”이 있고, “사회적 환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환경적 조건은 또 제각기 서로에게 주어진 다른 시간과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이 변수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조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적 조건”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어진”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의 실존주의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조건의 역사성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각자 일차적 자연으로 주어진 기질(氣質: *temperament*)이 있다. 이러한 타고난 기질은 각 시대와 장소에서 주어진 서로 다른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태아(胎兒)에서부터 습득된 이차적 자연을 얻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인간의 이차적 자연은 또 다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나선형(螺旋形)의 인간 조건의 생성과정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것이다.

2) 어느 한 가해청소년

여기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한 한 가해청소년이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활발하고, 힘이 넘치는 명랑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평소에 자라면서 주변에서 늘 개구쟁이로 귀염둥이로 불리며 성장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도 그의 기질을 발휘하였고 성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그를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께서, 직장 일로 늘 바빠서 얼굴 뵈기가 힘들었던 아버지만 남겨 놓으시고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후로 그는 차츰 말수가 적어지고, 매사에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 버렸으며 자신감을 잃은 어린이

로 변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재혼하였고, 그는 새로운 어머니에게 내심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대해 주시던 새 어머니는 동생이 생기면서부터 그에게 관심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움까지 얻게 되면서부터 차츰 실수를 하기 시작하였고, 실수가 잦아지자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그는 점점 부모가 자기와 멀어져 간다고 느끼게 되고 소외감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만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점차 학교성적이 떨어지자 학교성적에 대한 부모의 계속되는 꾸지람 속에서 마침내 부모에 대한 공격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의 학교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심한 통제는 그에게 가출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게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그가 늘 거만하고 자기를 깔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학급 반장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 그의 여태껏 눌러 왔던 공격욕구는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오히려 통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마치 그의 잠재된 활발한 기질이 되살아난 듯하였고 거만하게 느껴졌던 반장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자신을 되찾은 듯하였다. 그는 이러한 폭력을 반복하게 되었다.

3) “폭력적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자연은 아직도 정의되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에 대한 정의를 하였지만 아무도 인간의 절대적 자연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자연은 진행중이며 가능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인간이 폭력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다. 인간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에는 폭력적 성향이 잠재하여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인간이 폭력적이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폭력적 성향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묘사한 ‘어느 한 가해 청소년’도 이러한 폭력적 인간의 가능성의 결과이다. 이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폭력적 청소년으로 자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그러나 그는 결국 폭력적 청소년으로 성장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성장과정을 살펴볼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가 반드시 폭력적 청소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 이후에도 그가 폭력적 청소년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폭력의 문제는 가해청소년을 어떻게 처벌하고, 그들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의식과 함께 이러한 청소년폭력은 반드시 예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인간의 잠재적 자연으로부터 인간 사회의 제(諸) 문제를 읽으려 했던 프로이트도 결국 인류의 숙명은 이러한 인류 공동의 삶을 방해하는 인간의 공격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욕구를 지배하는 인류의 문화발전이 어떠한 정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 이러한 프로이트의 말을 우리의 청소년폭력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청소년들의 폭력은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욕구를 얼마나 건전한 청소년 문화로의 승화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우리 시대의 청소년폭력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26) Freud, S. (1930), 앞의 책, p. 270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아인슈타인과의 서신 교환에서 아인슈타인이 인간의 전쟁에 대하여 말하면서 “인간의 자연에는 증오와 파멸의 욕구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인간의 정신을 발전시켜서 증오와 파멸의 정신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프로이트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승화되어 표출된 결과로서의 문화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문화의 두 가지 정신적 특징을 “충동적 삶을 다스리는 지성의 강화”와 “인간의 공격적 성향이 주는 장점과 위험성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Freud, S. (1933), “Warum Krieg?” in Freud, S. (1982), *Fragen der Gesellschaft, Ursprünge der Religion, Studienausgabe* Bd. IX (Frankfurt/M. : Suhrkamp), pp. 271~286 참조.

Ⅲ. 청소년폭력 실태의 현황 및 평가

1. 청소년폭력의 실태

여기에서는 공식통계 및 선행연구에 나타나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청소년폭력 실태를 고찰하였다.

1) 청소년폭력 발생에 관한 공식통계 분석

1996년도 대검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청소년 범죄인 수는 146,986명으로 14세~19세 청소년인구 4,767,230명 중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4,566명으로 0.1%를 차지하고 있고, 폭행, 협박, 감금 등 폭력범죄는 53,165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7: 510, 재구성).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검찰에 적발된 학생 수는 39,883명으로 전체 중·고생 4,517,008명 중 0.88%이고, 구속된 학생 수는 7,842명으로 0.17%를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장관대책회의 자료, 1998). 이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사법절차를 밟게 되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밖에도 교육부에서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자보고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1997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239,242명으로 전체 중·고생 4,517,008명 중 5.3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자료 역시 청소년폭력의 발생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월 평균 폭력피해 학생 수는 1995~1996년도에 100명에서 1998년도에는 58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장관대책회의 자료, 1998).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음의 표들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의 학교폭력 발생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III-1〉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99,301	110,604	108,342	124,244	146,986
강력범	소계	3,324	4,662	6,101	4,349	4,566
	살인	93	116	62	65	69
	강도	2,074	2,762	3,464	2,684	2,840
	강간	1,069	1,696	2,522	1,526	1,599
	방화	88	88	53	74	58
폭력범	소계	36,622	40,380	40,559	47,523	53,165
	폭행·상해	36,369	40,088	40,140	46,696	52,359
	공갈·협박	253	292	388	802	769
	감금·유인 등			31	25	37
재산범	소계	26,073	28,099	30,247	32,338	34,044
	절도	23,455	25,428	26,841	28,616	29,936
	횡령·배임	581	684	921	1,056	955
	장물	694	624	812	739	757
	사기	1,343	1,363	1,673	1,927	2,396
교통 사범		22,875	21,457	23,485	30,808	39,378
기 타		10,407	16,006	7,950	9,226	15,833

자료 : 대검찰청, 1997.

〈표 III-2〉 총 폭력피해 학생 수

연도별	금품 및 폭행 피해 학생 수	
	총 피해 학생 수	월 평균 피해 학생 수
1995년	671,027	55,919(100)
1996년	142,314	11,855(21.5)
1997년	239,242	19,937(35)

*()는 '95 월 평균 피해 학생 수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의 증감을

자료 : 교육부, 1998.

〈표 III-3〉 학교 금별 폭력피해 학생 수

연도별	금품 및 폭행 피해학생 수								
	금품 피해학생 수				폭력 피해학생 수				총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1995년	102,942	270,012	84,367	457,321	48,325	111,433	53,948	213,706	671,027
1996년	24,557 (0.6%)	47,029 (1.9%)	16,708 (0.7%)	88,294 (1.04%)	14,860 (0.3%)	25,364 (1.1%)	13,796 (0.6%)	54,020 (0.64%)	142,314 (1.69%)
1997년	44,548 (1.2%)	81,192 (3.7%)	30,699 (1.3%)	156,439 (1.9%)	26,511 (0.7%)	35,885 (1.6%)	20,407 (0.8%)	82,803 (1.0%)	239,242 (2.9%)

* ()는 전체 학생 수(8,300,994명) 당 백분율, 소수점 두 자리 이하 소거

자료 : 교육부, 1998.

〈표 III-4〉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 결과

구분 학교별	금품 피해			폭행 피해			집단 괴롭힘	
	학생 수		피해액 (천원)	학생 수		피해 회수	피해자 수	가해자 수
	교내	교외		교내	교외			
초등학교	1,314	7,765	22,352.11	1,839	4,572	6,443	495	751
중 학교	2,528	16,089	58,484.06	2,359	6,466	8,693	1,083	1,148
고등학교	981	6,106	60,005.02	1,338	4,013	5,520	367	565
계	4,823	29,960	140,841.19	5,536	15,051	20,656	1,945	2,464

자료 : 교육부, 1998(4.1~6.30).

2) 청소년폭력에 관한 선행 조사결과 분석

여기에서는 청소년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청소년폭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1990년도 이전까지는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폭력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로는 1974년도에 이루어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청소년의 피해실태 조사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의 몇몇 잡

지에서 청소년 불량서클이나 학교폭력에 관한 시론 정도의 논문이 발견된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특히 1995년도부터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청소년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그 해 12월 청소년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1996년도 이후 다수의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물 역시 간단한 연구논문이나 학위논문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청소년폭력의 원인규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수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연구결과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들 청소년폭력에 관한 선행조사는 위에서 살펴본 공식통계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청소년폭력에 관한 연구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준호 외, 1991)의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이다. 1990년도에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5,587명을 대상으로 폭력범죄 피해, 재산범죄 피해, 여학생의 성적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중 폭력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1년 동안 금품갈취, 폭행, 협박 중 한 가지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이 36.1%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그 중 금품갈취가 22.6%로 가장 많고, 폭행이 14.1%, 협박이 15.8%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폭력과 관련하여 1990년대 들어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인 동시에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단순한 실태조사에만 그쳐 아쉬움이 있으며, 이후 같은 연구자에 의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연구 이후 한동안 후속연구가 없다가 1994년에 약간 관점이 다른 연구로서 청소년대화의 광장(김혜숙 외, 1994)에서 ‘매맞는 아이들’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청소년폭력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조사는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484명과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소년원 원생 14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일 년 동안 교내 학생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5.8%였다. 소년원생의 경우는 맞은 경험율이 더 높아 66.2%를 차

지했다. 매를 맞은 주된 이유는 건방진 태도 때문에(22.6%)가 가장 높았고, 매 맞은 부위는 얼굴이나 뺨(45.3%)이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일 년 동안 불량배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1%였는데, 매맞은 주된 이유는 금품갈취를 당하면서(29.6%)가 가장 많았고, 매맞은 부위는 이 역시 얼굴이나 뺨(68.4%)이 가장 많았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비롯해 소년원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대상선정에 비해 표본집단이 너무 작아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 다음해인 1995년도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춘화, 1995)에서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먼저 폭력에 관한 의식에 있어 조사대상 학생들은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동의 86.3%, 기각 3.3%),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학생도 적지 않아(동의 35.7%, 기각 39.0%), 이상(理想)으로는 폭력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결과가 좋을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데에 많은 학생이 동의하고 있으나(동의 55.1%, 기각 19.6%), 한편으로는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동의 23.3%, 기각 51.9%). 게다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경우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크지 않아(동의 38.9%, 기각 27.5%) 일부의 학생들은 폭력 사용을 합리화해서는 안된다고 보면서도 상황에 따라 폭력의 사용을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발생실태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서 금품갈취, 협박, 폭행 등의 폭력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금품갈취’는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생이 53.0%, 가끔 발생한다는 학생이 28.9%, 자주 발생한다는 학생이 18.2%로 나타났다. 중학생(22.3%)의 경우는 고등학생(14.2%)에 비해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협박’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52.2%, 가끔 있다는 학생이 28.2%, 자주 발생한다는 학생이 19.6%이다. 이 또한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이 중학생(23.0%)이 고등학생(16.4%)보다 높았다. ‘폭행’은 단독폭행과 집단폭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단독폭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생이 34.4%, 가끔 있다는 학생이 38.7%, 자주 발생한다는 학생이 26.9%로 다른 폭력유형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중학생(32.4%)이 고등학생(21.5%)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집단폭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생이 55.4%, 가끔 있다는 학생이 31.3%, 자주 발생한다는 학생이 13.3%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과반수 정도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금품갈취나 협박, 폭행 등의 폭력적인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에 비해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이 더욱 높아 학교나 학교 주변의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생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부터 금품갈취, 협박, 폭행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나 학교 주변 불량배가 아닌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내 폭력만을 조사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에는 중학생(34.3%)이 고등학생(21.5%)보다 많았고, 남학생(40.1%)이 여학생(15.8%)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폭력 유형별로는 ‘금품갈취 피해’가 19.1%, ‘협박피해’가 14.5%, ‘단독폭행 피해’가 9.5%, ‘집단폭행 피해’가 3.1% 등으로 금품갈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생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상대로 금품갈취, 협박, 폭행 등의 폭력

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9.4%를 차지해 학생 10명중 1명 정도가 같은 학교의 학생에게 폭력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14.0%)의 가해경험이 여학생(4.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로는 ‘금품갈취 가해’가 4.1%, ‘협박 가해’가 5.8%, ‘단독폭행 가해’가 5.1%, ‘집단폭행 가해’가 4.4%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조사에서 나타난 가해경험 여부에 따른 폭력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즉 조사대상 학생 중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금품갈취나 협박, 폭행을 한 적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나누어 그들의 의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찬성하는 편이 55.0%, 반대하는 편이 7.2%로 대부분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폭력의 사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찬성하는 편이 43.9%, 반대하는 편이 21.0%로 나타나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34.2%만이 찬성하고 있어 비교적 법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찬성하는 비율이 45.6%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20.8%만이 찬성하여 대부분 결과와 관계 없이 폭력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찬성률이 45.6%에 이르고 있어 결과만을 가지고 폭력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결과가 좋을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찬성하는 편이 56.7%, 반대하는 편이 18.1%로 이 역시 결과와 관계없이 폭력의 합리화에 반대하고 있으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찬성하는 편이 38.6%, 반대하는 편이 33.4%로 나타나 결과에 따라 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항에 관해 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반대하는 편인 경우가 62.8%를

차지하고 있고 찬성하는 편은 12.3%에 불과하지만,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반대하는 편이 42.1%, 찬성하는 편이 22.8%로 나타나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폭력이 생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대부분 반대(74.1%)하고 있고 찬성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했으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반대(56.1%)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찬성하는 경우도 18.3%로 나타나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가해를 하는 청소년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으며 지위비행의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경험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폭력의식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지위비행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는 있는 청소년이, 폭력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는 있는 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덜 거부적이고 허용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폭력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폭력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피해 경험과 가해경험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청소년과 가해청소년이 많은 경우 일치하고 있어 일부 폭력적인 청소년들이 서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폭력의식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폭력의 원인규명이나 대책수립이 아닌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쳤고 방법론상으로는 표본집단이 작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해인 1996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준호 외, 1997)의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소 보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1,919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원인, 과정 등을 조사하여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시기로부터 최근 1년 동안 학교주변에서 누군

가로부터 괴롭힘,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의 피해율이 2배 가량 높고,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피해경험이 더 높다. 특히 남자중학생의 피해율이 두드러져 약 75% 이상이 피해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괴롭힘은 조사대상자의 23.1%, 금품피해는 27.6%, 신체적 폭력의 경우는 40.8%, 위협이나 협박은 19.4%, 여학생의 경우 성적 피해는 38.7%가 한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금품피해는 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저녁(28.0%)이나 밤(19.3%) 사이에 놀이 및 유흥장소(18.8%) 또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15.9%)에서 피해를 입는 경향이 많다. 반면, 괴롭힘과 신체적 폭행 및 위협이나 협박은 주로 같은 학교 친구(26.7%)나 선배(10.1%)로부터 일과시간대인 오전(11.4%)이나 오후(25.5%)에 교실 내(55.2%) 및 학교 내(20.8%)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의 원인과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적 훈육이 학생들의 공격성 및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형성을 유리하게 하고, 이러한 태도가 또 다른 대인폭력의 원인이 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교사와 부모로부터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또한 가해경험 역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폭력 피해와 가해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대체로 비행환경이라는 동일한 토대 속에서 배양되고 성장하며 동일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 3분의 2는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 경우 가해 및 피해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현실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과정은 한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입장인 소수의 문제학생들을 가려내어 법 적용과 처벌을 엄중하게 한다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폭

력 피해와 가해가 증충적으로 발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들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가해학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데, 예방의 차원에서는 정서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훈련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강화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이미 가해청소년이 된 경우에는 분노통제 및 공감훈련 등 감정적 치료와 도덕가치교육 및 대인관계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나 심성훈련교육장, 청소년수련교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적인 수준에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새로운 역동적 가족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서비스,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부모와 교사의 연대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사회사업가 도입과 상담지원체계, 교사 자질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는 전문적 상담기관 육성,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대중매체 자율규제, 중도탈락자 지원서비스, 청소년폭력예방방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에 관해 일반적으로만 기술하고 있고 청소년폭력의 대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같은 해인 1996년도에 이루어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상오, 1996)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활동”이라는 연구에서는 기초자료로서 초·중·고등학생 1,633명, 교사 114명, 학부모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 중의 32.4%는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이보다 더 많아 50.0%나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교사는 훨씬 적어 19.3%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해서는 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의 성격문제를 1순위(20.1%) 원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학부모(26.4%)와 교사(25.8%)는 폭력문화·매체의 문제를 1순위로 꼽고 있어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해서는 학생의 경우 놀이공간 확보(18.4%)를 1순위로 들고 있으나, 학부모는 전인교육의 실시(10.7%), 교사는 학교담당 사복경찰·검사제 확대 실시(16.3%)를 1순위로 들고 있다.

또한 청소년대화의 광장(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에서 펴낸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이라는 보고서에는 위의 조사와 같은 해에 실시한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대중소 도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1,53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포함해 총괄적인 청소년의 폭력피해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이 연구와 일치하는 개념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것만 추출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주변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은 29.2%로 이 중 3분의 1이 언어폭력이고 3분의 1은 신체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위협적 분위기를 느끼거나 돈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로 나타나는 정서반응은 ‘너무 화가 났다’가 43.9%,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38.5%, ‘두렵고 무서웠다’가 23.1%의 순이다. 폭력피해로 나타나는 행동반응은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없었다’가 32.3%, ‘학교에 가는 것이 싫어졌다’와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가 각각 27.7%를 차지하였다. 폭력경험 후 이에 대한 대처는 ‘자기 스스로 해결’이 26.6%, ‘경찰에 신고’가 23.7%, ‘부모와 상의’가 18.7%, ‘친구와 상의’가 17.6% 등으로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원치 않아서’가 31.1%, ‘의논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30.6%,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3.1% 등이다. 이 보고서에는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교에서의 폭력대책에 관한 간단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개괄적인 제언에 그치고 있고 조사 역시 실태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기존의 연구결과를 그다지 보완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1996년 10월에 강남청소년회관(최운진, 1997)에서 실시한 “강남구 청소년 폭력실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조사는 강남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응답자 중 17.4%는 지난 일 년 간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4.0%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의 유형은 단순구타(47.9%), 언어협박(25.8%), 금품갈취(23.8%), 성폭행(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학교폭력 발생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은 ‘심각하다’고 보는 청소년이 30.5%,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청소년이 16.7%였고, 실제 학교에서 한해 동안 폭력이 약간 발생(34.4%)하거나 자주 발생(23.0%)한다고 보고 있다. 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응방식은 ‘같이 맞아서

싸운다(34.7%)’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청한다(13.0%)’ 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을 당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청소년(20.1%) 보다는 가족이나 부모님(34.4%), 친구나 선배(30.7%)에게 알리는 청소년이 훨씬 많았다. 이 연구는 강남구라는 특정 지역의 폭력발생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폭력대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1997년 5월~10월 사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안선욱, 1998)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이다. 이 조사는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3,277명과 학부모 1,043명, 교사 3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 학생의 41.3%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피해장소는 학교 안이 35.3%로 가장 많았다. 피해의 유형은 가벼운 상처가 54.1%로 가장 많았으나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7.2%였다. 폭력가해자에 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59.8%로 가장 많았지만,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도 46.6%나 되었다. 또한 같은 학교의 정·퇴학 학생도 10.8%나 차지했고,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는 26.5%, 폭력씨름이 7.4% 등이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9.2%), 다음은 폭력학생(22.1%), 입시위주의 교육(19.5%), 폭력음란매체(15.4%) 등의 순이다.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는 학교의 잘못된 지도를 1순위로 들고 있고, 다음은 피해자의 성격, 입시위주 교육의 순이다.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34.6%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보복의 두려움’(23.6%), ‘피해가 적어서’(21.0%), ‘수치심 때문에’(8.9%)의 순이다.

2. 청소년관계자 의식조사 결과분석

여기에서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관련공무원 등 청소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의 청소년폭력 발생실태에 관한 인식도와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존의 청소년대상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관계자들의 의식을 종합평가하고자 한다.

1) 청소년 폭력실태에 관한 의식

(1) 발생정도

청소년폭력의 발생정도에 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청소년폭력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별로 관심 없다'라는 보기도 제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에 관한 응답률이 매우 낮아(학부모 8명, 공무원 1명) 최종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만으로 통계처리하였다. <표 III-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p < .05$)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학부모로서 43.7%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은 청소년관련공무원(38.1%), 청소년지도사(34.5%), 교사(30.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었으나 이 또한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5> 현재의 청소년폭력 발생정도

(단위 : %)

집 단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늘 있는 일이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43.7	51.6	4.7	277	p=.022
교 사	30.0	60.7	9.3	150	
지도사	34.5	56.0	9.5	84	
공무원	38.1	49.7	12.2	147	

〈표 III-6〉 청소년의 폭력피해 은폐이유

(단위 : %)

집 단	보복의 두려움	알려도 소용없음	어른의 무관심	창피함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71.8	19.7	4.9	3.5	284	p=. 045
교 사	71.3	25.3	0.7	2.7	150	
지도사	61.9	31.0	3.6	3.6	84	
공무원	58.1	31.8	6.1	4.1	148	

비행청소년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경찰이나 소년원 공무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집단의 경우 청소년폭력을 일상적으로 보는 비율도 가장 높았고(12.2%), 학부모가 가장 낮았다(4.7%).

(2) 폭력피해 은폐 이유

청소년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든 집단이 보복의 두려움을 일순위로 들고 있고, 다음은 알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p < .05$)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학부모집단(71.8%)이 가장 높았고, 교사(71.3%), 청소년지도사(61.9%), 청소년관련공무원(5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관련공무원(31.8%)과 청소년지도사(31.0%)의 경우 알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교사(25.3%)와 학부모(19.7%)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어른의 무관심이나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2) 청소년관계자의 폭력실태

(1) 폭력유형

청소년관계자들이 가정 내에서 주로 행사하는 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폭력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전체적인 경향은 위협을 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p < .000$)한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집단의 경우 위협이 31.4%, 체벌이 27.7%, 욕설이 26.0%, 모욕이 14.9%의 순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체벌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사는 위협이 48.6%, 욕설이 23.2%, 모욕이 17.4%, 체벌이 10.9%의 순으로 학생들을 위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욕설이 35.1%, 모욕이 33.8%, 위협이 23.0%, 체벌이 8.1%의 순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모욕을 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고 체벌을 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청소년관련공무원의 경우는 위협이 37.1%, 욕설이 36.4%, 체벌이 13.6%, 모욕이 12.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관계자의 폭력행사의 유형을 종합 정리하면, 각 집단에서 가장 많이 행사하는 폭력유형은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는 위협이고,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관련공무원은 욕설이다. 또한 폭력유형별로는 위협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교사이고, 욕설은 청소년관련공무원이며, 체벌은 학부모, 모욕은 청소년지도사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다른 문항에 비해 조금 많기는 하였으나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상과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들은 가정 내에서 보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관련공무원 등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정의 폭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다.

〈표 III-7〉 청소년관계자의 가정 내 폭력행사 유형

(단위 : %)

집 단	위협	욕설	체벌	모욕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31.4	26.0	27.7	14.9	242	p=.000
교 사	48.6	23.2	10.9	17.4	138	
지도사	23.0	35.1	8.1	33.8	74	
공무원	37.1	36.4	13.6	12.9	132	

(2) 폭력 정도

청소년관계자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지 알아보았다. 모든 집단의 절반 정도의 청소년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끔 폭력을 행사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더 자주 행사하거나 전혀 안 한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p < .000$)한 차이가 있었다.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의 경우 학부모(24.5%)와 청소년지도사(26.3%), 청소년관련공무원(28.4%)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10.7%)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적었다. 또한 같은 경향으로서 자주 행사한다는 비율에 있어서 교사 집단은 30.9%로 다른 집단(학부모 14.0%, 청소년관련공무원 14.2%, 청소년지도사 18.8%)에 비해 두 배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상식적인 것으로서 교사들의 경우 업무상 많은 청소년들의 훈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III-8〉 청소년관계자의 가정·직장 내 폭력행사 정도

(단위 : %)

집 단	전혀 안한다	매일 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4.5	4.3	14.0	57.2	278	p=.000
교 사	10.7	4.7	30.9	53.7	149	
지도사	26.3	5.0	18.8	50.0	80	
공무원	28.4	2.1	14.2	55.3	141	

3) 청소년폭력 원인에 관한 인식

여기에서는 청소년관계자들이 청소년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다섯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충동·본능이론에 따르는 견해

충동·본능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문항의 경우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문항 중 유일하게 집단간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p < .000$)하게 나타났다. 교사집단(동의 71.3%, 기각 12.0%)이 가장 동의하고 있고, 학부모집단(동의 48.6%, 기각 27.1%)이 가장 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강한 동의의 정도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집단(17.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집단(9.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9〉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단위 : %)

집 단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보통	동의 안 하는 편	전혀 동의 안 함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9.5	39.1	24.3	20.4	6.7	284	p=.000
교 사	13.3	58.0	16.7	10.7	1.3	150	
지도사	17.9	45.2	22.6	10.7	3.6	84	
공무원	10.8	55.4	20.9	10.8	2.0	148	

(2) 정신분석학적이론에 따르는 견해

정신분석학적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이나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70% 이상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견해 중 가장 지지도가 높았다. 그러나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강한 동의의 정도에서는 학부모(23.7%)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교사(16.0%)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III-10〉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이나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단위 : %)

집 단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보통	동의 안 하는 편	전혀 동의 안 함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3.7	46.3	17.4	8.0	4.5	287	p=.053
교 사	16.0	61.3	14.7	7.3	0.7	150	
지도사	31.3	48.2	12.0	7.2	1.2	83	
공무원	23.6	47.3	18.9	8.8	1.4	148	

(3) 학습이론에 따르는 견해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 매스컴 등 주변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황을 보고 학습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 문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지도가 매우 높았으나 동의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지도사의 동의율이 69.9%로 가장 높고, 학부모의 동의율이 58.4%로 가장 낮다. 그러나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강한 동의의 정도에서는 지도사(22.9%)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관련공무원(13.5%)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III-11〉 가정이나 학교, 매스컴 등 주변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황을 보고 학습하는 것이다

(단위 : %)

집 단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보통	동의 안 하는 편	전혀 동의 안 함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19.2	39.2	23.8	15.0	2.8	286	p=.305
교 사	21.3	43.3	25.3	9.3	0.7	150	
지도사	22.9	47.0	18.1	10.8	1.2	83	
공무원	13.5	46.6	23.6	15.5	0.7	148	

(4) 아노미이론에 따르는 견해

아노미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입시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게 되어 폭력행동이 유발되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 문항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지도가 매우 높았으나 동의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교사의 동의율이 67.1%로 가장 높고, 학부모의 동의율이 57.4%로 가장 낮다. 그러나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강한 동意的 정도에서는 청소년지도사(20.5%)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관련 공무원(12.8%)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III-12〉 입시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게 되어 폭력행동이 유발되는 것이다
(단위 : %)

집 단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보통	동의 안 하는 편	전혀 동의 안 함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14.8	42.6	23.6	15.8	3.2	284	p=.318
교 사	18.1	49.0	18.1	13.4	1.3	149	
지도사	20.5	44.6	27.7	7.2	-	83	
공무원	12.8	48.6	23.6	12.2	2.7	148	

(5) 사회적통제이론에 따르는 견해

사회적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공격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자신들의 동질성을 찾고자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다소 낮았으나 이 역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보다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고 동의 비율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교사의 동의율이 62.0%로 가장 높고, 청소년관련 공무원의 동의율이 54.1%로 가장 낮다. 그러나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강한 동意的 정도에서는 청소년관련공무원(19.6%)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학부모(15.1%)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III-13〉 공격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자신들의 동질성을 찾고자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단위 : %)

집 단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보통	동의 안 하는 편	전혀 동의 안 함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15.1	42.1	24.6	11.2	7.0	285	p=.086
교 사	18.7	43.3	28.0	6.7	3.3	150	
지도사	19.5	37.8	25.6	13.4	3.7	82	
공무원	19.6	34.5	32.4	12.8	0.7	148	

4) 청소년폭력 발생책임에 관한 인식

(1) 발생책임자

청소년폭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여 〈표 III-14〉와 같이 각 보기별로 1순위만을 분석하였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가해자, 정부, 인간의 폭력본성, 교사, 피해자의 순이다. 이러한 견해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모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에서는 모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피해자의 3분의 2 정도가 가해자로 보고되고 있는 점(김준호, 1997: 16)을 생각할 때, 청소년폭력의 책임자로서 피해자를 가장 적게 들고 있는 것은 청소년관계자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분석된다.

각 보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로는 교사 47.2%, 청소년관련공무원 43.8%, 학부모 42.9%, 청소년지도사 42.5%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로는 교사가 3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소년관련공무원이 34.5%, 청소년지도사가 29.6%, 학부모가 28.7%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청소년지도사가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부모(11.9

〈표 III-14〉 청소년폭력 발생책임자(1순위)

(단위 : %)

집 단	인간본성***	가해자**	피해자	부모	교사***	정부**
학부모	13.8	28.7	3.1	42.9	5.4	11.9
교 사	5.0	38.5	1.4	47.2	0.7	10.0
지도사	5.0	29.6	1.3	42.5	6.3	19.5
공무원	7.7	34.5	2.1	43.8	7.7	5.6

* p < .05 ** p < .01 *** p < .001

%), 교사(10.0%), 청소년관련공무원(5.6%)의 순이었다. 인간의 폭력본성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는 집단간의 차이가 매우 컸는데 학부모집단(13.8%)의 지지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청소년관련공무원이 7.7%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지도사(6.3%), 학부모(5.4%), 교사(0.7%)의 순이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교사집단의 경우 교사의 책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집단의 경우 정부의 책임에 대해 타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대해 보다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발생책임제도

이상 책임자에 대한 질문 외에도 청소년관계자들이 청소년폭력 발생에 가장 책임이 있는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 국가정책의 네 개 보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는 책임자에 대한 질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불안한 가정환경에 책임을 돌리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해한 사회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국가정책의 부재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p < .000$)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부모집단의 경우 불안한 가정환경을 들고 있는 응답자가 57.8%로 다른 집단보다도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 유해한 사회환경은 25.4%, 열악한 교육

환경은 11.8%, 국가정책의 부재는 4.9%였다. 교사집단의 경우는 불안한 가정환경이 53.7%, 유해한 사회환경이 31.5%, 국가정책의 부재가 10.7%, 열악한 교육환경이 4.0%로 역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제도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불안한 가정환경이 41.0%, 유해한 사회환경이 26.5%, 열악한 교육환경이 19.3%, 국가정책의 부재가 13.3%의 순이다. 청소년관련공무원의 경우는 불안한 가정환경이 43.9%, 유해한 사회환경이 35.8%, 열악한 교육환경이 14.9%, 국가정책의 부재가 5.4%로 이 역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5〉 청소년폭력 발생책임제도

(단위 : %)

집 단	불안한 가정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유해한 사회환경	국가정책 부재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57.8	11.8	25.4	4.9	287	p=.000
교 사	53.7	4.0	31.5	10.7	149	
지도사	41.0	19.3	26.5	13.3	83	
공무원	43.9	14.9	35.8	5.4	148	

5) 청소년과 청소년관계자의 인식비교를 통한 종합평가

이상과 같이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청소년관계자의 의식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청소년관계자의 의견과 선행연구에 나타나 있는 청소년의 의견을 비교·분석한 후에 종합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각각 조사도구의 차이가 있고, 이 연구의 조사도구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문항들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향에 대한 비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문항까지 확대하여 이 조사의 각 항목별로 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의 조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폭력의 발생 정도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춘화(1996:34~39)의 연구에서는 폭력의 유형별로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

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의 5점 척도로 나누어 청소년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는데, 폭언의 경우는 가끔 있음 35.5%, 자주 있음 27.8%, 항상 있음 18.9%이고, 금품갈취는 가끔 있음 24.8%, 자주 있음 9.7%, 항상 있음 4.5%이다. 또한 협박은 가끔 있음 24.8%, 자주 있음 10.6%, 항상 있음 5.8%이고, 폭행은 가끔 있음 38.7%, 자주 있음 19.6%, 항상 있음 7.2%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과반수 정도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금품갈취, 협박, 폭행 등의 폭력적인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폭언의 경우 대다수 청소년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도 많았다.

이상오(1996:107)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인식도에 있어 각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부모의 경우 50.0%가 지지하고 있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학생은 32.4%, 교사는 19.3% 만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진(1997:67)의 연구에서는 학원폭력 발생의 심각도에 관해 강남구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심각(30.5%)하거나 매우 심각(16.7%)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발생 빈도는 약간 발생(34.4%)하거나 자주 발생(23.0%)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 세 가지 조사에 나타나 있는 청소년들의 견해는 이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관계자의 의견과는 심각성에 관한 동의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학부모의 43.7%, 청소년관련공무원의 38.1%, 청소년지도사의 34.5%, 교사의 30.0%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심각성 인식도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폭력피해 은폐이유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준호(1997:113)의 연구에서는 폭력의 유형별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괴롭힘을 당하고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53.1%)가 가장 높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5.8%), 보복 당할 것 같아서(14.8%)의 순이었다. 금품갈취를 당하고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36.1%)가 가장 높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6.6%), 보복 당할

것 같아서(18.9%)의 순이었다. 폭행피해를 당하고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40.8%)가 가장 높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3.9%), 보복 당할 것 같아서(10.5%)의 순이었다. 협박피해를 당하고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43.8%)가 모든 폭력유형에서와 같이 가장 높았고, 보복 당할 것 같아서(20.9%),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7.9%)의 순이었다.

또한 안선옥(1998:35)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34.6%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보복의 두려움(23.6%), 피해가 적어서(21.0%), 수치심(8.9%)의 순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 연구의 조사결과인 청소년관계자들의 의견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알리지 않는 이유로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 압도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조사에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학부모집단의 경우 71.8%, 교사 71.3%, 청소년지도사 61.9%, 청소년관련공무원 58.1%의 순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유로 들고 있는 ‘소용없을 것 같아서’에 관한 응답정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들에 비해 폭력피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7:9)의 1996년도 폭력피해 청소년 상담통계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58.3%가 보복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도(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19) 상담자의 경우는 21.9%만이 보복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관계자의 폭력행사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준호(1997:1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와 교사로부터 당한 폭력적 훈육의 경험률을 조사하였는데, 우선 교사로부터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36.6%였고,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53.1%로 매우 높았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경험률은 16.6%로 교사로부터의 경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경우는 여자 고등학생(21.6%)의 경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 연구와는 조사도구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학부모나 교사 모두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긍정하고 있어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 조사에서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의 경우는 학부모 24.5%, 청소년지도사 26.3%, 청소년관련공무원 28.4%, 교사 10.7%로 이밖에는 모두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청소년폭력의 발생책임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윤진(1997:70~71)의 연구에서는 학교, 가정, 사회환경으로 나누어 청소년폭력의 증가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우선 학교관련 요인으로서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40.3%), 학교측의 소극적 대처 및 자세(30.7%), 교사들의 체벌(19.2%)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관련 요인으로서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34.4%), 부모님의 불화와 폭력적 가정분위기(31.9%), 부모님의 무관심(26.0%) 등을 지적하였다. 사회환경관련 요인으로서는 건전한 놀이공간 및 문화시설 부족(54.2%), 폭력매체의 접촉증가(23.5%), 유흥업소 증가(18.8%)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 연구의 조사와는 조사도구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학교, 가정, 사회환경의 책임을 고루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역시 이 연구와는 조사도구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청소년폭력의 책임이 가정, 학교, 사회에 모두 있다는 것을 청소년과 청소년관계자들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상오(1996:110)의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학생의 경우 청소년폭력의 원인으로 가해학생의 성격문제를 1순위 원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학부모와 교사는 폭력문화·매체의 문제를 1순위로 꼽고 있어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선옥(1998:29~30)의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가정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9.2%), 다음은 폭력학생(22.1%), 입시위주 교육(19.5%), 폭력음란매체(15.4%) 등의 순이다.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는 학교의 잘못된 지도를 1순위로 들고 있고, 다음은 피해자의 성격, 입시위주 교육의 순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부모나 가정환경의 책임을 주로 들고 있어 이상오의 조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안선옥의 조사와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교사의 47.2%, 청소년관련공무원의 43.8%, 학부모의 42.9%, 청소년지도사의 42.5%가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집단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불안한 가정환경을 들고 있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57.8%, 교사 53.7%, 청소년지도사 41.0%, 청소년관련공무원 43.9%였다.

이상 이 연구의 조사내용 및 청소년과의 비교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폭력의 발생정도에 관한 청소년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모든 관계자가 심각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고, 청소년폭력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청소년관련공무원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이유로는 청소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렇다는 선행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보복의 두려움을 절대적인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청소년폭력을 바라보는 성인들의 시각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관계자의 가정 또는 직장에서의 폭력행사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청소년관계자들이 위협, 욕설, 체벌, 모욕 중 한 가지 정도의 폭력은 행사하고 있으나 주로 사용하는 폭력유형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는 위협이고,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관련공무원은 욕설이다. 또한 폭력유형별로는 위협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교사이고, 욕설은 청소년관련공무원이며, 체벌은 학부모, 모욕은 청소년지도사였다.

넷째, 폭력행사의 실태에 있어서는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관련공무원 집단은 4분의 3 정도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교사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아 5분의 4정도가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폭력행사의 정도에 있어서는 매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자주 한다는 비율은 교사의 경우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 가끔 한다는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다섯째,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관련된 학술적 이론에 따른 견해에 대한 청소년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대한 지

지도가 가장 높아 많은 청소년관계자들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이나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견해는 매우 적어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폭력의 책임에 관한 청소년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견해를 보면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부모라고 보고 있고, 가해자, 정부, 인간본성, 교사, 피해자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집단별로는 교사의 경우 교사의 책임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정부의 책임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청소년 의견은 가해학생의 성격문제를 1순위로 꼽고 있다.

일곱째, 청소년폭력에 발생책임이 있는 제도에 관한 청소년관계자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불안한 가정환경(학부모 57.8%, 교사 53.7%, 청소년지도사 41.0%, 청소년관련공무원 43.9%)에 대해 절반이상 또는 그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강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유해한 사회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국가정책의 부재 순이다. 선행연구의 청소년 의견도 가정환경의 문제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폭력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관련하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폭력의 발생정도나 보복의 두려움에 관해 청소년관계자인 성인들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청소년 자신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청소년폭력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청소년들을 문제아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둘째, 일정 수준의 폭력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관련공무원,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부모들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자녀나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적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준다. 청소년들은 바로 이러한 가정환경·사회환경 속에서 폭력문화를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성인들은 청소년폭력의 발생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사들은 교사나 교육환경의 책임이 가장 적다고 보고 있고, 청소년관련공무원은 정부나 국가정책의 책임이 가장 적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모와 가정환경의 문제로 떠넘기고 있어 청소년폭력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폭력의 발생은 각 가정의 책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 및 사회전체의 책임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청소년폭력 실태

1) 일본

(1) 이지메

일본의 문부성에서는 전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지메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지메’란 “兒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關する調査”에 따르면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해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발생한 장소는 학교 내외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이하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7: 136~139).

1996년도 일본 문부성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중에서 이지메가 발생한 학교의 비율은 34.4%로,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7.4%, 중학교 51.8%, 고등학교 36.1%, 특수학교 9.6%로 나타났다. 1개교당 발생 건수는 평균 1.3건이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0.9건, 중학교 2.5건, 고등학교 0.9건, 특수학교 0.2건으로 중학교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메의 발생유형은 소학교에서는 ‘놀림·조롱,’ ‘따돌림,’ ‘말로 위협’의 순으로 많고, 중학교에서는 ‘놀림·조롱,’ ‘말로 위협,’ ‘폭력’의 순, 고등학교에서는 ‘폭력,’ ‘말로 위협,’ ‘놀림·조롱’의 순, 특수학교에서는 ‘말로 위협,’ ‘놀림·조

〈표 III-16〉 이지메 발생학교 수·발생 건수

구 분	공립학교 총수(교)	발생 학교 수(교)	발생률(%)	발생 건수(건)	1교당 발생 건수(건)
계	39,849	13,693	34.4	51,544	1.3
초등학교	24,235	6,638	27.4	21,733	0.9
중 학교	10,537	5,463	51.8	25,862	2.5
고등학교	4,164	1,504	36.1	3,771	0.9
특수학교	913	88	9.6	178	0.2

자료 : 文部省, 1996.

통, '폭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놀림·조롱'이나 '따돌림'의 비율이 감소하고 '폭력'이나 '말로 위협'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1996년도에 발생한 이지메 중 91.1%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8.9%는 이후에 계속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지메로 인해 경찰에 보도(補導)된 청소년은 426명이고 건수로는 162건이었다.

(2) 교내폭력

일본의 문부성에서는 전국의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교내폭력에는 대 교사폭력, 생도간 폭력, 학교의 시설·설비 등 기물파괴의 3형태가 있다(이하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7:140~142).

1996년도 일본의 문부성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립 중·고등학교 중에서 교내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비율은 18.9%로서 교급별로는 중학교 17.7%, 고등학교 22.0%로 나타났다. 1개교 당 발생 건수는 평균 0.7건이고, 교급별로는 중학교 0.8건, 고등학교 0.6건으로 중학교의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내폭력 중에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중학교의 경우 1,316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수로는 595개교이고 가해학생 수는 1,431명, 피해교사 수는 1,402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34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수로는 158개교이고 가해학생 수는 256명, 피해교사 수는 244명이다. 학생간 폭력은 중학교의 경우 4,682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수로는 1,463개교이고 가해학생 수는 7,859명, 피해학생 수는 6,094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971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수

〈표 Ⅲ-17〉 교내폭력 발생학교 수·발생 건수

구분	공립학교 총수(교)	발생 학교 수(교)	발생률(%)	발생 건수(건)	1교당 발생건수(건)
계	14,701	2,780	18.9	10,575	0.7
중학교	10,537	1,862	17.7	8,169	0.8
고등학교	4,164	918	22.0	2,406	0.6

자료 : 文部省, 1996.

로는 838개교이고 가해학생 수는 3,553명, 피해학생 수는 2,152명이다. 기물파괴는 중학생의 경우 2,171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수로는 579개교이고 가해학생 수는 2,363명, 피해액은 6,702만엔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수로는 124개교이고 가해학생 수는 272명, 피해액은 194만엔이다.

(3) 폭력범죄

1996년도 일본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형법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는 133,581명으로 동 연령층 인구 중 1.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형법범 총검거 인원 중에서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이다. 형법범죄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강력범죄)은 1,496명으로 형법범 중 1.1%를 차지하고 있고,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조폭범(폭력범죄)은 15,568명으로 형법범 중 11.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형법범 소년은 1990년대 들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1996년도에는 소년인구 자체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만에 증가하였다. 특히 흉악범과 조폭범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7:127~130).

2) 미국

미국에서의 청소년폭력 문제는 한국에서와 같이 또래끼리 혹은 같은 학생끼리 괴롭히고, 물건 빼앗고, 협박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다. 청소년이 살인이나 무장 강도, 강간 등으로 인한 연령별 체포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범죄를 지수범죄(index crimes)와 비지수범죄(nonindex crimes)로 나누고 있다.

지수범죄는 비지수범죄보다 심각한 범죄를 나타낸다. 지수범죄(*index crimes*)로는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악성폭력, 절도, 도둑질, 차량절도, 방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악성폭력이라 함은 무기를 가지고 혹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심각하게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지수범죄(*nonindex crimes*)로는 통행금지 위반, 가솔, 폭력, 장물취급, 기물파괴, 무기소지, 약물사용, 음주, 무질서한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Corvo(1997:294)에 따르면, 미국 전체 청소년의 7% 가량이 강도, 살인, 갱공격,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위험한 약탈적 폭력을 행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청소년폭력을 포함한 범죄적 폭력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미국의 청소년들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폭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17세의 미국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 캐나다 청소년에 비해 10배 정도 살인을 더 많이 했고(Silverman and Kennedy, 1993), 15~17세의 청소년들의 폭력으로 인한 체포율은 이전에 가장 체포율이 높았던 집단으로 알려진 18~20세의 체포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Snyder, 1996).

미국에서 폭력에 청소년이 점점 더 많이 가담하고 있다는 증거는 과거 10년간의 공식적인 범죄 통계와 피해 통계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미국의 법무부에 집계한 미국 청소년폭력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elly, Huizinga, Thornberry, & Loeber, 1997). 첫째, 폭력 지수범죄(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악성폭력)에 대한 통계적 경향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폭력 지수범죄에 의한 체포는 67%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적 살인에 의한 청소년 체포는 90% 증가했고, 강간에 의한 체포는 4% 줄었으며, 강도에 의한 체포는 63% 증가했고, 악성폭력에 의한 체포는 78% 증가했다.

둘째, 아직도 남자 청소년이 심각한 폭력에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자 청소년들이 폭력적 범죄에의 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 여자 청소년들이 전체 폭력 지수범죄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성폭력(2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폭력 지수범죄에 의한 남자 청소년 체포율은 9% 증가한 반면, 여자

청소년 체포율은 34% 증가했다.

셋째, “전국적 범죄 피해자 조사”로부터 나온 1994년 자료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주 단순·악성 폭력, 강간, 그리고 강도 등의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2~17세의 청소년 중 260만 명이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이는 1984년에 비하여 44%가 증가한 수치이다. 12~17세의 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한 배 반 정도 더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12~14세의 청소년이 15~17세의 청소년과 같은 정도로 폭력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1994년에는 모든 청소년의 12% 정도가 폭력범죄의 희생자였다.

넷째, 살인피해 청소년의 경향을 살펴보면, 살해된 청소년의 숫자는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82%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매일 7명의 청소년들이 살해되었으며 이것은 매주 50개 가정이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총이 관련된 청소년 살인 피해자는 3배 늘어난 반면, 총이 관련되지 않은 살인 피해자는 그대로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건 현재 미국 청소년폭력의 수준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높으며,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청소년폭력 범죄 체포율이 3%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인이 14%, 강간이 4%, 강도가 1%, 악성 폭력이 3% 감소하였다.

Empey & Stafford(1991)의 책에 나타난 경찰의 체포율을 살펴보면, 1989년에는 약 1,430만 건의 심각한 범죄가 경찰에 의해서 보고되었고, 약 1,430만 건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체포율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8세에 절정을 이루었고, 그 후 감소하였다. 1989년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10만 명당 체포율(팔로는 성인 체포율)을 살펴보면, 고의적 살인 3.4(8.6)명, 강간 7.3(14.0)명, 강도 48.1(55.9)명, 악성폭력 73.4(167.1)명, 폭력 175.9(357.9)명 이다. 1989년 10~17세 사이의 청소년 10만 명당 폭력으로 인한 남/녀 청소년 체포율을 살펴보면, 고의적 살인 14.1/1.0명, 강간 30.4/0.7명, 강도 192.5/18.7명, 악성폭력 265.8/48.1명, 폭력 586.3/182.8명이었다.

1965년에서 1989년 사이의 폭력(살인, 강간, 강도, 악성 폭력)에 의한 체포율

경향을 살펴보면, 청소년(18세 이하)의 체포율은 성인 체포율보다 낮았으며, 청소년의 체포율은 169% (1965년 10만명당 61명에서 1989년 10만명당 164명으로) 증가했으며, 성인들의 체포율은 119% 증가했다. 1984년 10~17세 사이의 청소년 2,900만명 중 130만명(4.6%)이 재판을 받았다.

IV. 청소년폭력 대책의 현황 및 평가

1. 청소년폭력 대책의 현황분석 및 평가

1) 청소년폭력 관련 현행법률 분석

(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 대한 처벌 기본법령은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다. 형법에서는 신체적 폭력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 손상이 없는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 손상을 초래한 ‘상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그 형량이 더욱 높다. 존속에 대한 폭행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7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60조 제2항), 존속에 대한 상해인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57조 제2항). 참고로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속한다(제260조 제3항).

형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폭행죄·상해죄에 부가해서 죄질이 무거운 몇 가지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는 특수상황은 ①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자에 대하여, ② 야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 ④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가한 경우 등이다. 비꾸어 말하면 형법 제257조 및 제260조가 적용되는 폭행·상해죄는 주간에 1인이 단독으로 폭력을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습적으로 폭행·상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상해죄는 피해자 고소 여부에 관계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상습적 폭행 경우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야간에 발생한 폭행·상해에 대하여는 주간에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도 1인이 단독으로 가한 경우보다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폭행·상해는 피해자 고소와 관계없이 처벌된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및 제4항).

끝으로,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간에 흉기를 사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비해(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야간에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동법 제3조 제2항), 상습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하여는 적어도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第2條(暴行等)

- ① 常習적으로 刑法 第257條 第1項(傷害), 第260條 第1項(暴行), 第276條 第1項(逮捕, 監禁), 第283條 第1項(脅迫),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第324條(暴力에 의한 權利行使 妨害), 第350條(恐喝) 또는 第366條(損壞)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改正 90. 12. 31>
- ② 夜間 또는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本條에 定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 <改正 90. 12. 31>
- ③ 이 法 違反(刑法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新設 90. 12. 31>
- ④ 第2項 및 第3項의 境遇에는 刑法 第260條 第3項 및 第283條 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第3條(集團의 暴行等)

- ① 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를 보임으로써 第2條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攜帶하여 그 罪를 犯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改正 90. 12. 31>
- ② 夜間에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改正 80. 12. 18, 90. 12. 31>

③ 常習의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新設 80.12.18, 90.12.31>

④ 이 法 違反(刑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 <新設 80.12.18, 90.1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第4條(團體 등의 구성·活動)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改正 90.12.31, 93.12.10>

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懲役에 處한다.
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 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行위를 한 때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 <新設 93.12.10>

1. 刑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の 無效·公用物の 破壊)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の 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偽計等に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 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와 強盜의 罪중 第333條(強盜)·第334條(特殊強盜)·第335條(準強盜)·第336條(略取強盜)·第337條(強盜傷害, 致傷)·第339條(強盜強姦)·第340條第1項(海上強盜) 및 第2項(海上強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범한 者

2. 이 法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

③ 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強要하거나 勸誘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④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第5條(團體 등의 이용·지원)

① 第4條 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 犯하게 한 者는 그 罪에 對한 刑中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 <改正 90.12.31, 93.12.10>

② 第4條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 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第8條(正當防衛等)

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等으로 사람에게 危害를 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改正 90. 12. 31>

② 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인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형법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 10年 以下の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③ 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형법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① 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 500萬원 以下の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95. 12. 29>

형법 第261條(特殊暴行)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攜帶하여 第26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2) 성적 착취·학대

① 성폭력 가해자·방조자 처벌

성폭력의 개념에 관하여는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형법상 ‘성폭속에 관한 죄’ 중에서 음행매개(242조), 음화 등의 반포(243조), 음화 등의 제조(244조), 공연음란(245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둘째, 형법상 ‘악취와 유인의 죄’ 중에서 영리 등을 위한 악취·유인·매매 등(288조), 악취·유인·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292조), 상습범(293조), 미

수범(294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셋째,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 강간(297조), 강제추행(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299조), 미수범(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305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넷째, 형법상 강도강간(339조)의 죄가 대상이 된다.

다섯째, ‘성폭력범죄법’상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9조), 강간 등 살인·치사(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11조), 미수범(12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14조) 등의 죄가 대상이 된다.

형법 제242조는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조에서는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및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처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43조·244조에서는 반포 또는 판매 등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음란물의 제조·반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공연히 연극 등 음란한 공연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음란물배포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표 IV-1〉 청소년 연령별 법적 보호내용

보호 영역	적용 연령	보호 내용	근거 법령	시행 기관
폭력 학대 착취	13세 미만	○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하면 강간죄 적용	형법 305조 성폭력방지법 8조의2	법무부
	18세 미만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18조5호	
	20세 미만	○ 영리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간음을 매개하는 행위 금지	형법 242조	
	기 타	○ 어디에서나 - 윤락행위 금지 - 윤락행위상대자로 유인, 권유금지 - 윤락행위를 유인, 강요금지 - 윤락행위 처소제공 금지	윤락행위등방지법 4조	
		○ 풍속영업소에서 - 윤락, 음란행위 시키는 행위 금지 -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금지	풍속영업법 3조1호	
		○ 음란물 제조, 반포 금지	형법 243, 244조	

그러나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특별히 금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없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에서 아동에게 음란물을 전시·구연·방송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나, 이 규정의 실제적 효과가 모호하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은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법정 대리인일 경우(아버지 또는 시설 내 아동의 경우는 시설장)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를 인지한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특히 아버지 등 직계 존속인 경우 어머니가 대리 고소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가정의 파괴를 원치 않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적 학대와 성폭력의 경우 결정적 증거는 아동에게 있으나, 아동의 진술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자를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법정의 모든 절차를 견딜 만큼 강하다면 증언할 수 있지만 그 증언의 채택 여부는 법정의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1997:2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2條 (定義)

- ① 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 중 第242條(淫行媒介) · 第243條(淫書等の 頒布 等) · 第244條(淫書等の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
 2. 刑法第31章 略取 · 誘引의 罪 중 醜行 또는 姦淫을 目的으로 하거나 醜業에 使用할 目的으로 범한 第288條(營利等を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 · 第292條(略取, 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略取 · 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 · 第293條(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略取 · 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 · 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 · 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 중 第288條의 略取 · 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3. 刑法第32章 強姦과 醜行의 罪중 第297條(強姦) · 第298條(強制醜行) · 第399條(準強姦, 準 強制 醜行) · 第300條(未遂犯) · 第301條(強姦등 傷害 · 致傷) · 第301條의2(強姦등 殺人 · 致死) · 第302條(未成年者等に 對한 姦淫) · 第303條(業務上 威力等に 依한 姦淫) 및 第305條(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의 罪
 4. 刑法 第339條(強盜強姦)의 罪
 5. 이 法 第5條(特殊強盜強姦등) 내지 第14條(通信媒體利用淫亂)의 罪
- ② 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5條 (特殊強盜強姦등)

- ① 刑法 第319條第1項(住居侵入),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強姦) 내지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 ② 刑法 第334條(特殊強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強姦) 내지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 ·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6條 (特殊強姦등)

- ① 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 이상이 合同하여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② 第1項의 方法으로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 이상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③ 第1項의 方法으로 刑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④ 第1項의 방법으로 身體障礙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醜行한 者도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7條(親族關係에 의한 強姦등)

①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②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③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 이내의 血族과 2寸 이내의 姻戚으로 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 <新設 97. 8. 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8條(障礙人에 대한 姦淫등)

身體障礙 또는 精神上의 障礙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醜行한 者는 刑法 第297條(強姦) 또는 第298條(強制醜行)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8條의2(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強姦, 強制醜行등)

① 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強姦)의 罪를 범한 者는 5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미만의 女子를 姦淫하거나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本條新設 97. 8. 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9條(強姦등 傷害·致傷)

① 第5條 第1項, 第6條 또는 第12條(第5條 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② 第7條, 第8條 또는 第12條(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 8. 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0條(強姦 등 殺人・致死)

- ① 第5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 刑法 第297條(強姦) 내지 第300條(未遂犯)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 ② 第6條, 第8條, 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 ③ 削除 <97.8.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1條(業務상 威力등에 의한 醜行)

- ① 業務・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偽計 또는 威力으로써 醜行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 法律에 의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2條(未遂犯)

第5條 내지 第10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7.8.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3條(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公衆이 밀집하는 場所에서 사람을 醜行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4條(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畫,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5條(告訴)

第11條・第13條 및 第14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18條(告訴制限에 대한 예외)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24條(告訴의 제한)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21條(被害者의 身元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 ① 性暴力犯罪의 搜查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被害者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事事項과 사진 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의 生活에 관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22條의3(申告義務)

18歲미만의 人을 保護하거나 教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從事 者는 自기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이 第5條 내지 第10條, 刑法 第301條(強姦 등 傷害・致傷) 및 第301條의2(強姦 등 殺人・致死)의 犯罪의 被害者인 事實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查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 8. 22 法5343>

형법 第242條(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未成年 또는 淫行의 常習있는 婦女를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형법 第243條(淫亂頒布 등)

淫亂한 文書, 圖畫, 필름 기타 物件을 頒布, 販賣 또는 貸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5. 12. 29>

형법 第244條(淫亂製造 등)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형법 第245條(公然淫亂)

公然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 12. 29>

아동복지법 第18條(禁止行爲)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거나, 淫行을 媒介시키는 행위(10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11. 兒童의 德性을 심히 해한 우려가 있는 圖畫, 刊行物, 廣告物, 기타의 내용 物을 製作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販賣, 頒布, 供與, 交換, 展示, 口演, 放送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윤락행위등방지법 第4條(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淪落行爲
2. 淪落行爲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淪落行爲를 하도록 勸誘・誘引・알선 또는 強要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勸誘・誘引・알선 또는 強要하는 행위
4. 淪落行爲의 場所를 제공하는 행위
5. 淪落行爲를 한 者 또는 淪落行爲의 상대자에게 金品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約束하는 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第3條(준수사항)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者(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風俗營業者”라 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7.3.7>

1.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場所(이하“風俗營業所”라 한다)에서 淪落行爲 또는 淫亂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성년자보호법 第2條(禁止事項)

- ① 未成年者는 다음 行爲를 할 수 없다. <改正 79.12.28, 91.3.8 法4340, 95.12.6>

4. 宿泊業所, 海水浴場, 水泳場, 公園, 觀光地, 名勝地 기타 遊園地에서 性道德등 風紀를 문란하게 하는 行爲

미성년자보호법 第4條(營業者의 義務)

- ③ 第2條 第1項 第4號에 規定된 場所에서는 未成年者에게 대하여 性道德등 風紀를 紊亂하게 하는 營業行爲를 하거나 그를 目的으로 하는 場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6> <全文改正 79.12.28>

형사소송법 제159조(宣讀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인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성폭력 피해 사건을 조사 또는 재판할 때 그 피해자의 신분이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둬으로써 여성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제22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케 할 수 있으며(제22조의 2), 출석증언이 곤란한 경우에 증거보전 청구도 할 수 있다(제22조의 4).

증인으로 소환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의 조사나 신문을 돕도록 하는 절차도 보장하고 있다. 증거보전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공판 장소에 출석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22條(審理의 非公開)

- ① 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그 被害者의 生活를 保護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證人으로 召還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生活보호 등의 사유로 證人 訊問의 非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 ③ 裁判長은 第2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公開, 法廷외의 場所에서의 訊問 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場所에 關하여 決定할 수 있다.
- ④ 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22條의2(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의 同席)

- ① 法院은 第5條 내지 第9條와 第11條 및 第12條(第10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의 犯罪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에는 檢事 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 ② 搜查機關이 第1項의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 8. 22 法53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第22條의4(證據保全의 特例)

- ①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公判期日에 出席하여 證言하는 것이 顯저히 곤란한 事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여 當해 性暴力犯罪를 搜查하는 檢事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는 그 요청이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 8. 22 法5343>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아동학대 및 유기

아동의 기본 권리와 욕구가 침해되는 경우에 사회는 이에 개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적 보호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호가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유일한 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어 어떤 행위가 “학대”인지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19조에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이 동법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하는 등의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공무원이 가정에 들어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 하면 가택침입죄 또는 아동유괴죄를 범하게 된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의 경우 직계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아동의 성적 학대도 70% 이상이 아동의 직계 가족, 친척 또는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격 있는 전문가의 개입을 보장하는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1997:210).

형법 第287條(未成年者の略取, 誘引)

未成年者を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第5條의2(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

① 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略取 또는 誘引한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の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の 安全을 念慮하는 者の 竊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の 利益을 取得할 目的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を 殺害할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② 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の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の 安全을 念慮하는 者の 竊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の 利益을 取得하거나 이를 要求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を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3.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を 暴行·傷害·監禁 또는 遺棄하거나 그 未成年者에게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4. 第3號의 罪를 犯하여 未成年者を 致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를 幫助하여 略取 또는 誘引된 未成年者を 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歸家하지 못하게 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④ 刑法 第288條·第289條 또는 第292條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改正 90. 12. 31>

⑤ 常習으로 第4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
<改正 89. 3. 25>

⑥ 第1項·第2項(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第4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89. 3. 25>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罪를 범한 者를 은닉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新設 89. 3. 25>

⑧ 第1項, 第2項第1號·第2號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新設 89. 3. 25> <本條新設 73. 2. 24>

아동복지법 第18條(禁止行爲)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不具畸形의 兒童을 公衆에 觀覽시키는 行爲(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2. 兒童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兒童을 이용하여 求乞하는 行爲(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3. 公衆의 娛樂 또는 興行을 目的으로 14歲未滿의 兒童에게 曲藝를 시키는 행위(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4. 14歲未滿의 兒童에게 酒店 其他 接客營業에 종사시키는 행위(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5.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거나, 淫行을 媒介시키는 행위(10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6. 正當한 權限을 가진 韓旋機關外의 者가 兒童의 養育을 韓旋하고 金品을 取得하는 행위(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7. 兒童에게 有害한 興行·映畫 기타 이에 準하는 興行物을 觀覽시키는 행위(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
8. 兒童에게 有害한 遊技를 시키거나, 有害한 遊技를 행하는 場所에 出入시키는 행위(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
9.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兒童을 虐待하는 행위(2년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10. 兒童을 위하여 贈與 또는 給與된 金品을 그 目的外의 用途에 사용하는 행위(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11. 兒童의 德性을 甚히 害할 憂慮가 있는 圖書, 刊行物, 廣告物, 기타의 內容物을 製作하거나, 이를 兒童에게 販賣, 頒布, 供與, 交換, 展示, 口演, 放送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아동복지법 第19條(兒童동에 대한 調査)

- ① 保健福祉部長官,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으로 하여금 兒童福祉施設 保護受託者와 兒童의 住所·居所, 兒童의 雇傭場所 또는 第18條의 禁止行爲를 違反할 우려가 있는 業所에 出入하여 兒童 또는 關係人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② 第1項의 경우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4) 폭력성 유해매체 규제

폭력성 유해매체물 규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국내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하여 모두 14개에 달하며, 이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부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등 5개이다.

〈표 IV-2〉 매체물 관련 법률현황과 규제영역

주관 부처	관련 법률	매체물 유형	매체물 세부 유형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전체 매체 유형 음반, 비디오	전체 매체 유형
문화관광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영 화 공 연	○음반, 비디오테이프, 새영상물 (영화·음악, PC게임) 등 ○영화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 악 또는 오락적 관람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 한법률	간 행 물	○도서, 만화, 사진첩, 화보류, 새영상물(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 한법률	정기간행물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산 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 잡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 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 육 등)
정보통신부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광고방송·특수방송(교육·음악 ·오락·연예물에한함), 종합유 선방송
보건복지부	전기통신사업법 공중위생법	인터넷, PC통신 등 각종정보통신 매체물	○음성통신정보물, 비음성통신정 보물(영상정보물, 문자정보물)
내무부(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자유기구 (컴퓨터게임)	○유기장용 전자유기기구 기관
내무부(경 찰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 광고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내무부(경 찰청)	미성년자보호법	도서, 영화, 음 반, 비디오, 공 연물, 기타 음란 한물건 불량만화 및 도 서, 도화, 음반, 비디오, 기타 음 란 물건	

2) 청소년폭력대책 사례와 평가

(1) 청소년폭력 대책사례

〈사례 1〉 가정의 대책

중3학생인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계속 폭력과 갈취를 당하면서 부모에게 알려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숨기다가 가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담임교사의 추궁에 사실을 말했고, 그 후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 어머니에게 지금까지의 피해 사실을 모두 말하였다. 어머니는 먼저 담임교사와 상담을 한 후 가해자와 가해자 아버지를 만나 폭력행사에 대한 사과를 받고 폭력을 다시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현재 피해자는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지만 보복의 불안감으로 등교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화상담, 98.9.5).

〈사례 2〉 학교의 대책

중3학생의 PC상담에 따르면 학급에 복학생 2명(17살, 19살)이 들어오면서 평화스럽던 학급 분위기는 공포와 폭력 분위기로 바뀌었다. 선생님도 복학생들을 무서워하여 잘못해도 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학급 규율을 맡기고 있다. 그들은 학급을 제멋대로 운영하고 폭력씨클의 조직원인 듯 오토바이를 탄 형들과 같이 다니며 한 명은 여자친구 가슴도 만지고 해서 학교에서 공부가 안된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왜 이들을 복학시켜 주어 다른 학생들도 함께 어울리게 하느냐고 항의했다(위의 재단 PC상담, 98.9.5).

〈사례 3〉 정부의 대책

서울가정법원 모 판사는 1일 ‘일진회’라는 불량서클을 조직해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추모(17)군 등 서울 A공고 3년 5명 전원에 대해 소년범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목 행세를 해 온 추군은 최장 2년간, 황모군 등 4명은 최장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선도교육을 받게 되었다. 폭행사

건 관련학생들은 대부분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들은 살인 및 특수강도 등 소년강력범과 비슷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된 셈이다(일간신문, 97. 7. 1).

〈사례 4〉 지역사회와의 대책

서울의 노원구에서는 1997년부터 전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순찰단원 74명이 정기적으로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도봉동 지역의 공원 등 으스스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아울러 지역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된 ‘청소년 지킴이 어머니 순찰단’을 조직하여 약 65명의 어머니들이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 때만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순찰활동은 실제로 지역의 청소년폭력 예방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청소년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위안을 주고 있다(앞 재단 소식지, 《좋은 세상》 98. 7/8월호).

(2) 청소년폭력 대책의 평가

① 가정의 대책 평가

〈사례 1〉의 경우는, 자녀가 폭력의 피해상황에 있을 때에 그 피해자 어머니가 담임과 상담하고 직접 가해자와 그의 부모와 면담하여 각서까지 받아내 폭력을 방지한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담임과 부모에게 알렸다는 점과, 즉각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상황에 대한 가정의 대처문제보다 청소년폭력에 있어서 정작 심각한 것은 부부간의 폭력, 자녀폭력, 형제자매간 폭력 등 가정 내 폭력이 청소년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고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② 학교의 대책 평가

〈사례 2〉는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무성의하게 대책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다. 교육청이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고 감추려 하며, 교사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교육부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정상 학급에 나이 많은 문제 청소년을 재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에는 학교와 교사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외국과 같은 철저한 청소년폭력에 관한 교사의 재교육이 시급한 현실이다.

③ 정부의 대책 평가

〈사례 3〉은 정부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다. 정부가 지난 1997년 6월 청소년폭력 대책회의 이후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반’을 총리실에 설치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총합 추진체제를 구축하였고, 대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추진대책본부’를, 시·도에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경찰청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법·제도를 통한 단편적 통제의 성격이 강하여 그 실제적 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인치료와 예방의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④ 지역사회의 대책 평가

〈사례 4〉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대책에 비교해 보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노원구에서는 또 ‘청소년 지킴이 봉사단 및 기자단’의 이름으로 지역 내 청소년 50여 명이 노원구 지역사회 내의 유해환경 조사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이 많은 곳을 조사하여 이를 “블루존 맵”(Bluezone-Map) 이라는 지도로 제작함으로써 청소년폭력을 유인하는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고발활동을 시작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례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지역사회 문제인 청소년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이

는 장차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3) 정부의 청소년폭력대책 현황

언제부터인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진회라는 학생 폭력씨클이 “캠퍼스블루스”라는 일본만화를 모방하여 조직된 폭력집단인 점이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일본만화가 폭력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폭력교과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중·고교 앞 만화가게, 문방구 등을 통해 청소년 손에 바로 들어가는 폭력만화는 대부분이 무등록출판사가 무단복제한 일본 저질만화들이다. 일본만화들은 한결같이 잔인한 학교 폭력배들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주먹 하나로 학교를 휘어잡고 때로는 성인폭력배들과 결투를 통해 조직원들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기본 설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잇달아 열어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우려와 관심이 계기가 되어 1997년 7월에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취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검찰과 경찰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폭력성 만화 및 불법 일본 복제만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음란폭력성 만화가 학교폭력을 일으킨 유일한 주범은 아니다. 수없이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 유형 중의 하나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에 대한 대책도 학교폭력의 근원적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정부의 청소년대책은 정부의 주요 문건 2건을 주로 참고하였다. 첫째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제10차 학교폭력근절 추진대책반 회의’(98. 7. 7)에서 7개 관련부처가 보고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며, 둘째는 국무총리가 주관한 ‘미성년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

의'(98.6.26)에서 7개 관련부처가 보고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다. 상기 회의에서 대책을 보고한 청소년 유관 부처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불법고용, 가출, 중도탈락 등 각종 청소년비행의 근원적인 원인은 공통적으로 한 뿌리에서 찾을 수 있다. 단지, 청소년의 개인적·성격적 특성과 그가 처한 환경·상황 등에 따라 밖으로 표현되는 비행의 양태가 폭력, 업소취업, 가출, 학교탈락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학교폭력이든 불법고용이든 그 대책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폭력 등 비행에 관한 정부대책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체 유관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유형의 청소년시책을 총망라하여 조사하고 이를 적절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림 IV-1〉 참조).

(1)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

1.1 중앙단위 部處間 정책의 相互협조체제 강화

그 동안 각 부처별로 <교육개혁>,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학교폭력추방>,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각 시책이 각 부처별로 부분적 성과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상호 연계 속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상과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체제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간에 중복된 청소년보호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복된 업무에 대한 주관부서의 선정 등 범정부적인 강력한 업무조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산재한 각종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대검찰청).

1.1.1 총리실에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반> 構成・運營

○구성

-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반장) 및 7개부처 국장(회의체)

○기능

- 부처별 추진상황점검 및 부처간 지원협의사항 논의(총 10회)

1.1.2 청소년보호위원회에 <中央点檢團> 構成・運營

○구성

- 청소년보호위원회에 檢事를 團長으로, 경찰 등 관계부처 과관공무원 10명 내외로 <중앙점검단> 구성

○업무

- 관계부처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각 지역별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연중 지속적 점검, 매분기별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상황 보고

○구성시기 및 설치장소

- 1998. 7. 발족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층

1.1.3 대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대책본부> 構成・運營

- 대책 추진상황점검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위원회의에 행정지원

1.1.4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청소년보호위원회)

- 안건 : 유해업소관련 미성년자 보호대책
- 일시 : '98. 6. 26
- 참석 : 국무조정실장, 법무·행정자치·교육·문화관광·보건복지·노동부장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1.1.5 關係部處 實務者 會議 隨時 開催(청소년보호위원회)

- 참석대상 : 관계부처 국장 또는 과장 및 중앙점검단장 등
- 안건

- 소관부처별 추진계획 및 실적 평가
- 중앙점검단의 점검결과 협의
- 부처간 협조사항 협의 등

1.2 지방단위 추진체계의 확립

관련기관 책임자들이 청소년문제를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문제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의식을 고취, 지역별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1.2.1 <地域別 靑少年對策協議會> 構成 (청소년보호위원회)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대책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등 각 유관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방안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유관기관간 상설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역내 단속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단속과 선도, 홍보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 구 성

- 각 지역에 유관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되는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
- 유관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 위 협의회 산하에 합동단속반, 교육홍보반, 활동지원반 설치

○ 운 용

- 대책협의회를 정기 또는 수시 개최하고, 상호 연락체계 구축
- 각 기관은 실적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대책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
- 학교담당검사제 및 학교담당경찰제와 연계

○ 구체적 활동방안

- 합동단속반의 지속적 단속
-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노동사무소 직원들로 합동단속반 구성

※ 단속반원은 최우수 직원으로 구성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전담부장검사를 합동단속반장으로 임명
- 합동단속반 담당자회의에서 단속의 기본방침 및 범위 결정

○ 교육홍보반의 대 국민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

-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 부서,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홍보반을 편성

○ 활동지원반의 유종업소 고용 및 출입 청소년 선도, 단속지원 및 사후관리, 건전 청소년육성지원

- 교육청, 문화관광 부서, 보건복지 부서 등을 중심으로 지원반 편성

1.2.2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구성·운영(행정자치부)

○ 위원장 : 자치단체장

1.2.3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구성·운영(행정자치부)

○ 위원장 : 자치단체장

1.2.4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추진의지 제고(행정자치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무총리(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명의 서한문 발송(98. 7월중)

○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협의회, 부단체장회의,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책임 강조

○ 한국능률협회, 언론기관 등 자치단체 평가기관과 협조, 청소년대책을 주요평가항목으로 설정

- 대책 추진 우수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추진실적(98년 2/4분기)

○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통한 자치단체 관심 촉구(98. 6. 9)

- 학교주변 폭력예방,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및 단속활동 전개 등 지역사회 안정 및 민생보호 차원에서 강력 추진을 촉구

○ 미성년자 보호대책 수립 시달(98. 6. 30)

- 98. 6. 26 국무총리 주재 '유해업소관련 미성년자보호대책' 관계부처장관회의시 확정된 대책을 토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지침 시달

○ 중점 추진시책

-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 추진의지 제고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탈선 예방대책 강화

- 심야영업 규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등

1.3 家庭, 學校, 社會 등 多方面的 對應

학교나 가정, 사회 등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학교폭력을 학교만이 나서 해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행치사사건이나 자살사건 등은 모두 학교 내의 폭력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할 모든 주체가 다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과 관심을 배워야 할 것이다(대점찰정). 우선 정부부터 소관 부처별로 '가정의 교육성 회복', '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사회의 건강성 회복'사업 등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1.3.1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신설(청소년보호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

○ 가정교육 및 기술대책위원회

1.3.2 가정·학교·직장·사회에서의 청소년보호정책개발(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문제는 가정·학교·직장·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임

○ 우선과제로 ① 학교환경, ② 가정환경을 선정, 중장기 청소년보호정책을 개발할 계획임

◇ 추진실적(98년 2/4분기)

○ 학교폭력·비행 근절 대책 강화 시달(초·중등장학과장 및 예산계장 회의, '98. 5. 4)

-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비행근절대책 추진

- 중퇴생의 학교내 선후배간 폭력조직 조성행위 예방·근절 지도 강화

○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사) 연찬회 개최(98. 6. 18~19)

- 학교폭력 근절 집중 추진기간 설정/운영 시달

- 기간 : 7.1 ~ 7.31

- 집단괴롭힘, 예방지도, 중퇴생 선도활동 강화 등

1.3.3 학교-학부모-지역사회-민간단체 파트너십(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학교단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및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연락/협업체 구축
- 학부모연수 및 학교-학부모-지역사회-민간단체 간 연락체제 구축
- 학교폭력 추방 대책기구 방학중 활동 강화
 - 폭력예방을 위한 교외지도에 주력
- 교육청·학교단위 교외생활지도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교외지도
 - 학교자체 교외 순회 지도반 편성 운영(학교주변 취약지역 순회지도)

(2) 단속 대책

2.1 학교폭력 단속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종래의 산발적인 형식적 대응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검찰·경찰의 합동단속과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등 교외생활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대검찰청).

- 단속대상
 - 청소년에 대한 금품갈취, 교내외 폭행 등 일체의 폭력행위
 - 학교 내 폭력씨를 발굴 및 해체
- 처리방침
 -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원칙을 확립하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감싸 안아 선도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
 -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급증하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
 - 다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모두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범행동기,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장래를 위한 실질적인 처리 지향
 - 가해자라 할지라도 폭력에 이른 경위 및 선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감하게 불입건
 - ‘학교폭력씨클’에 대하여는 자진해체를 유도하되, 불응자는 엄벌

2.1.1 유관기관 상설합동단속(법무부)

- 단속방안
 -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의 상설합동단속 실시
 - 신고전화 및 신고엽서를 통하여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단속 실시
 - 검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의 학교 직접 방문을 통한 피해학생 면담 등 실시, 피해사례 발굴
- 단속결과
 - 총 9,120명 단속 ⇒ 1,177명 구속, 5,641명 귀가조치('97.9~ '98.6.28)
 - 가출청소년 2, 806명 귀가조치

- 불입전사례는 피해사례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위원회와 결연하고 학교의 선도약속을 받은 후 불입전 처리

※ 이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형사적인 단순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모두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탄력적 처리를 한 결과

2.1.2 유원지 등 우선 단속지역 선정(법무부)

- 휴가철에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유원지 등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유관기관 학교폭력 전담반의 우선 단속 지역 선정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 유원지내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 강화를 통한 범죄발생 요인 제거

2.1.3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행정자치부)

- 여름방학, 행락성수기인 7.16~ 8. 15(1개월간)을 ‘여름철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
- 미성년자 출입·호객 행위, 윤락알선, 청소년혼숙 등 유혹·숙박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중점 단속
- 단속방법 : 시도·시군구 주관, 경찰·교육 등 유관기관 합동 시군구별 교차단속, 동시 단속으로 실효성 거양
- 중점 단속대상
 - 학교주변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판매 행위
 - 미성년자 고용·출입허용, 퇴폐·변태영업, 무허가업소 등
- 단속결과 조치계획
 - 적발된 위반업소 명단공개, 업주고발 등 엄중한 외법 조치
 - 상습고질업소 리스트 작성 및 ‘카드화’ 관리,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관리

2.1.4 시도별 학교폭력 방지 집중 추진지역 선정(교육부)

- 폭력발생통계 및 학생사안 발생빈도 기준으로, 학교폭력방지 집중추진지역 선정
- 시도별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계획 수립 추진
- 자살, 가출, 비행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등

2.1.5 자원봉사위원의 교외생활지도(법무부)

- 자원봉사위원 및 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및 홍보활동 강화로 사회적 감시체계 확립
- 자원봉사위원의 조직적, 체계적인 예방활동 실시
- 학교주변 우범지역에 집중된 기존의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 실시지역 조정
- 자원봉사활동의 교외생활지도 위주 전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예방활동 실시

2.2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유해업소의 정화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 및 청소년 탈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기초적 청소년유해사범조차 아무 위법 의식 없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이며, 나아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불법업소는 가출청소년의 용돈을 조달하는 창구로 되고 있어 청소년가출·탈선의 온상으로 전락해 있다.

2.2.1 청소년 불법고용업소 단속원칙 확정(법무부)

- 단속대상 유해업소
-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유해환경 사범

- 청소년에 대한 술과 담배, 본드와 부탄가스 등 각종 환각물질 판매행위
- 유해환경에의 청소년출입 및 고용행위
- 청소년 불법고용 알선행위

○ 유해업소 단속 기본원칙

‘공급자 및 수요자, 기타 관련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이로 인한 이득환수,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확립 등을 통해 유해환경이 발 불일 수 없는 사회환경 조성’

○ 단속 우선순위의 선정

단속에 앞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불법 유흥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선정기준

- 청소년 불법고용 알선조직에 대하여 우선적 단속
- 불법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기준으로 단속우선 순위 선정
- 규모 등 동일한 불법업소에 대하여는 고질적 불법업소,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적 단속 실시

2.2.2 미성년자 고용 알선자에 대한 우선 단속 실시(법무부)

- 미성년자 고용 알선 구조를 타파하여 미성년자 공급경로 차단
- 불법고용을 매개하는 보도방, 직업소개소 등에 대하여 우선적 단속 실시
- 합법적인 구인광고의 매개물인 베틀신문 등을 통한 불법 알선조직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 실시

※ 베틀신문 등 정보매체에 대하여는 불법 구인광고 게재 중단 등 유도

-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

※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추적팀 설치 가능

2.2.3 불법업소에 대한 우선 단속 실시(법무부)

○ 주변여건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속순위 결정

- ①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위치한 업소
- ②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업소
- ③ 호객행위 등이 극심한 업소에 대하여 우선적 단속 실시

○ 업태별 단속순위 결정

- ① 유흥업소, 티켓다방을 우선적으로 종점 단속
- ② 특히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 미성년자 고용업소
 - 미성년자 출입업소
 - 대형업소 순으로 단속 실시

2.2.4 脫稅 및 麻藥類 團束 並行으로 立體的인 團束 實施(법무부)

불법 유흥업소 및 알선조직에 대한 단속시 이들의 탈세 여부와 마약류 소지 및 사용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단속 효과를 높인다.

○ 탈세여부 조사

- 대부분 불법업소에서는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공공연히 탈세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의 원천임.

- 대형업소로서 탈세규모가 큰 업소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추징 병행하여 불법이익 환수

○ 마약류 관련 조사

- 불법 유통업소 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여 사례 다수
- 불법고용된 청소년들에 대하여 약물검사 시행
- 마약류사범으로 입건할 경우, 유통경로에 대하여도 정밀조사하여 관련자 전원 처벌

2.2.5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행정자치부)

○ 여름방학기간중 특별단속기간 설정

○ 시군구 주관, 경찰·교육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 시군구별 교차, 삼위일체식 동시단속으로 실효성 높임
- 범인성유해업소 : 미성년자고용·출입허용, 퇴폐·변태영업, 무허가업소 등
- 교통위반사범 :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등
- 불법광고물(옥외간판) 위반사범 등

○ 적발된 위반업소는 업주 고발 등 엄중한 의법조치

○ 상습위반고질업소 특별관리 및 근원적 제거대책 실천

- 리스트 작성 및 '카드화,'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관리
- 지속적 감시 및 위반시 관련법령상 최고형 부과(관할경찰 협조)
- 단전·단수 등 조치로 전·폐업을 유도하는 등 단속 효과 극대화

○ 불량출판물 및 음란비디오물 제작·판매업소 추적 단속

2.2.6 식품접객업소 단속(보건복지부)

○ 단속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특별단속 실시
-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간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 제고
- 검·경찰, 명예식품위생감시원(3,120명),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원(3,193명), 청소년 보호단체 등과의 합동단속 실시
- 불시 및 집중단속 실시
- 지역별 공무원 확임제 및 상하 연대책임 엄격 시행
- 퇴폐·변태, 무허가, 미성년자 고용 적발시 문책 등

○ 총점 단속대상

-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업태위반 단속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
- 휴게음식점 중 다방에서 티켓영업행위
-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 고용 퇴폐영업행위

-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미성년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 단속

- 미성년자 출입목인 및 주류제공행위
- 20세 미만자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특별관리

- 각 시·군·구별로 관내 무허가 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담당자 지정

- 허가취소업소는 허가취소와 동시에 '간판철거' 계고하고, 무허가업소로 분류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
- 시·도에서 월 1회 이상 불시에 추진상황 확인점검
- 2.2.7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노동부)
 -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예상업체(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 실시기간 : '98.8~9월중
 - 점검사항 : 출퇴근 현황, 야간근로, 연소자 증명서 비치 등 근로실태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조치사항 :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 2.3 유해환경 단속
 - 2.3.1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책임제' 실시(행정자치부)
 - 시군구·경찰서의 과·계장별로 책임지역 지정
 - 시군구는 읍면동별, 경찰서는 파출소별
 - 불법행위 감시 및 첩보수집, 지역별 단속활동 책임지도
 - 청소년불법고용 등 사례를 주기적으로 파악, 공동대응
 - 2.3.2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단속(교육부)
 -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강화
 -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벌칙 상향 조정(개정안 국회 계류중)
-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위반 또는 시설 무단설치시
 -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로 유해업소 신규 설치 강력 억제
 - 학교주변 '환경 정화의 날' 행사 지속적 실시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방과후 활동
 - 학부모, 민간단체 회원도 동참 유도
 - 검·경 등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와 합동지도 실시
 - 7월중 일제 조사하여 수거조치
 -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 청소년 탈선·비행을 유인하는 허위벽보·전단 등
 -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추적하여 외법조치
 - 《벼룩시장》,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허위구인·구직광고 자체(생활정보지발간협의회 등과 협조)
 - 학생 상대의 불법고용 및 유해업소 선전 홍보물 유입 차단(교육부)
 - 홍보물 발견 즉시 학교에 신고토록 지도 강화
 - 학생신고 접수 및 교사 발견시 고발 등 조치
- 2.4 단속추진체제 정비
 - 2.4.1 청소년사법경찰관리 제도 도입(청소년보호위원회)
 - 현황
 - 전국 청소년보호업무담당 공무원 1,030명에 대해 청소년사법경찰관리로 지명('98.6.23)

- 청소년보호위원회 30명, 시도 64명, 시군구 936명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 직무교육 실시(98. 7. 14)

- 대상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시도 사법경찰관리지명자 대표 280명
- 내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내용, 단속요령 등

2.4.2 '청소년보호특별대책기간' 설정 단속(청소년보호위원회)

- '98. 7. 20 ~ 9. 20 기간동안 합동단속을 통해 방학기와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과 폭력을 조장하는 유해업소 근절,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 향후 1년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청소년보호의식이 전국민에게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앙점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흥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을 철저히 근절함

2.4.3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과징금 부과(청소년보호위원회)

- '98. 4월~6월 기간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총 1,838건의 위반사범에 대해 6,324백만원 과징금 부과

2.4.4 업소유착 공무원의 철저한 엄단(법무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 불법업소로부터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엄단

-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정도를 불문하고 불법업소와 연계된 공무원은 엄벌되는 품도 조성

- 다시는 공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엄단

- 업소와 유착 의혹 있는 공무원은 단속반 구성에서 제외

○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정기적인 상납

- 업소로부터 불법영업 묵인 대가 또는 단속정보 제공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정기적으로 수수

- 특히 운락업소나 무허가 유흥업소 등 원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업소로부터 그 비호의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지분확보

- 불법업소를 비호하면서 오히려 이들로부터 업소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

- 그 지분의 다과 불문,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행정자치부

○ 비리 전력자,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

- 상시감찰 강화, 주기적·반복적 정신교육 실시

-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실시, 감사시 이행여부 중점점검

- 시민 '모니터'제, 관련업소 수시 탐문 등 실시

2.5 심야영업 규제 폐지에 따른 보완단속(행자부)

〈규제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 퇴폐·향락업 성행으로 불·탈법 유해업소 증가 우려

- 청소년 탈선, 각종 무질서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치안 수요 증가 예상
 - 위생업소 단속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 시도·시군구별 단속반 편성, 지역별 교차단속 실시
 - 1조 2인 이상 단속조 편성 등 '복수복명제' 실시
 - 현장확인 조사시 '당일복명제' 실시 등
 - 행정중계자와의 유착비리 근절
 - 음식점협회 등 직능단체에 의한 부조리 자율감시, 부조리 척결 다짐대회 등 개최
 -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주도로 '공직자 돈 안주기 운동' 전개 등
 - 업소유착 및 비위공직자는 지체없이 엄벌
 - 낮은 귀가, 경제적 손실 등 IMF시대 과소비풍조 조장 우려 등
<대책>
 - 과소비·폐폐조장 대형유흥업소 등의 불법영업 강력 단속
 - 자정이후 취약지 순찰활동 강화로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 지하유흥업소 등 화재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강화
 - 음주운전, 교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 철저
- 2.6 청소년유해약물 유통 단속(보건복지부)
-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소재한 의약품 마약류 취급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하여 유통점검 강화 실시

(3) 처벌·사후관리 대책

- 3.1 청소년불법고용 관련자에 대한 嚴重한 處罰 維持
- 3.1.1 불법고용 알선자 처벌(법무부)
- 미성년자를 불법업소에 알선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업소에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
 - 불법광고물을 함부로 부착한자에 대하여도 입건,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 알선조직과의 연계 여부 철저히 수사
- 3.1.2 업주에 대한 처벌(법무부)
- 유흥업소 업주
 -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도 모두 입건, 처벌
 - 티켓다방
 - 종래 티켓다방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다방업주들은 다방종업원이 유흥업소로 티켓영업을 나가 사실상 유흥종사자로 일하거나 윤락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티켓영업을 내보내고 있음
 - 이들 다방업주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또는 식품위생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입건, 처벌

※ 검찰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실시 이후 이들 티켓다방업주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있음

3.1.3 윤락상대방(법무부)

- 13세 미만 윤락녀의 상대방 : '미성년자의제강간' 적용
- 미성년 윤락녀의 상대방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윤락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안 상대방 또는 속칭 "영계업소"임을 알면서도 출입, 윤락한 상대방은 전원 입건과 원칙적으로 재판회부하여, 단기자유형 또는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구형

3.1.4 윤락장소 제공자 등(법무부)

- 건축주를 포함한 윤락장소 제공자도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으로 입건 처벌
- 특히 비밀윤락영업장에 제공될 것임을 알면서도 건물을 윤락장소로 제공한 자, 건물을 대형윤락업소로 임대한 건물주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3.1.5 호객행위자 (법무부)

- 현재의 처벌실태
유홍업소 단속시 호객행위자는 대부분 단순 호객으로 의율하고 있음
 - 처벌법규 검토
- 유홍업소의 호객행위는 형사상 처벌규정 없음
- 그러나 윤락업소 및 무허가 유홍업소의 경우 호객행위자가 업태의 실패를 알고 있는 점, 업주와 이익을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업주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의 공범으로 입건 가능
 - 단속방안
- 무허가 유홍업소의 호객행위자에 대하여는 업주와 식품위생법위반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의 공범으로 원칙적으로 입건
- ※ 특히 비밀변태 업소의 호객행위자로서 이전에도 호객으로 즉심에 회부된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 윤락녀 감시, 윤락으로 인한 이익을 업주와 분배하는 등 죄질 불량자는 구속
- 다만, 업주 및 종업원을 통하여 호객행위자의 월급 및 업주와의 이익분배, 윤락업소 운영 참여여부 등 공모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함

3.1.6 불법취업한 청소년(법무부)

- 이들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위한 대책이 시급
- 재교육을 위해 관련부처와 유기적 연락체제 구축

3.2 청소년불법고용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3.2.1 허가 업소(법무부)

- 행정기관 통보
- 영업정지 및 이미 영업정지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요청

※ 허가 취소시는 업소폐쇄 등 무허가 업소와 동일한 행정처분 실시

3.2.2 무허가 업소(법무부)

- 식품위생법위반에 의한 업소 폐쇄
업소 출입문에 당해 업소가 적법한 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영업 계속할 수 없도록 조치 요청
- 불법업소에 제공되는 건축물 무단 증·개축사범

- 행정구정과 협조하여 무단 증개축 부분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 사범에 대하여는
 -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단전, 단수 조치
 - 구청 등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3.2.3 고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보건복지부)

- 현행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 1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 미성년자 출입목인, 주류제공 및 불법 고용 업주
 - 행정처분과 동시에 반드시 형사고발하도록 시도에 지침 시달
 - 업소명, 업주, 위반내용, 행정처분기간 등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공개
 -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 무허가업소
 - 형사고발, 간판철거, 단전·단수, 시설물봉인, 영업장 폐쇄, 게시문 부착 및 세무조사 의뢰 등 모든 조치 강구
 -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조치 실시

3.2.4 고객에 대한 조치(보건복지부)

- 술시중을 받는 등 미성년자를 유혹의 도구로 삼은 고객 명단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안 검토

3.2.5 미성년자 유해업소 알선행위 금지조항 신설(노동부)

- 미성년자들이 유해업소 등 유해업소에 유인·고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령을 개정, 직업소개과정에서의 보호장치 강화
- 직업소개시 '선불금 제공금지' 및 이른바 '티켓다방'에 대한 18세 미만자의 직업소개 금지조항 신설('98. 4)
 - 선불금 제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직업안정법 제21조의 2, 제48조 제3의 2호)
 - 티켓다방소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47조 제3조의 2호, 시행령 제26조의 2)

※ 직업안정법은 알선행위자체만을 금지할 뿐 고용주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제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티켓다방의 미성년자 고용금지 조항 보완이 필요함

(4) 대국민 계도·홍보

4.1 학술·연구지원

4.1.1 세미나·토론회 개최(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 'IMF시대 청소년보호' 정책토론회 개최(청소년보호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98. 5. 21,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실
- 참석 : 교육계, 의료계, 청소년단체인사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관련 공무원 등 26명

- 토론내용 : IMF시대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직업지도, 청소년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지엄 개최(청소년보호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98. 6. 19,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내용 : '98. 7월 가정폭력방지관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가정내의 각종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
- 참석 : 법무부 장관, 국회여성특위위원장,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및 관계 공무원 400여명
- 후속 활용계획
 - 향후 가정으로부터 폭력을 추방함으로써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활용

○ 교내외 폭력근절을 위한 세미나 개최(교육부)

- 주제 : 학교폭력 근절, 유해환경 출입금지
- 참석자 :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유관 민간단체 관계자 참여 권장

4.1.2 조사연구 사업(청소년보호위원회)

○ 학교폭력 등 청소년인권보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연구과제 : 청소년인권보호의 현황과 대책
- 연구기간 : '98. 7월 ~ 11월(5개월)
- 연구진구성 : 청소년문제 전문가들로 구성
- 후속 활용계획
 - 폭력·학대·자살·가출 등 청소년문제를 청소년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 원인규명 및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청소년인권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함

○ 전국민대상 여론조사 실시('98. 5. 21)

- 기관 :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
- 대상 : 전국성인남녀 1,000명
- 주제 : 우리사회의 학교폭력과 청소년유해환경의 심각성 및 근절의지

4.2 행사개최

4.2.1 청소년보호대상식 거행(청소년보호위원회)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98. 5. 28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수상부문 : 5개 부문
 - 청소년인권보호 · 청소년폭력예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 ·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 특별공로
- 성과
 - 청소년보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추진해 온 유공자를 발굴 · 표창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보호의식 확산에 큰 효과
 - 시상행사 전후 MBC-TV 특별생방송(4시간) 과 중앙일간지(동아, 조선 등 8개지) 보도로 언론홍보 효과 극대화
- 4.2.2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 행사주관 : 시도 교육청
 - 실시방법 :
 -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각급 학교도 적극 참여)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 : 타 부처 및 언론과 적극 협조
 - ◇ 캠페인 전개 (교육부)
 - 횃수 - 8,980회, 참여인원 - 1,256,834
- 4.2.3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근절 캠페인 전개(문화관광부)
 -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여성 · 시민 · 사회단체 참여
 - 정부의 특별단속기간 전후 실시
- 4.2.4 '건전한 가정 만들기 운동' 전개(보건복지부)
 - 어린이의 날, 노인의 날, 세계가정의 날 등 가정 관련 행사 개최 및 유공자 포상 등으로 건전가정의 중요성 부각
 - 민간단체 주관으로 "건전가정 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 4.2.5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 · 홍보 강화(보건복지부)
 - 여성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업주 및 소비자 의식개혁 운동 전개
- 4.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4.3.1 청소년보호 의식계도(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 방영
 - 유흥업소 등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근절대책 등 기획보도
 - 미성년자 불법고용 유해업소 고발, 모범업소 및 수범사례 홍보 등
 - 청소년보호법 홍보(청소년보호위원회)
 - 1일 평균 0.7회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폭력 ·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를 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식의 전환도모
 - TV 19회, 라디오 18회, 특강 18회, 잡지 · 신문 10회 등 총 65회(청소년보호위원회 자체 주관행사 제외)
 - 특히 IMF시대 청소년보호와 가정폭력방지관계법 실시에 따른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중요성 강조

4.3.2 청소년보호 공익광고 제작·방송(청소년보호위원회)

- 주제 : 청소년보호-학원폭력 추방
- 방송 : '98.8월~9월
- 매체 : TV, 라디오, 철도방송,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극장상영, 뉴스전광판(18개소)
표출

- 한국광고공사에서 광고 제작하여 8.1부터 방영

4.3.3 언론사에 적극적인 홍보 협조 요청(문화관광부)

- 유해업소관련 미성년자 보호대책에 대한 홍보
- 방송3사와 협의 TV자막광고 실시
- 전광판 활용한 공익광고 실시 등

4.4 청소년 교육

4.4.1 매체활용(교육부)

- o 에듀넷에 유해업소 출입/취업 예방 홍보 게시판 운영 및 신고함 설치

4.4.2 행사개최(교육부)

- o 학교축제 등 학예 행사시 유해업소 출입금지를 주제로 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단막극 경연대회 등 개최

4.5 부모교육

4.5.1 범국민적 동참분위기 조성(행정자치부)

- o 반상회, 시군구誌 등을 통한 대민 홍보 강화
- o 새마을·바르게·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결의 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등 개최

4.5.2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 교육(행정자치부)

- 유해물, 유해 정보매체의 폐해 홍보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및 신고

◇ 홍보자료 배포 - 2,661,209매(교육부)

◇ 가정통신문 배포 - 학교별 배포 17,130회(교육부)

4.6 업주 교육

4.6.1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보건복지부)

- o 교육내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시·도에 지침으로 전달
-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따른 정부의 청소년보호의지 및 업주의 협조요청
- o 시·군·구별로 실시
- 교육주관은 시·군·구에서 하고 검찰, 경찰, 청소년보호단체 등 참여

(5) 청소년 상담·생활지도 대책

5.1 생활지도 체제 정비

5.1.1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추진체제 운영(교육부)

- 교육부/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기구에서 학생불법고용 및 유해업소 출입 근절 대책 추진
 - 교육부 대책 본부장 : 차관
 - 교육청 대책 반장 : 부교육감
- 대책추진 사항 확인 점검
 -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등 활용

5.1.2 학교장 중심의 책임지도 체제 구축(교육부)

- 학교폭력추방 위원회의 학생불법고용 및 출입근절 대책 추진 강화
 - 위원장 : 학교장
- 학교장들을 중심으로 학생의 불법고용 및 유해업소 출입 근절을 위한 학교 교육력 총집중
 - 전교사의 교과 시간 활용 훈화 지도 강화
 - 학년별 지도 내용은 주1회 학교장에 보고
 - 학교 전체의 추진 실적은 직원회의시 월1회 종합보고 후 자체토론 및 평가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민간단체 등과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및 불법고용 차단 협조체제 유지
- 학생사안 발생시 장학진 즉시 투입 행정지도 실시
 - 학교단위 생활지도 내용확인 점검

5.2 교사 교육

5.2.1 지도교사의 근절 시책 추진력 제고(교육부)

- 담임 및 생활지도교사의 지도력 강화
 - 유해업소 관련 교직원 자체 연수 실시
 - 추진 내용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점검 및 평가
- 생활지도교사의 업무 부담 적정화
 - 담임/생활지도 교사와 비담임 교사와의 업무 분담
- 생활지도 교사 우대책 내실 운영
 - 연수 선발시 우선 선발, 승진/전보시 우대

5.2.2 가출 등 비행예방을 위한 담임교사의 지도역할 제고(교육부)

- 학생 근태상황 철저 파악 지도
 - 결석 사유별 일일 종합 점검 실시
- 가출징후 조기 파악, 동반가출 등 예방·지도
 - 주 1회 이상 유해업소 출입관련 무기명 실태 조사 실시
- 학생-교사-선후배-학부모간 연락망 활용, 불건전 업소 동반 취업 사전 차단 지도
- 불건전 아르바이트 사전 예방 교육 실시
 - 유해업소 및 근무여건 불건전 업소 취업 사례 활용 지도

5.3 청소년 교육

5.3.1 학교장 주도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지속적 지도(교육부)

- 주1회 혼화 또는 방송 교육 실시

- 야간업소 출입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및 중견교사의 특별 상담 지도 추진

5.3.2 담임교사 주도의 지도(교육부)

- 특별활동, 학급/학생회 활동시 유해업소 관련 계도활동 및 교사와 학생간 상호 토론 및 지도

5.4 학교내 상담

5.4.1 학교 상담실의 유해업소 출입 차단 지도 강화(교육부)

- 유해업소 출입금지를 위한 사례별 집단상담의 월 1회 이상 정례화
- 취업 및 진로 지도시, 불법취업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의무화
- 결·보강 시간, 학교장 제량시간 등을 활용하여 양호실과 공동으로 성교육, 순절교육 실시
- 요선도 학생, 실직자 자녀 등 특별상담 실시

5.4.2 쪽지 상담 실시(교육부)

- 집단 괴롭힘 사안 파악을 위한 쪽지상담 강화 : 주1회 이상
- 요선도 대상학생 상담실시
- 상담 횟수 128,652회, 상담 학생 수 72,105명
- 요선도 학생 55,141명, 1인당 평균 2.3회 상담

5.5 학교밖 상담

5.5.1 여성상담체계를 활용한 미성년자 상담(보건복지부)

- 전국의 여성복지상담소(116개소)를 통한 미성년자 유흥·윤락 예방활동 전개
- 위기 미성년자에 대한 긴급상담을 위하여 '여성 1366' 상담전화 설치 확대 추진(현재 38개소)
- 가솔·윤락 미성년자에 대한 선도보호시설(12개소) 운영의 활성화
- 아동상담소를 통한 선도
- 전국 아동상담소(47개소)의 상담을 통하여 귀가조치 등 가정복귀 권유

5.5.2 생활권 중심 청소년상담체제 구축(문화관광부)

- 청소년상담의 중추기관인 (재) 청소년대화의광장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상담실 간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상담활동 활성화

※ 시도 상담실 15개소, 시군구 상담실 68개소

- 지역사회내의 전·현직교사, 종교인,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자원 활용한 상담체제 구축
- 현장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상담활동> 활성화로 능동적인 상담 활동 실시

5.5.3 청소년들의 취향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센터' 운영(문화관광부)

- 1998. 5. 28 사이버상담개시('98. 6. 18현재 5,287건 접속)
- 고민, 취업, 취학, 기타 다양한 청소년관련 상담 실시

5.6 취약집단 특별지도

5.6.1 중학교 학생 생활지도 특별관리(교육부)

- 지역 교육청별 중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협의체 구축
- 교육장, 학무국장,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지역 생활지도 주임교사, 민간단체 지도자

- 특별관리 내용
 - 교내폭력, 가출, 약물 오·남용(본드 등), 절도 등
- 5.6.2 여학생 생활지도 강화(교육부)
 - 시도 교육청별 여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대책 시달
 - 여학생 생활지도 취약지역 집중 순회지도 실시
 - 여학생의 가출, 불건전 업소 취업 예방활동 전개
- 5.6.3 '실업계 고등학생 생활지도 특별대책' 추진(교육부)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지도
 - 불건전 아르바이트 등 불법고용 차단
 - 교사·학부모·학생간 연락망 등 활용 연계지도 체제 구축
- 5.6.4 중퇴생·선후배간 폭력조직 결성지도 철저 색출·지도(교육부)
 - 폭력씨를 해소 사례 주기적 분석
 - 학교별 폭력씨를 관련 지도내용을 토대로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 직접 확인
 - 집단괴롭힘, 조직폭력 등 색출·근절 대책 강화
 - 교내 학교폭력 근절 활동, 유해환경 관련 예방활동, 학생근태상황 등에 대한 학교장 일일 점검 실시
 - 요선도학생 상담지도 실시 : 불량 서클에 참가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 폭력서를 해체지도 : 해체서를 수 34개, 지도학생 수 262명
- 5.7 약물예방교육
 - 5.7.1 청소년 보건교육 교재개발(보건복지부)
 - 청소년기에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초·중·고등학생용 《건강생활실천교본》 개발·보급
 - '98년 초등학교 고학년용, '99년 중학생용, 2000년 고등학생용 교재개발 추진 ※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 5.7.2 보건교육 과목 신설(보건복지부)
 - 초·중·고 교육과정에 보건교육 과목을 독립하여 실시 추진
 - ※ 교육부 제8차 교과과정 결정시, 보건교육과목을 독립·신설하도록 추진
 - 5.7.3 보건교육 실시(보건복지부)
 - 청소년 마약류 남용억제 대책 강화
 -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와 주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교육교재를 통한 간접교육 실시
- 5.8 학생 자율정화활동 전개(교육부)
 - 고등학교에 학생 자율정화위원회 결성
 - 자율 순회조 활동 전개
- 5.9 신고체계 홍보
 - 5.9.1 교내 신고체계(교육부)
 - 교내 폭력관련 의견함(소리함), 신고함 설치(교내 LAN망 이용)
 - 처리결과 게시(주1회 이상)

(6) 시민감시·선도활동 지원

6.1 시민 신고전화 활성화

- 사회적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불법업소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신고전화의 활성화 필요
- 청소년 유해업소를 목격한 일반인들의 신고 활성화 유도
- ⇒ 민간 감시활동과 단속활동의 유기적 연결점 마련

6.1.1 청소년긴급전화 '1388'(청소년보호위원회)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체제 미비와 홍보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1388' 전화를 24시간 상설 청소년문제해결전화로 확대·개편
 - 주요 신고대상 : 10대 청소년 유흥업소 불법고용 및 출입, 불량 비디오·서적 등 제작·판매 및 대여, 술·담배·흡입음·본드 등 판매,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청소년 인권침해
- 추진상황
 -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긴급전화 1388' 상황대응능력 향상
 - 조건표 보강,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당직자 행동지침 정비
 - 대중매체 홍보 집중 실시
 - 7~8월 중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소년긴급전화 1388홍보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인 청소년보호 홍보사업을 전개함
 - 8~9월중 TV, 라디오, 동영상전광판, 지하철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와 학원폭력추방에 관한 공익광고를 전국적으로 방송·표출함으로써 중앙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 - 지방 홍보사업 지원
 - 사업주체 : 16개 시도(서울, 경기, 충북, 충남은 민간위탁 추진)
 - 사업기간 : '98. 7월~10월(4개월간)
 - 사업예산 : 총 100, 480천원(국고 48, 000천원, 지방비 49, 000천원, 민자 3, 480천원)
 - 주요내용
 - 1388 홍보용 플랜카드, 리플릿, 스티커 제작·배포 및 캠페인 실시
 - 지역언론매체 및 반사회를 활용하여 청소년보호 홍보 전개
 - 1388 담당공무원 교육, 유해환경감시단원교육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
 - '1388' 전담요원 24시간 상시근무체제 구축

6.1.2 자녀안심하고 보내기운동 신고전화 '2828'(법무부)

- 피해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전화를 통해 제보하도록 유도
- 신고전화 접수현황('97. 9~'98. 5)
 - 총 7, 234건 : 대검찰청 1, 689건, 일선청 5, 545건
- 각 청에 설치된 신고전화의 적극적 홍보
 - 대 검 찰 청 : (02) 3480-2828
 - 일선 검찰청 : 지역번호없이 1588-2828

- 전국적 홍보활성화 대책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신고전화의 기본 취지를 적극 홍보
 - 언론사를 통한 신고전화 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 TV자막 및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 실시
 - '98. 6월말부터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 '98. 7. 10부터 TV광고를 통한 학교폭력 관련 대국민 홍보를 실시
- 신고에 대한 “즉응단속” 체제 확립으로 사회적 감시체제 정착 유도
- 접수 및 처리
 - 전국에서 총 3,329건 접수, 2,734건 처리(98. 2/4분기)
 - 처리율 87.7%
 - 수사단속 2,354건, 상담종결 573건, 공람종결 402건
- 6.2 시민 자원봉사의 제도적 지원
 - 6.2.1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제정 추진(법무부)
 -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민간자원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대책강구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지급 등 예산 지원책 마련
 - 6.2.2 보호관찰등에관한법을 개정 추진(법무부)
- 6.3 청소년·시민단체의 감시활동
 -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 업소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단속만으로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움
 - 선진국에서 이러한 불법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사회적 감시체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 사회의 자율적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불법업소 근절의 중요한 요소임
- 6.3.1 기존 청소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청소년보호위원회)
 - 기존 감시단 운영실적
 - 감시단 현황 : 13개 감시단(11개 시도), 총 2,798명
 - 서울YWCA, 서울YMCA,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산YWCA, 대구YWCA, 청소년불교교회연합회 인천지부, 광주YMCA, 대전청소년마을, 수원YWCA, 춘천YWCA, 보이스카웃 충북연맹, 전주YWCA, 마산YMCA
 - 운영실적 별첨 <표 IV-3> 참조
- 6.3.2 신규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청소년보호위원회)
 - 지정단체 : 전국에서 168개 단체, 9,448명 지정(1998)
 - 지정현황 별첨 <표 IV-4> 참조
 - 시군구별로 새마을·바르게·YWCA 등 민간사회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구성(행정자치부)
 - 유흥·서비스업소 제도 및 청소년 불법고용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지원
- 6.3.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위원 전국협의회’ 운영(법무부)

- 자원봉사 시민단체와 검찰의 파트너십 실천면에서 대표적인 수범사례
 - 활동의 성과
- 6.3.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위원 전국협의회' 운영(법무부)
- 자원봉사 시민단체와 검찰의 파트너십 실천면에서 대표적인 수범사례
 - 활동의 성과
 - 학교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한 청소년보호활동 및 유해환경 감시로 범죄유발요인에 대한 정화
 -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범죄유발을 규제하는 예방적 역할 담당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에 통보하여 우선 단속 실시하는 협력체제를 갖추으로써, 감시와 단속의 유기적 관계 확보
 - 활동 규모
 - 전국적으로 101,016명의 자원봉사위원이 활동중
 - 교외 생활지도 : 30,921회, 연인원 288,139명 참여 (98.2/4분기)
 - 유해환경점검 : 18,019회, 연인원 188,194명 참여 (98.2/4분기)
- 6.4 학교의 감시활동
- 6.4.1 학생·학부모 자율 감시활동 활성화(교육부)
- 청소년보호위원회지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참여 적극 권장
 - 현재 651개교 신청완료(초등학교 304개교, 중학교 232개교, 고등학교 115개교)
 - 지역별 지정현황 별첨 <표 IV-5> 참조
 - 학생회, 학급회 중심 학생자율 정화 활동반 조직
- 6.4.2 청소년유해환경대책 소위원회(가칭) 설치·운영 권장(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주변 감시활동 강화
- 6.4.3 '자녀지도순찰대'구성(법무부)
- 구성 :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위주
 - 목적
 - 교사 및 학부모와 유관기관이 연합하여 지역별 초·중·고 학교 주변을 순찰
 - 교사와 학부모, 유관기관이 폭력을 감시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실질적인 예방효과 거양
 - 방침
 -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및 교사 주축의 학내·외 생활지도책임제 시행
 - 교사·학부모, 경찰 등 학교부근 유관기관을 예방·단속조로 편성,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추진방안
 - 학교주변 우범지역에 대한 취약시간대 집중순찰을 통하여 학생보호활동 전개
 -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학교주변 범인성 요인 근절
 - 특히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정화구역 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의 적극 지원하에 유해환경 제거, 교육적 분위기 조성

〈표 IV-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3개) 운영실적

구분	유해환경고발센터 운영				현장순찰				감시단 교육	모니터 활동	세미나 캠페인	총계
	소계	시정 권고	고발	이첩	소계	시정 권고	고발	이첩				
실적	1,021	833	36	152	347	240	27	80	44	177	88	1,677

〈표 IV-4〉 신규 시민단체대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체	168	30	10	9	7	9	4	6	22	8	5	10	10	9	11	12	6
인원	9448	1855	431	201	383	312	232	432	1289	555	920	570	618	390	311	703	246

〈표 IV-5〉 학교대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체	651	333	30	9	2	3	16	41	8	18	21	33	41	13	36	44	3
인원	9276	4559	471	154	18	22	140	413	120	273	378	571	726	216	445	722	48

6.4.4 '학생자율선도단' 구성(법무부)

○ 필요성

- 학교폭력의 실상을 가장 잘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잘 알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내·외에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음

○ 방안

- 학생회 간부 및 선도를 요한 학생 중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 학생 중심으로 '자율선도단' 구성
- 이들에게 예방과 선도의 책임을 부여하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생활 적응의 기회를 제공
- 검찰 등 유관기관은 자율선도단과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감독과 지원 병행

6.5 청소년불법 직업소개 감시

6.5.1 행정지도(노동부)

- 시·도에 직업소개부조리 단속지침을 시달, 법령개정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98.8월중)

6.5.2 업계 자율감시(노동부)

- 고용서비스협회를 통한 직업소개소의 자율정화 유도

6.5.3 시민단체 감시(노동부)

- 허위구인광고 모니터링 실시
 - 신문·잡지 또는 벽보로 부착된 유홍업소 구인(모집) 광고를 수집, 무허가 소개업자(속칭 “보도”)를 추적 고발 조치
- 6.5.4 신고창구 홍보(노동부)
 -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 홍보 및 운영 내실화
- 6.6 모범업소의 청소년보호
 - 6.6.1 ‘청소년보호의 집’ 운영(법무부)
 - 목 적
 - 우범지역 등에 소재한 약국과 문구점, 각종 업소를 청소년보호의 집으로 지정하여 폭력 피해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피난처 제공
 - 보호의 집이 폭력의 감시자가 되도록 함
 - 추진방안
 - 현재 각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지정한 청소년보호의 집에 대한 학생 홍보활동 강화(교육계와 학교의 적극적 지원 필요)
 -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호의 집이 조속히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업소외부에 스티커 부착 및 보호의 집을 찾는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전단 교부 등을 통한 보호의 집에 대한 인식 확산 유도
- 6.7 비행청소년 선도 및 취약계층 보호
 - 6.7.1 비행청소년 사후관리지제 도입(법무부)
 - 의의
 - 구공판, 소년부 송치된 학생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보다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더 많음에도 오히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 안
 - 구공판, 소년부 송치 소년들에 대한 선도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
 - 학교폭력 재범방지 및 가해학생에 대한 단속효과 제고
 - 6.7.2 ‘비행청소년 선도카드’ 작성(행정자치부)
 - 단속·보호된 청소년은 선도카드 작성, 계속관찰 및 계도
 - 현장위반 학생은 학교 통보 및 부모와 공동으로 계도
 - 6.7.3 비행청소년 자성교육 ‘사랑의 교실’ 활성화(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위원회, 선도단체 등으로 합동협의회 구성, ‘사랑의 교실’ 추진
 - 비행·불량청소년 계도를 위한 공동지구책 강구
 - 6.7.4 비행청소년에 대한 결연 실시(행정자치부)
 - 우범·불우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 사회단체와 검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결연에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결연대상 청소년에 대하여는 가정과 친구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으로 문제해결 방안 강구
 - 6.7.5 대학생 멘터 프로그램(법무부)

○ 의 의

- 비행청소년들과 비슷한 연령의 대학생들을 결연시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
- 형식적인 선도활동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종 체육, 예능활동 등 서로간 어울림 활동을 통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선도효과 높임

○ 추진방안

- 현재 한양대학교와 서울동부지청에서 '98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 추진성과를 보아 가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확대 실시 예정

6.7.6 사회봉사(법무부)

-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형식적인 사건처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쓰레기줍기, 황소개구리 잡기 등 환경보호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심성을 고양토록 유도
- 특히,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국유지 등에 그들이 직접 나무를 기꾸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고 따뜻한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

6.7.7 정신교육(법무부)

- 종교인 및 자원봉사자들의 의한 비행청소년 선도교육
- 모범 제소 청소년들의 의한 비행청소년 선도교육

6.7.8 무료진료 및 의료지원(법무부)

- 문신제거 시술

6.7.9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부조(법무부)

6.7.10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법무부)

6.8 가출청소년 선도·보호

6.8.1 유홍가 등 불법취업 '가출청소년 찾기활동' 전개(행정자치부)

- 관계기관 합동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과 병행 실시
- 대상
 - 유홍업소, 티켓다방 등 미성년자 고용업소
 - 무허가 하숙집(빌집·쭉방) 등 숙박업소
 - 공원, 야산 등 가출청소년 은신 가능장소
- 방법
 - 사회단체, 청소년단체와 가출청소년 찾기 합동 실시
 - 가출청소년 불법취업업소 및 은신용의지역 점검
 - 발견된 가출청소년은 상담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재가출 방지

6.8.2 가출청소년 선도단체 활동 지원(문화관광부)

- 지원단체 : 한국청소년선도회(회장 박부일)
- '97 지원예산 : 235백만원
- 유홍업소 등에 불법고용되어 있는 가출청소년을 찾아주는 사업 지원
- 선도 실적 : 별첨 <표 IV-6> 참조

6.8.3 가출청소년 '쉼터' 확충 및 지원(문화관광부)

- '98년중 전국 7개소로 확충 운영(현재 2개소)
- (추가설치 : 서울, 대구, 광주, 인천, 대전)
-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

〈표 IV-6〉 한국청소년선도회의 가출청소년 선도실적

계	'93	'94	'95	'96	'97
3,402명	852	276	519	842	913

(7) 매체물 대책

7.1 청소년유해매체물 정화(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 공연예술진흥협회의,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강화(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 심의실적 : 13회에 걸쳐 총 1,114건 유해매체물 심의결정(98.2/4분기)
- 홍보 실적
 - 859개 기관·단체에 통보
 - PC통신 게재(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 판보 고시

7.2 '청소년 방송프로그램 협의회' 구성 운영(문화관광부)

- 구 성 : 98. 6. 17
-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프로그램 순화 및 청소년 건전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권장 등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
- 문화관광부 등 정부관계기관, 방송3사, 시청자 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회의개최)
- 방송프로그램의 역기능 방지(방송위원회의 규제기능 보강, 방송3사 편성책임자 간담회 정례화, 각방송사의 시청자 위원회 활성화), 건전 방송문화 조성(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청소년관련 우수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상제도 실시, 방송제작 관계자 교육훈련강화), 방송매체의 건전 활용도 제고 등 추진

7.3 유익매체물 개발

7.3.1 '이달의 우수게임' 시상 확대 추진(문화관광부)

- 대상 : 건전 컴퓨터 프로그램
- 수상게임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 도서관, 문화단체 등에 제공·홍보
- 비디오·도서 등 타 매체에까지 시상 확대 검토

(8) 유익환경 조성 대책

8.1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8.1.1 청소년선도 모범업소 선정(행정자치부)

- 시군구별로 유해환경 자율정화 및 청소년선도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특별관리
- 시군구 실정에 맞는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모범사례 홍보
 - 수도물사용료 감액(시·군·구비 지원)
 - 일정기간 동안 위생업소 단속·점점 유예(예 : 1년)
 - 모범시민으로 선정하여 기관장 표창 등

8.2 모범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제'

8.2.1 '준법우수학교' 선정(법무부)

- 선정배경
 - 학교폭력이 없는 우수학교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교사 및 학부모들의 관심을 고취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육성
- 대상학교 선정
 - 각 지역 중·고교에 대하여 1년동안 형사처벌, 학칙 위반학생이 가장 적은 학교를 '준법 우수학교'로 선정
 - 연 1회, 교육청, 시구청 및 시민대표 등과 공동으로 우수학교 선정
 - '98년에는 4개 지방검찰청에서 10개 학교 선정, 연말까지 전국적 실시 예정
- 선정학교에 대한 지원
 - '우수학교패'와 '기'(旗) 수여
 - 각종 지원금과 기자재 우선 지원
 - 우수학교 및 교사에 대한 각종 특혜방안 강구 중

8.3 건전 문화활동 지원

8.3.1 문화적 감수성 배양 및 정서순화(문화관광부)

-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정서순화 및 문화 mind를 갖춘 청소년 육성
-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등 기존문화시설 및 문화단체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교 특별활동과 연계)

8.3.2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규모 확대(문화관광부)

- 현재 156개교, 8,000명 지원

8.3.3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및 벽지청소년을 위한 순회연극공연 지원(문화관광부)

8.4 인성함양 활동 개발

8.4.1 다양한 수련활동 개발(문화관광부)

- 인성함양 차원에서 생활권 및 자연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98현재 93종 개발, 향후 매년 약 10종씩 개발·보급)
- 청소년단체, 지도자,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유도

- 놀이마당, 바자회, 가족노래자랑, 영화시사회 등 청소년선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생·학부모 및 청소년 상담요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수련대회 등 개최(여름방학 기간 중)
- 8.4.2 청소년 도덕성 회복운동 및 부모교육 실시(문화관광부)
 -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지도방법 교육
- 8.4.3 협동 및 애국애족 정신함양 등을 위한 특별행사 지원(문화관광부)
 - 통일성취 다짐 이동야영대회('95부터 매년지원)
 - 기 간 : '98.6.15~8.10(주요활동별로 실시)
 - 장 소 : 임진각, 통일전망대 일원
 - 주 관 : 보이스카우트연맹
 - 참가인원 : 대원, 지도자 등 2,000명
- 8.4.4 환경정화 활동 행사 지원(문화관광부)
 - 보이스카우트연맹 주관 청소년환경보전대회 지원
 - 기 간 : '98.5~'98.7
 - 장 소 : 인천 등 7개지역
 - 참 가 : 10,000여명
- 8.5 청소년 단체활동 권장
 - 8.5.1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권장(문화관광부)
 - 8.5.2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책 부여(문화관광부)
 - 청소년단체에서 일정기간 훈련 및 연수받은 교사에게 호봉승급 등 혜택부여
 - 실적이 높은 청소년단체활동 담당지도자에 대해 인사평점에 반영
 - 교원표창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자에 대해 특별 배려 등
 - 8.5.3 스카우트 운동 확산(문화관광부)
 - 지방자치단체·학교·지역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스카우트 운동 정착(문화관광부)
 - 청소년운동 유공자의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98년 7월)
 - 대상자 : 조철호 보이스카우트 창시자
- 8.6 건전활동 공간 조성
 - 8.6.1 수련공간(문화관광부)
 - 각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공간의 단계적 확충
 - 청소년수련시설을 매년 20~30개소씩 확충
(현재 609개소 확보 : 기 건립운영 470개소, 건립중 139개소)
 - <청소년 문화의집>을 생활권역별로 확충
 - 8.6.2 스포츠공간(문화관광부)
 - 길거리 농구대 등 청소년이용 간이공간·시설 대폭 확충
 - 농구대를 '99년까지 매년 600대 이상씩 설치('97년 1,270대 기보급)
 - 동네 미니 운동장 설치('98년부터 매년 20개소 이상 설치)

- 동사무소 폐지에 따라 신규 운영되는 사회복지회관에 청소년 공간 마련 추진(행정자치부 등과 협조)
 - 대규모 주택단지에 청소년전용공간 확보 의무화 추진 등(건설교통부와 협조)
- 8.6.3 휴식·문화공간(법무부)
- 청소년보호 안전구역 ‘푸른쉼터’ 개설
 - 청소년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 마련
 - 내용
 - 시민과 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 등을 보호·안전구역(‘푸른쉼터’로 명명)으로 지정
 - 간이 농구대 등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보완
 - 음악회, 연극회, 웅변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 유치
 - 자원봉사위원들에 의한 철저한 순찰활동으로 범죄예방
 - 폭주족 등 청소년범죄의 강력한 단속
 - 현 황
 - 서울, 인천, 청주, 충주 등 9개 지역에서 실시중, 전국적으로 개설 진행중
 - 동송동 대학로를 서울지역 푸른쉼터 제1호로 선포(98.5.1)
- 8.6.4 학습공간(문화관광부)
- 청소년공부방 운영 내실화(문화관광부)
 - 현재 374개소 운영중인 것을 지역별로 연차적 확대(농어촌지역우선 설치)
 - 기존공부방중 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공부방 폐지 및 신규지정 등을 통해 운영효율성 제고
- ※ '98 지원예산 : 156백만원(1개교당 1백만원)
- 8.6.5 주거공간(문화관광부)
- 농어촌 출신학생 기숙사 건립지원(문화관광부)
 - 기숙사는 도별 1개소 건립목표(현재 2개소 건립운영)
- ※ '98 지원예산 : 7,166백만원(농특세, 지방교부금 등)
- 기숙사 건립 : 6,000백만원
 - 장학 사업 : 1,166백만원(연 690명 지원)
- 8.7 소외계층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 8.7.1 소외·불우 청소년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실시(문화관광부)
- 생활권 수련시설을 활용, 불법고용 유혹에 빠지기 쉬운 소외·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프로그램 확대 실시
 -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조직 확대

(9) 직업능력 개발 대책

9.1 청소년을 위한 직업안정기능 확충

9.1.1 명예 직업상담원 활용(노동부)

- 실업계 고교에 직업상담·직업지도 기능을 강화, 건전한 직업관 형성 유도

9.1.2 인력은행 활용(노동부)

- 청소년 실업자의 단시간 근로(part time) 지원을 위한 별도 취업알선창구 개설·운영

9.1.3 고용정보 전산망을 확충(노동부)

- 구인·구직정보 외에 훈련정보, 직업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
-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제공 수단을 다양화하여 청소년의 고용관련 정보 제공 기회 확대

9.2 청소년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9.2.1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단기 특별 직업훈련과정 확대 개설(노동부)

- 대상 : 고졸이하 비진학 청소년
- 기간 : 6월~1년
- 공공직업훈련기관(95개) 및 기업의 사업내 훈련기관(237개) 등을 최대한 활용

※ '97년 7만 2천명 훈련

- 기술·기능훈련 및 인성교육 병행 실시

9.2.2 기능사 훈련에 청소년의 훈련 참여 촉진(노동부)

- 기능사 훈련에 학점 인정을 확대
- '98년 : 6개 시범 훈련기관 → '99년 100개 이상 훈련기관.

9.2.3 다양한 청소년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노동부)

- 청소년 선호직종 및 취업 유망직종 집중개발('98년중 실내인테리어, 영상기술 등 10개직종 개발)

9.2.4 다양한 훈련방식 개발(노동부)

- 탄력 시간제훈련 및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훈련과정 등 활성화

※ '98년 하반기중 인터넷 가상훈련, TV방송통신훈련 시범실시 추진

9.2.5 훈련 바우처(Voucher) 제도 시행(노동부)

- 청소년 실업자 직업훈련 선택권 확대

9.2.6 중장기 종합 직업훈련대책 수립(노동부)

9.3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능력개발

9.3.1 가출청소년에 직업 교육훈련 실시(문화관광부)

- 쉼터 등 가출청소년 임시체류시설과 직업교육훈련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 쉼터에 일시 수용된 청소년을 직업훈련원에 보내 직업훈련 실시
- 적성과 취향을 고려한 직업교육 실시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촉진

10.1 중도탈락 예방

10.1.1 '즐거움 학교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교육부)

- 부적응 학생 발생의 원천적 해소
- 건전한 또래문화 육성을 위한 학교축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10.1.2 학생 퇴학처분의 최소화 추진(교육부)

- 선도위주 학생징계 제도의 내실 운영
- 학생 징계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10.1.3 1교사 1학생 결연지도(교육부)

- 요 선도 학생, 실직/결혼 가정 학생 대상

10.2 중퇴생 복교율 제고

10.2.1 복교제도 홍보(교육부)

- 시·도 교육청별로 중퇴생 복교 특별 추진 기간 연장 운영
 - 기간 : 98. 7. 15 ~ 9. 15
 - 주관 : 시도 교육청
- 조기 탈락자(중학교 저학년)의 복교권장, 희망교 우선 배정 확대

10.2.2 복교권장 행정지도(교육부)

- 복교생 수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행정 지도 강화

10.2.3 복교생 후견인 결연사업 실시(교육부)

- 명예교사, 상담자원봉사자 등을 후견인으로 활용하여 복교후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지속적 상담과 지원 활동 전개
- 1학생 1교사 결연 상담지도 시행

10.3 중퇴후 복교생 적응교육

10.3.1 복교생 학교적응 특별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 시도 교육청별 운영
 - 복교 전후와 방학 중 다양한 봉사·수련 프로그램을 통한 심성 순화교육 실시

10.3.2 중퇴후 복교생을 타교에 전학시키는 사례 지도/단속(교육부)

10.3.3 다양한 직업/진로 지도(교육부)

- 복교 후 재 탈락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다양한 직업/진로 교육기관 안내

10.4 대안학교·특성화 학교 확대

○ 필요성(검찰청)

-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재능이나 흥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만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안학교 또는 특성화학교의 설립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

○ 추진방안(검찰청)

- 교육부의 이에 대한 관심과 예산 등 각종 지원 필요
- 대안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 등 제도화 방안 강구

10.4.1 대안학교 설치의 법적 제도화(교육부)

10.4.2 대안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교육부)

4) 정부의 청소년폭력대책에 관한 평가

최근의 IMF 영향으로 실직 가정 및 이혼가정이 증가하는 등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청소년의 가출, 자살, 비행 등이 늘어나고 유흥업소나 서비스업소에서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적 착취와 타락을 조장하거나 출입을 묵인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업소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IMF 이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등 당면한 현안 문제들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다소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다 설상가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 8월부터 종전의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을 이미 결정·발표한 바 있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릴 경우 여자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유흥업소가 더욱 늘어나 청소년의 성 탈선, 불법 퇴폐영업 등이 더욱 심화되고 늦은 귀가, 경제적 손실 등 과소비 풍조가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1) 부처별 청소년대책의 특성

〈표 IV-7〉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 청소년보호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7개 부처가 제시한 청소년대책 총 160가지를 부처별·정책영역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볼 수 있다. 현황표에서 제시한 부처별 시책의 종류 및 시책의 개수는 독립된 시책항목으로 분류가능하다고 연구진이 임의로 판단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 정책분류 및 통계치는 아님을 밝혀둔다.

이 연구에서 독립된 정책항목으로 분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요시책은 총 19개로서, 이 중에서 ‘협력시스템 구축’ 영역이 6가지, ‘대 국민계도’ 영역이 6가지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시책 중에는 청소년을 직접 지도·교육하거나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미진

〈표 IV-7〉 부처별·영역별 청소년대책 현황

정책 영역별	영역별 시책 수	영역별 순위	청소년 보호위	법무부	교육부	행정 자치부	보건 복지부	문화 관광부	노동부
부처별 시책수	160		19	34	33	19	11	25	19
협력 시스템 구축	12	6순위	▲▲▲ ▲▲▲	▲	▲	▲▲▲			
단 속	24	2순위	▲▲▲	▲▲▲ ▲▲▲ ▲▲	▲▲	▲▲▲ ▲▲▲ ▲▲	▲▲		▲
처벌· 사후관리	11	7순위		▲▲▲ ▲▲▲ ▲▲			▲▲		▲
대국민 계도	18	4순위	▲▲▲ ▲▲▲		▲▲▲ ▲▲	▲▲	▲▲▲	▲▲	
청소년 지도	24	2순위			▲▲▲ ▲▲▲ ▲▲▲ ▲▲▲ ▲▲		▲▲▲ ▲	▲▲	▲▲▲ ▲
시민감시 · 선도	30	1순위	▲▲▲	▲▲▲ ▲▲▲ ▲▲▲ ▲▲▲ ▲▲	▲▲	▲▲▲ ▲▲		▲▲	▲▲▲ ▲
매체물 정화	4	10순위	▲					▲▲▲	
유익환경 조성	17	5순위		▲		▲		▲▲▲ ▲▲▲ ▲▲▲ ▲▲▲ ▲▲▲	
직업 능력개발	10	9순위						▲	▲▲▲ ▲▲▲ ▲▲▲
중퇴자 대책	11	7순위		▲▲	▲▲▲ ▲▲▲ ▲▲▲				

주 : 부처별 시책(▲)의 종류 및 시책의 개수는 독립된 시책항목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연구진이 임의로 판단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 정책분류 및 통계치는 아님.

학자·중퇴자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유해 매체물·약물·업소 등의 정화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법무부는 총 34개 시책 중에서 ‘단속’ 영역에 8가지, ‘처벌·사후관리’ 영역에 8가지, ‘시민감시·선도’ 영역에 14가지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의외로 법무부 보호시책 중에 시민감시·선도 영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검찰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자활용 시책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총 33개 시책 중에서 ‘대국민계도’에 5가지, ‘청소년지도’에 14가지, ‘중퇴자대책’에 9가지 시책을 보고하였다. 교육부가 보고한 대국민계도 시책은 대부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활용한 학부모 공지사항 전달 등이다. 다수 청소년들이 학생인 점과, 학생들이 사회 내에서 각종 비행 등을 저지른다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행대책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향이 지나치게 교내 지도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및 가출청소년 대책으로서 ‘협력시스템 구축,’ ‘시민감시·선도,’ ‘유익환경조성,’ ‘직업능력개발’ 등과 관련된 시책을 거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경찰청과 더불어 ‘단속’과 ‘시민감시·선도’에 청소년보호대책의 역점을 두는 등 총 19개의 시책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가출 및 불법고용 등의 비행문제가 가정결손, 실직가정, 유흥업소 불법영업 등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대상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책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보고한 25개 청소년보호 시책 중에서 15개가 ‘유익환경 조성’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는 문화관광부의 주된 청소년업무가 청소년수련활동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기본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는 주로 업소 불법고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청소년의 합법적 고용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이 바람직한 접근으

로 판단된다. 노동부가 보고한 19개 시책 중에는 ‘직업능력개발’ 9가지, 근로감독차원에서 ‘시민감시·선도’ 4가지, ‘청소년지도’ 4가지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폭력, 불법 업소고용 등 청소년비행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단속위주의 “一方向的”이 아니라 “全方位的”으로 다양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청소년보호대책이 보여주는 새로운 경향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과 더불어 민간의 자원봉사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예 : ‘시민감시·선도’ 시책 30가지). 둘째, 청소년비행대책으로서 단속과 병행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있다(예 : ‘대국민제도’ 시책 18가지). 셋째, 정부부처 각각의 단편적인 정책집행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관 또는 관-민 협력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예 : ‘협력시스템 구축’ 시책 12가지).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청소년 보호대책에서 앞으로 더욱 보완, 강화되어야 할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첫째,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보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청소년의 자기개발 기회를 최대한 넓혀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청소년 보호대책은 다소 추상적·포괄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둘째,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청소년폭력, 불법고용 등 현안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이슈에 대해 신규 예산배정 등 정책시행 의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은 채 기존의 각 부처 고유업무를 ‘학교폭력대책’ 또는 ‘불법고용대책’으로 보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불법취업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 주는 교육·문화·복지적 차원의 실천적 Action Program의 개발·실시에는 범정부적 의지가 상당히 미진하다. 그 예로서 ‘유익환경 조성’에는 문화관광부, ‘직업능력개발’에는 노동부, ‘중퇴자 대책’에는 교육부만이 시책을 보고하였을 뿐 다른 부처에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야야말로 유관부처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할 Action Program분야 일 것이다.

(2) 청소년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원인¹⁾

①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의 악순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청소년문제는 학교만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 등을 통하여 외부기관에 학생들의 문제를 알리는 것을 학교나 교육당국에서는 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에 알려질 경우 문제학교로 낙인 찍혀 학교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계의 풍토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방어적 자세로 인해, 외부기관의 협조와 구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음성화를 부채질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을 청소년의 '또래집단'에서 성장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단순한 문제로 보는 사회의 인식도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② 학교폭력의 음성화 및 신고기피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학생들간의 학교폭력은 노출이 안되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심각성을 인식한다.

③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탈선과 비행 증가

최근의 IMF영향으로 실직 가정 및 이혼가정이 증가하는 등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청소년의 가출, 자살, 비행 등이 늘어나고 유흥업소나 서비스업소에서 미성년자

1) '청소년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원인'에 포함된 일부내용은 대검찰청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에서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진단한 사항을 참고하였음.

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적 착취와 타락을 조장하거나 출입을 묵인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업소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IMF이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등 당면한 현안 문제들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다소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다 설상가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 8월부터 종전의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을 이미 결정·발표한 바 있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릴 경우 여자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유흥업소가 더욱 늘어나 청소년의 성 탈선, 불법 퇴폐영업 등이 심화되고 늦은 귀가, 경제적 손실 등 과소비 풍조가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④ 유관 부처간 상호협조체계의 미흡과 유관부처간 업무 중복에 따른 정책 혼선
 청소년문제는 가정·학교·사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그 동안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분적 성과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각 부처가 청소년문제를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요과제’로 인식하여, 상호연계 속에 종합적인 청소년보호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5) 향후 청소년폭력대책의 추진방향²⁾

(1) 상담활동의 실질화방안 강구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집단 따돌림의 대상인 학생들도 학교교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부모와 상의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 내 불량씨클에 의해 발생하는 조직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실제로는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 교사 또는 학

2) ‘향후 청소년폭력대책의 추진방향’에 포함된 일부내용은 대검찰청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에서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진단한 사항을 참고하였음.

부모 상담자원봉사자들에게 상담을 하여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의 시발점은 상담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을 통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학교내외 상담기관과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확립

상담활동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밝혀진 학생들의 고민이 곧바로 청소년보호단체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을 신속히 피해학생 또는 학교로부터 분리하거나 학교와 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감독하에 둘으로써 피해가 곧바로 구제되는 신속한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상담하면 폭력 당한 개인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3) 청소년상담 전문가·자원봉사자의 정기적인 학교방문 상담제 도입

학생들은 교사와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이 여러 설문조사들의 일치된 결과이다. 학생들이 보다 신뢰하는 외부 전문 상담기관 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학생들과 상담하는 등 일종의 학교사회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단위 청소년보호 전담 행정기관의 신설

청소년문제는 가정·학교·사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그 동안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분적 성과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학교폭력대책을 추진하는 행정체계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는 상이한 상급부처의 지휘를 받는 지방관서들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조성되지 않고 각기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시도에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위원장: 자치단체장), 시도경찰청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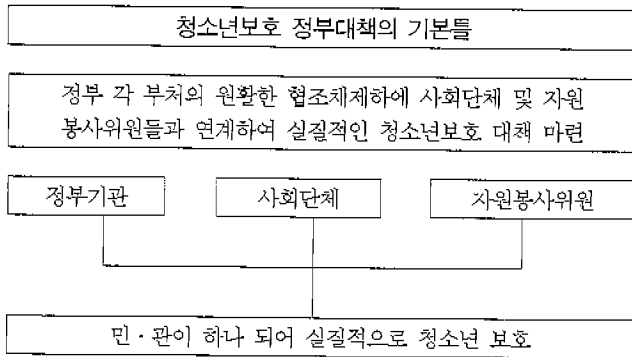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위원장: 경찰기관장),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폭력추방 대책반’(반장: 부교육감)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3개 지방관서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식기구나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일선에서는 폭력피해학생의 구제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의 선도보호가 단편적이고 그 효과가 크지 않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에서 문제상황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집단 따돌림의 대상인 학생들조차 학교와 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 내 불량씨름에 의한 조직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실제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학교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 부처는 청소년문제를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요과제로 인식하여 상호연계 속에서 종합적인 청소년보호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

(5)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가정-사회단체-유관기관간 협조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도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총괄기관이 필요하다. 마침 “청소년보호법”상에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이 기관이 지방 단위에서 청소년기관간 네트워크의 중심체로 기능하는 것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청소년사무소가 지방관서(자치체, 경찰청, 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사무소를 관장하는 중앙부서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등 타 부처보다 높은 위상과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청소년사무소를 관장하는 중앙부서는 현 행정체계상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폭력, 가출, 불법고용 등 각종 비행과 관련

〈그림 IV-1〉 민·관 협력네트워크 모델



출처 : '미성년자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자료'(98.6.26)

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모델은 〈그림 IV-1〉과 같이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청소년관계자 의식조사 결과분석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공무원들이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 영역,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청소년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및 견해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 영역에서는 자녀가 폭력의 상황에 놓였을 때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여러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가정 영역에서는 가정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하기,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학교 영역에서는 학교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내 상담강화, 폭력에 대한 대처교육실시, 교사에 대한 학교주변폭력 교육프로그램 실시, 폭력에 대항하는 학급규칙 만들기, 학부모, 교사, 학생, 경찰,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폭력대책 협의체 만들기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인권존중,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 “지킴이 업소” 지정,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조직 구성, 거리청소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정부 영역에서는 정부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 설치운영,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적극활용,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의 전문직화,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청소년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및 견해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해 알고 있는 법과 제도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법과 제도를 조사하였다.

1) 전반적 영역에서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전반적 영역에서는 자녀가 폭력의 상황에 놓였을 때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의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네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 예방대책의 순서를 정한다면 첫째가 항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화한 가정분위기, 둘째가 폭력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지식, 셋째가 정부 주도의 지역사회 민·관 폭력예방 협조체계 개발 운영, 넷째가 폭력상황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상담활동, 다섯째가 교사들의 학교주변 폭력 예방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이었다.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6항목 중에서 네 집단 모두 ‘청소년들의 비행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48.4%)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으며, ‘폭력에 관한 신고문화와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부족하다’(22.4%)와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20.3%)를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1) 폭력방지책

자기 자녀가 폭력[성폭력]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5개 항목을 제시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표 IV-8>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 질문에 대하여 교사를 제외한 학부모, 지도사, 공무원들 모두 ‘항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화한 가정 분위기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폭력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지식’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교사집단은 ‘폭력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지식’을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항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화한 가정분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학부모, 교사, 지도사, 공무원 네 집단 모두 ‘정부주도의 지역사회 민·관 폭력예방 협조체제 개발 운영’을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고, ‘폭력상황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상담활동’을 네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고, ‘교사들의 학교주변폭력 예방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일 적게 선택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네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 예방대책의 순서를 정한다면 첫째가 항시

<표 IV-8> 폭력방지책

(단위 : %)

집 단	필수적 기본 지식	온화한 가정 분위기	학교 상담 활동	교사 교육 프로그램	폭력 예방 협조체제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9.4	46.5	7.7	3.5	12.9	286	p=.000
교 사	42.7	33.3	3.3	1.3	19.3	150	
지도사	33.3	47.6	2.4	1.2	15.5	84	
공무원	26.4	43.2	15.5	4.1	10.8	148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화한 가정 분위기, 둘째가 폭력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지식, 셋째가 정부주도의 지역사회 민·관 폭력예방 협조체제 개발 운영, 넷째가 폭력상황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상담활동, 다섯째가 교사들의 학교주변폭력 예방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이었다.

(2) 청소년폭력 대책의 비효과성 이유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6개 항목을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 <표 IV-9>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네 집단 모두 ‘청소년들의 비행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학부모와 교사는 ‘폭력에 관한 신고문화와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부족하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고, 지도사들은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으며, 공무원들은 ‘학교와 교사가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이 부족하다’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학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를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고, 지도사와 공무원은 ‘폭력에 관한 신고문화와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부족하다’를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학부모와 지도사는 ‘학교와 교사가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이 부족하다’를 네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고, 교사는 ‘법·제도가 충분치 않다’를, 공무원은 청소년들의 입시 스트레스를 네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학부모와 지도사는 ‘법·제도가 충분치 않다’를 다섯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고, 교사와 공무원은 ‘법제도가 제대로

<표 IV-9> 폭력대책이 효과 없는 이유

(단위 : %)

집 단	법제도 미비	입시 스트레스	준법 정신 부족	학교/교사 노력부족	비행문화 만연	시민정신 부족
학부모	13.0	19.3	6.0	16.6	52.7	23.5
교 사	14.0	16.5	9.3	4.7	57.0	23.2
지도사	11.8	29.0	10.1	14.3	35.6	19.2
공무원	5.1	20.6	10.1	29.8	38.2	21.6

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를 다섯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학부모와 지도사는 '법·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를 제일 적게 선택하였고, 교사는 '학교와 교사가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이 부족하다'를, 공무원은 '법·제도가 충분치 않다'를 제일 적게 선택했다. 교사들이 '학교와 교사가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이 부족하다'를 제일 적게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네 집단 모두 '청소년들의 비행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2) 가정에서의 청소년폭력예방 및 대책

가정 차원의 청소년폭력예방 및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하기,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가지는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가정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네 집단 모두 대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교사와 지도사들이 가정에서의 폭력예방 대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그 다음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가정에서의 폭력예방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가장 적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

자녀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10>의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85.8%가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3.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교사집단은 93.8%가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매우 크거나 크다고 답하였고, 2.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학부모는 79.4%가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표 IV-10〉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59.9	19.5	14.5	4.6	6.7	282	p=.02
교 사	65.1	28.8	4.1	1.4	1.3	146	
지도사	63.9	27.7	8.4	-	-	83	
공무원	61.6	25.3	10.3	2.1	0.7	146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6.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지도사와 공무원은 각각 91.6%, 86.9%가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 갖기'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5$). 교사, 지도사, 공무원, 학부모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2)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자녀에 대해 폭력적인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11〉의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82.6%가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6%만이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지도사는 94%가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 청소년폭력 예

〈표 IV-11〉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34.2	41.7	14.0	5.8	4.3	278	p=.017
교 사	39.3	49.0	9.0	2.1	0.7	145	
지도사	41.0	53.0	4.8	-	1.2	83	
공무원	40.0	43.4	12.4	2.8	1.4	145	

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2%만이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학부모는 75.9%가 효과가 매우 크거나 크다고 답변하였고, 10.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교사와 공무원은 각각 88.3%, 83.4%가 효과가 매우 크거나 크다고 답변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5$). 지도사, 교사, 공무원, 학부모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3)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12>의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89.8%가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4%만이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지도사는 100%가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학부모는 85.1%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변하였고, 2.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교사와 공무원은 각각 93.8%, 89.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변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1$). 지도사, 교사, 공무원, 학부모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표 IV-12>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56.9	28.3	12.0	1.8	1.1	276	p=.006
교 사	66.9	26.9	5.5	-	.7	145	
지도사	77.1	22.9	-	-	-	83	
공무원	60.7	28.3	11.0	-	-	145	

(4)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을 갖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13>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86.7%가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2.1%만이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교사는 93.1%가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2.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학부모는 80.5%가 효과가 매우 크거나 크다고 답하였고, 지도사와 공무원은 각각 90.5%, 89.7%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5$). 교사, 지도사, 공무원, 학부모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표 IV-13>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

(단위 : %)

집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52.3	28.2	16.2	2.9	.4	277	p=.019
교사	64.1	29.0	4.8	0.7	1.4	145	
지도사	63.1	27.4	8.3	1.2	-	84	
공무원	56.8	32.9	9.6	0.7	-	146	

3) 학교에서의 폭력예방 대책

학교 영역에서의 학교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내 상담강화, 폭력에 대한 대처교육실시, 교사에 대한 학교주변폭력 교육프로그램 실시, 폭력에 대항하는 학급규칙 만들기, 학부모, 교사, 학생, 경찰,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폭력대책 협의체 만들기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학교에서의 폭

력예방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학부모가 가장 많이 지지를 하고 있으며, 교사가 가장 적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개별 및 전화상담 강화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개별 및 전화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IV-14>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개별 및 전화상담 강화’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4%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4.8%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6.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55.5%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2.3%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58.5%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4.6%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54.4%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0.2%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IV-14>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강화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1.0	33.8	28.5	13.2	3.6	281	p=.124
교 사	13.0	42.5	32.8	8.9	3.4	146	
지도사	23.2	35.4	26.8	13.4	1.2	82	
공무원	12.2	42.2	35.4	8.8	1.4	147	

(2) 전문가를 초빙하여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교육 실시

학교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IV-15>의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41.8%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교육 실시’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41.2%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7.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42.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8.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44.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7.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42.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3.6%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38.1%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고, 17.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IV-15> 폭력에 대한 대처교육 실시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13.0	29.0	39.0	15.2	2.9	276	p=.385
교 사	9.5	35.4	38.1	15.0	2.0	147	
지도사	14.8	27.2	44.4	12.3	1.2	81	
공무원	5.4	32.7	44.9	16.3	0.7	147	

(3) 교사들에 대한 학교주변폭력 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학교주변폭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IV-16>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3.8%가 ‘교사들에 대한 학교주변폭력 인식 및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4.3%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1.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7.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2.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44.5%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3.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62.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0.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52.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9.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1$). 지도사, 학부모, 공무원, 교사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교사들에 대한 학교주변폭력 인식 및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표 IV-16> 교사들에 대한 학교주변폭력 교육 프로그램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3.4	33.9	29.9	10.2	2.6	274	p=.002
교 사	7.5	37.0	41.8	11.6	2.1	146	
지도사	17.7	44.3	27.8	10.1	-	79	
공무원	5.4	32.7	44.9	16.3	0.7	148	

(4) 폭력에 대항하는 학급규칙을 만드는 것

학급에서 폭력에 대항하는 학급규칙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17>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5.8%가 ‘정기적인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폭력문제를 논의하고, 폭력에 대항하는 학급규칙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8.8%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5.4%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8.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6.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49.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7.6%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56.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3.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56.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1.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1$). 학부모, 공무원, 지도사, 교사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정기적인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폭력문제를 논의하고, 폭력에 대항하는 학급규칙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표 IV-17> 폭력에 대항하는 학급규칙을 만들기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8.1	30.8	24.3	12.9	3.8	263	p=.008
교 사	9.9	39.4	33.1	14.8	2.8	142	
지도사	25.0	31.3	30.0	12.5	1.3	80	
공무원	18.1	38.2	31.9	11.1	0.7	144	

(5) 청소년폭력대책 협의체를 만드는 일

폭력문제에 대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 경찰,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폭력대책 협의체를 만드는 일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18>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8.5%가 ‘폭력문제에 대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 경찰,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폭력대책 협의체를 만드는 일’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7.5%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4.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68.6%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9.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52.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5.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61.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3.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43.5%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1.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학부모, 지도사, 교사, 공무원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폭력문제에 대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 경찰,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폭력대책 협의체를 만드는 일’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표 IV-18> 청소년폭력대책 협의체를 만드는 일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30.4	38.2	21.6	7.4	2.5	283	p=.000
교 사	18.9	33.1	32.4	12.2	3.4	148	
지도사	31.0	31.0	25.0	9.5	3.6	84	
공무원	14.3	29.3	35.4	19.0	2.0	147	

4)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인권존중,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 ‘지킴이 업소’ 지정, 청소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조직 구성, 거리청소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1)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근절 및 청소년 인권존중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근절 및 청소년 인권존중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19>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74.4%가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근절 및 청소년 인권존중’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9.5%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6.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75.1%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9.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77.7%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4.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73.8%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6%가

<표 IV-19> 청소년에 대한 폭력근절 및 청소년 인권존중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7.8	47.3	15.9	6.1	2.9	277	p=.117
교 사	23.0	54.7	17.6	2.7	2.0	148	
지도사	31.0	42.9	22.6	2.4	1.2	84	
공무원	22.4	47.6	26.5	2.7	0.7	147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70.1%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4%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

유해매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0>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83.3%가 '유해매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2.2%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4.6%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78.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7.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94.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90.2%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했고, 2.4%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은 76.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했고, 2.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교사, 지도사, 학부모, 공무원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유해매체·업소

<표 IV-20>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 (단위: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49.1	29.7	13.3	4.7	3.2	279	p=.000
교 사	59.1	34.9	4.0	0.7	1.3	149	
지도사	59.8	30.5	7.3	2.4	-	82	
공무원	39.5	37.4	21.1	2.0	-	147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3)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 내 업소들을 지킴이 업소로 지정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 내 업소들을 '지킴이 업소'로 지정하여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1>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3.7%가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 내 업소들을 지킴이 업소로 지정하여 긴급피난처 제공'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3.8%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2.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60.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3.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53.4%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3.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56.8%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8.6%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40.4%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1.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학부모, 지도사, 교사, 공무원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학교주변이나 우

<표 IV-21> '지킴이 업소' 지정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4.7	35.3	26.2	9.8	4.0	275	p=.000
교 사	16.9	36.5	33.1	10.8	2.7	148	
지도사	18.5	38.3	34.6	6.2	2.5	81	
공무원	5.5	34.9	48.6	8.9	2.1	146	

범 지역 내 업소들을 지킴이 업소로 지정하여 긴급피난처 제공'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4)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조직 구성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참여유도 및 지역사회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2>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61.2%가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참여유도 및 지역사회조직 구성'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7.5%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1.3%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7.2%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2.6%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54.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0.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는 68.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1.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들은 61.2%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0.2%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22>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조직 구성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0.1	37.1	30.2	9.4	3.2	278	p=.262
교 사	13.5	51.4	25.0	8.8	1.4	148	
지도사	22.0	46.3	20.7	9.8	1.2	82	
공무원	17.0	44.2	28.6	9.5	0.7	147	

(5) 현장 위주로 활동하는 '거리청소년활동가' 양성·지원

폭력이 빈발하는 현장 위주로 활동하는 거리청소년활동가를 양성·지원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3>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3.1%가 '폭력이 빈발하는 현장 위주로 활동하는 거리청소년활동가 양성·지원'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3.8%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3.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6.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3.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51.4%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2.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들은 59.8%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7.3%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45.6%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5.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1$). 지도사, 학부모, 교사, 공무원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폭력이 빈발하는 현장 위주로 활동하는 거리청소년활동가 양성·지원'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표 IV-23> '거리청소년활동가' 양성·지원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4.9	31.1	30.0	10.3	3.7	273	p=.008
교 사	13.5	37.8	35.8	10.1	2.7	148	
지도사	18.3	41.5	32.9	6.1	1.2	82	
공무원	8.8	36.7	39.5	13.6	1.4	147	

5) 정부에서의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

정부 영역에서는 정부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 설치운영,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적극활용,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의 전문직화, 정부주도 폭력 신고문화 조성 및 계몽 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1)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4>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61.7%가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했고, 28.4%가 효과가 보통 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9.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67.7%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0.6%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67.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6.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들은 50.0%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8.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51.0%가 효과가 크거나

<표 IV-24>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35.1	32.6	21.6	8.9	1.8	282	p=.000
교 사	25.9	41.5	26.5	6.1	-	147	
지도사	23.2	26.8	41.5	6.1	2.4	82	
공무원	9.5	41.5	36.1	10.2	2.7	147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2.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도사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이 제일 많은 비율로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 총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 설치 운영

총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5>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총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설치 운영’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40.4%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22.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4.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4.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37.6%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1.2%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들은 27.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9.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22.8%가 효과가

<표 IV-25> 총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 설치 운영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14.7	40.2	30.4	12.7	2.0	102	p=.013
교 사	10.6	27.1	41.2	17.6	3.5	85	
지도사	5.5	21.8	43.6	23.6	5.5	55	
공무원	5.4	17.4	48.9	23.9	4.3	92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28.3%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5$). 학부모, 교사, 지도사, 공무원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충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설치 운영'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3)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적극활용

폭력 가해청소년 및 부모에게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6>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5.5%가 '폭력 가해청소년 및 부모에게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적극활용'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1.1%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3.4%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3.6%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5.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70.3%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6.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들은 48.2%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8.1%

<표 IV-26>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적극 활용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6.8	26.8	30.7	12.5	3.2	280	p=.000
교 사	24.3	45.9	23.0	5.4	1.4	148	
지도사	19.3	28.9	33.7	14.5	3.6	83	
공무원	13.5	35.1	38.5	12.2	0.7	148	

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48.6%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2.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교사, 학부모, 공무원, 지도사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폭력가해 청소년 및 부모에게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적극활용’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4)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의 전문직화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을 전문직화하는 것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7>의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7.2%가 ‘경찰, 지방자치단체,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의 전문직화’가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2.9%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9.9%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9.1%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1.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59.5%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7.4%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들은 59.8%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8.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50.0%가 효과가 크거나

<표 IV-27>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의 전문직화

(단위: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4.0	35.1	29.0	10.4	1.4	279	p=.062
교 사	20.3	39.2	33.1	7.4	-	148	
지도사	26.8	32.9	31.7	6.1	2.4	82	
공무원	12.2	37.8	40.5	9.5	-	148	

매우 클 것이라고 답했고, 9.5%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네 집단 중 가장 적은 비율의 공무원 응답자가 ‘경찰, 지방자치단체,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의 전문직화’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5)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이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IV-28>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4.7%가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이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32.6%가 효과가 보통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12.7%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은 59.9%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4.0%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교사들은 57.7%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8.1%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도사들은 52.5%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3.8%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무원은 43.2%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고, 14.2%가 효과가 적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표 IV-28>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

(단위 : %)

집 단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크다	보통	효과가 적다	효과가 매우 적다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23.7	36.2	26.2	11.5	2.5	279	p=.006
교 사	19.5	38.3	34.2	8.1	-	149	
지도사	20.0	32.5	33.8	13.8	-	80	
공무원	8.8	34.5	42.6	11.5	2.7	148	

이들 네 집단의 답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1$). 학부모, 교사, 지도사, 공무원 순으로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특히 적은 비율의 공무원 응답자(43.2%)가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6) 청소년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및 견해

청소년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및 견해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해 알고 있는 법과 제도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법과 제도를 조사하였다.

(1)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해 알고 있는 법·제도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표 IV-29>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24.0%인 161명이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하여 적어내었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법’이 80건으로 제일 많았다. 청소년 기본법이 2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청소년보호법 및 미성년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15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청소년폭력 신고센터 운영이 13건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소년법이 7건이었으며, 형법도 7건이었다. 지킴이 제도에 관한 것이 5건이었다. 교내 폭력신고 센터가 4건 나왔다. 가정폭력방지법이 3건 나왔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2건 나왔다. 상담전화가 2건, 봉사활동이 2건 나왔다. 이밖에 경찰청 청소년 선도위원회, 총리실 산하 청소년대책위원회, 준법정신 제고, 법의 적절한 활용, 사랑의 대화, 교회 나가는 것, 격리, 호루라기 갖고 다니기 등이 1건씩 나왔다.

네 집단이 답변한 비율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공무원이 제일 많이 답변하였으며, 학부모가 제일 적게 답변하였다. 학부모는

〈표 IV-29〉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해 알고 있는 법·제도

(단위 : %)

집 단	알고 있는 경우	모르는 경우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12.1	87.9	288	p=.000
교 사	22.6	77.4	150	
지도사	36.9	63.1	84	
공무원	41.2	58.8	148	

12.1%인 35명이 답변하였고, 교사는 22.6%인 34명이 답변을 하였으며, 지도사는 36.9%인 31명이 답변하였으며, 공무원은 41.2%인 61명이 답변하였다.

(2) 제안하고 싶은 법·제도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법과 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표 IV-30〉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26.8%가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법·제도를 적어내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정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폭력 학생의 부모도 책임
-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크므로 이를 통제 혹은 정화
- 유해환경 제거 및 유익환경 증진
- 강력한 처벌(법 제도 강화)
- 법 제도 만능주의 탈피
- 교육제도 개선(인성교육/열린교육)
- 청소년 야간(10시 혹은 11시) 통행금지
- 봉사활동
- 청소년 인격 존중
- 폭력청소년 순화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제공
- 기타 등

〈표 IV-30〉 제안하고 싶은 법·제도

(단위: %)

집 단	제안한 경우	제안하지 않은 경우	사례 수	유의도
학부모	19.4	80.6	288	p=.000
교 사	30.0	70.0	150	
지도사	47.6	52.4	84	
공무원	26.4	73.6	148	

네 집단이 답변한 비율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 지도사가 제일 많이 답변하였으며, 학부모가 제일 적게 답변하였다. 학부모는 19.4%가 답변하였고, 교사는 30.0%가 답변을 하였으며 지도사는 47.6%가 답변하였으며, 공무원은 26.4%가 답변하였다.

7) 청소년과 청소년 관계자의 의식비교를 통한 종합평가

청소년관련 학부모, 교사, 지도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첫째,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네 집단 모두 '청소년들의 비행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폭력에 관한 신고문화와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부족하다'와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를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둘째, 네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 예방대책의 순서를 정한다면 첫째가 항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화한 가정 분위기, 둘째가 폭력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지식, 셋째가 정부주도의 지역사회 민·관 폭력예방 협조체제 개발 운영, 넷째가 폭력상황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상담활동, 다섯째가 교사들의 학교주변폭력 예방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이었다.

셋째, 대체적으로 가정 차원의 예방 및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네 집단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4항목 모두에 대하여 82.6~89.8%의 응답자가 효과가 크거

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넷째, 한 항목을 제외한 학교 차원의 예방대책들에 대해 응답자들의 53.8~58.5%의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교육 실시’는 전체 응답자의 41.8%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매우 크거나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다섯째, 지역사회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중 ‘유해매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에 대해서 83.3%의 응답자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근절 및 청소년 인권존중’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4.4%가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지킴이 업소 지정, 지역사회조직 구성, 거리청소년활동가 양성·지원 등 나머지 3항목에 대해서는 53.1~61.2%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섯째, 한 항목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54.7~61.7%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나머지 한 항목은 모든 문항 중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항목으로 ‘총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설치 운영’으로 전체 응답자의 37.1%가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일곱째, 대체적으로 가정 차원의 예방대책을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대책을, 그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예방대책과 정부에서의 예방대책은 비슷한 정도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여덟째,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예방대책은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으로 전체 응답자의 89.8%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예방대책은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로 전체 응답자의 86.7%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했다.

아홉째,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항목은 ‘총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 대책본부설치 운영’으로 전체 응답자의 37.1%가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적은 지지를 받은 예방대책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교육 실시’로 전체 응답자의

41.8%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가 매우 크거나 크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예방 대책들은 모두 53.1%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열째, 가정에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가장 적게 지지를 하였고, 학교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적게 지지를 하였으며, 정부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적게 지지를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에게 청소년폭력에 관한 대책을 묻는 연구가 아주 적어 매우 힘들었다. 청소년폭력에 관한 연구 중 이상오(1996)의 연구, 최윤진(1997),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의 연구를 이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는 동일한 문항이 부재한 관계로 내용이 비슷한 문항끼리 비교하였다. 우선 이상오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 1,633명, 학부모 334명, 교사 114명, 경찰 100명, 정책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1996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윤진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6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의 중학생 350명, 고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 3,277명, 학부모 1,043명, 교사 390명을 대상으로 1997년 5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상오(1996)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학생들의 신고, 해결의식의 부족에 34.2%가 응답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의 부재에 11.8%가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폭력 대책이 비효과적인 이유로 6개 항목 중 폭력에 관한 신고문화와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부족하다는 22.4%로 비행문화 만연(48.4%)의 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주도의 폭력 신고문화 조성 및 계몽이 청소년폭력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54.7%의 응답자가 답변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55.3%가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강화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상오(1996)의 연구에 의하면 유해·향락업소의 단속을 강화하는 문제가 청소년폭력 예방에 중요하다고 69.1%가 답변하였다. 또한 최윤진(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폭력 대책으로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 순찰강화(34.0%), 법적 처벌강화(29.1%), 폭력에 관한 상담시설

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23.8%),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해업소의 단속강화(13.1%)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해매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83.3%의 응답자가 답변하였다.

이상오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50% 정도의 응답자가 답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3% (6개 항목 중 3번째)가 학교와 교사의 노력 부족을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이 비효과적인 원인으로 들었다.

최윤진(1997)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으로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극적인 단속(37.7%), 학교 교사의 폭력이나 구타 감소(28.6%),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실시(20.2%)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74.4%가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근절 및 청소년 인권존중이 청소년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5.8%가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크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오(1996)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자녀와 하루 대화시간이 30분 이하가 51.9%, 30분~1시간이 26.3%, 1~2시간이 17.4%, 2~3시간이 2.4%, 3시간 이상이 2.0%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와 하루 30분 이내로 대화하고 있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10가지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을 두 가지 선택하게 하였다. 제시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립, 학교폭력 예방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 교사 확보, 교사의 학생관심 증대방안, 교사체벌 금지, 학부모 학교방문, 경찰 개입 강화, 가해학부모 책임 가중, 청소년 문화공간 증설, 유해환경 퇴치. 이 중 가장 시급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형성과 유해한 교육환경의 퇴치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1·2위로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서도 '유해매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에 대해서 83.3%의 응답자가 효과가 크거나 매우 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폭력 대책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폭력 예방에는 가정 차원의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가정에서 자녀와 많은 대화시간을 갖고,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을 조심하고,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을 운영하고,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질 때 청소년폭력의 짙은 원천봉쇄될 것이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시 당하여 좌절과 분노가 쌓일 때 그것이 여러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며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이 청소년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기 쉽다.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비행문화의 만연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건전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할 때, 많은 청소년들은 자연히 유해환경을 접촉하게 되고, 이러한 유해환경과의 접촉은 청소년 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을 촉진하게 된다. 청소년폭력을 포함하는 청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의 인권존중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학교교사의 폭력이나 구타감소를 학교에서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중요한 예방대책으로 들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조심하는 것을 중요한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으로 들고 있다.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게 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강자는 어른이고 약자는 청소년이다.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가한 폭력이나 무시는 청소년에게 분노를 심어 주고, 이러한 분노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대인 같은 청소년에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청소년폭력을 예방하려면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고 청소년에게 폭력의 사용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각 주체들이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폭력에 관한 신고문화와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청소년폭력 대책 사례

1) 일본

일본의 사례로는 전반적인 폭력추방을 위한 공익법인으로서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1개소씩 설립되어 있는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가 있고, 청소년 비행 및 교내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조직으로서 ‘소년보도센터,’ ‘방법협회,’ ‘어머니회,’ ‘학교경찰연락협의회,’ ‘직장경찰연락협의회’ 등이 있다.

(1)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일본의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는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및 이것에 의한 피해의 구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청소년폭력에 관한 대책기구는 아니다. 그러나 기관의 기본적 성격이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설립된 조직체라는 점과 그 활동내용에 있어 청소년의 폭력단 가입방지 및 폭력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어 이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폭력대책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소개하고자 한다.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에는 중앙기구로서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1개소씩 설립되어 있는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가 있다³⁾.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는 폭력단이 없는 밝은 사회를 지향하고 폭력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폭력단은 그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가지 수단으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개입해 부당한 자금의 획득을 하고 있어 1992년 3월,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폭력단대책법’이라 부르고 있는 법률이다. 폭력단대책법은 지금까지 대처가 곤란해 왔던 민사개입폭력의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대립항쟁에 의한 시민 모두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이하의 내용은 인터넷의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홈페이지(<http://www.1a.meshnet.or.jp/BOOTSUI/>)를 통해 검색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를 강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국가공안위원회가 폭력단원에 의해 부당한 행위의 방지와 폭력단원에 의한 피해의 구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을 전국에 한 개만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로 지정하여, 지정된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으로 인해 1992년 12월 제단법인 전국방범협회연합회가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로 지정되었다.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홍보활동이다.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예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사상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둘째,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담당자의 연수이다. 폭력추방상담위원과 그밖의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셋째, 조사연구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미치는 폭력단의 영향이나 폭력단이 시민생활에 주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넷째,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의 사업에 관한 연락조정이다.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연락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는 폭력단대책법에 의해 각 도도부현에 1개씩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폭력단대책법에서는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와 폭력단원에 의한 피해의 구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을 시민 모두와 각 자치체가 일체로 된 폭력추방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으로 하기 위해 도도부현마다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
- 둘째,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폭력추방활동을 돕는 활동
- 셋째,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관한 상담활동
- 넷째, 소년에 대한 폭력단의 영향을 배제하는 활동

다섯째, 폭력단으로부터 이탈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돕는 활동
 여섯째, 폭력단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지원활동
 일곱째,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

폭력단에 관한 상담은 도도부현에 각각 설립되어 있는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에서 접수하고 있고, 변호사, 소년지도위원, 보호사, 경찰OB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폭력추방상담위원이 대응방침에 관해 조언한다. 폭력추방상담위원은 상담자의 요망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상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상담은 무료이고,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에서 이루어지거나 전화, 서신에 의한 상담도 받고 있다. 또한 상담의 결과 상담자의 요망에 따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원조를 받거나 변호사회 등 관계기관으로의 인계도 있다.

폭력단원의 부당한 요구는 범죄로서 형사사건이 되거나 폭력단대책법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단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조기해결의 길이다. 폭력단원에 관한 통보, 상담은 경찰본부나 경찰서의 폭력단대책과에서 접수하고 있다. 또한 상담용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있는 부현도 있다. 신고전화는 110번이다.

각지 도도부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의 활동사례 중 청소년과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현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는 폭력단원으로부터 고교생인 자식이 조직원이 될 것을 협박받고 있다는 모친의 상담을 받고 상담내용을 검토한 결과 폭력단대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력단원의 가입강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통보한 바, 그 폭력단원의 가입강요 행위에 관하여 중지명령이 내려져 상담자의 자식의 폭력단 가입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2) 청소년비행 및 교내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조직

일본의 청소년비행 및 교내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이하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7:348~349).

먼저 소년보도센터는 소년의 비행방지에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가 공동으로 소년보도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설립된 것이고 가두보도, 소년상담, 사회환경의 정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 현재 전국의 소년보도센터의 설치 수는 696개소이고, 그곳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소년보도위원이 약 75,000명, 가두보도에 종사하는 소년보도위원이 연간 약 872,000명, 소년보도위원에 의해 보도된 소년수가 약 350,000명, 소년상담건수가 약 131,000건이다. 총무청에서는 소년보도센터에 대해 운영비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6년 현재 조성대상 수는 264개소이다.

방법협회는 범죄의 방지, 폭력의 배제 등 외에 소년비행 방지와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범죄방지조직의 중핵으로서 소년의 비행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경찰서 단위에서 조직되어 있고 그의 실천적 활동의 중심인 방법연락소는 1996년 현재 전국에 9,75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역에서 어머니회 등의 지역여성조직이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의 입장에서 여성의 특성을 살려 홍보계발, 가두보도, 사회환경의 정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생의 비행과 교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이 밀접하게 연락·제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약 90%가 참가하여 약 2,600개 조직의 학교경찰연합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다. 또한 경찰과 직장도 밀접하게 연락·제휴하여 근로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그의 건전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국에 약 440개 직장경찰연합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다.

2) 미국

청소년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적 요소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폭력에 대해서 시행되는 대책도 다양하다. 다음 대책들 중 공공건강모델, 학교중심 갈등해소/중재모델, 사회기술훈련모델, 가족조정모델, 또래/깡단조정, 통관의례 프로그램,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폭력 방지프로그램 등은 Corvo(1997)의 논문에서 재정리한 것들이다.

(1) 공공 건강 모델(Public Health Model)

공공건강모델은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건강모델은 예방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생물·심리·사회학적 모델이다. 공공건강모델의 틀을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행 예방은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비행 위험이 있는 개인과 환경을 알아내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위험요소들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행 예방은 문제행동의 초기 증상들을 보이는 청소년을 재활시키는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다. 보다 범죄적인 행동이 되기 전에 행동적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강조가 주어진다. 세 번째 예방은 보다 만성적이고 심각한 범법자에 대해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2) 학교에 기초한 갈등 해소/중재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비폭력적인 갈등해소 및 문제해결 방법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보통 구조화된 틀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안전과 폭력사용을 반대하는 가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위험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청소년을 위한 폭력예방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갈등해소 프로그램은 아주 인기가 높으며 미국의 수천 개의 학교에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갈등중재를 넘어서서 친사회적 행동들을 지도하고 보상하고 모델링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창조하는 "평화구축" (Peacebuilders)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3) 사회기술 훈련

사회기술 훈련은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훈련, 모델링, 그리고 역할-놀이를 강조한다. 사회기술 훈련은 보통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비폭력적 행동반응을 제공한다. 공격성 대체 훈련은 인

기 있는 패키지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사회기술 훈련의 결과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비행 청소년들의 내적 통제력에 대해 효과가 있었으며, 시설 — 감옥이나 병원 — 에 있는 청소년들의 재발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설의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에서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상황, 치료의 강도, 그리고 열린 분위기에서의 새로운 사회기술의 연습이 사회기술 훈련의 효과성과 연관된 중요한 변인들이다.

(4) 가족조정모델(Family Intervention)

가족 조직, 기능, 관계, 혹은 양육 스타일을 변경시킴으로써 청소년폭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접근들이다. 비행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을 보여 온 가족조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부정적인, 강제적인 양육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훈련이며, 둘째는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를 향상시키고 가족 간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훈육을 향상시키는 구조적 가족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며, 셋째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이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돕는 것을 포함하는 다체계적 가족 심리치료이다. Mulvey 외(1993)는 가족조정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거나 더 나아가 많은 만성적인 비행청소년들에게는 덜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5) 또래/갱단 조정

청소년 갱단 문제와 그들의 청소년폭력 증가에 대한 기여는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갱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서 다른 형태의 또래 집단과 구분된다: 지역사회에서 뚜렷한 집단으로서 인정, 뚜렷한 집단으로서 자기 인식,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의 부정적인 주의를 끌 정도의 범법 행위. 청소년 갱단과 관련된 살인은 전체 살인의 4% 이내이지만, 최근 증가세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갱단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게 하였다. 갱단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그리고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하며, 직업에 대한 훈련 및 기회와 카운셀링이 결합되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갱 구성

원이었던 청소년은 이전의 적으로부터뿐 아니라 자신의 갱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기 쉽다. 갱단 조정 프로그램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갱 구성원뿐 아니라 베테랑 구성원을 목표로 폭력행동을 줄이고 갱 가입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6) 통파의례 프로그램

적절한 성인 역할 모델을 보여주거나 동일화를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다 친사회적 가치를 가지게 하고, 보다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접근들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전환기는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발달적 기회라는 것이다.

(7) 지역사회 준거 재활프로그램

이것은 비행 청소년들을 시설에 보내는 대안으로, 그들을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Mulvey 외(1993)는 각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성격, 범법 행위의 심각성, 비행 전력, 치료의 기간 등의 변인에 따라 재범률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비행 청소년들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8) 지역사회 조직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을 선언하고,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자원들에 접근하고 재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의체를 만들거나 활성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성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지역사회 조직은 다른 집중적인 접근들에 대한 선구 혹은 보조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9) 갈등해소교육⁴⁾

비행과 폭력은 청소년들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청소년에게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갈등해소 교육은 평생 지속되는 의사결정 기술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청소년 시절,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폭력을 줄일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또한 만성적인 학교결석, 정학이나 다른 징벌을 줄일 수 있다. 훈육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시간을 줄이고, 참석자들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부수적인 혜택이다.

갈등해소 교육은 창조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친다. 논쟁하는 팀들은 그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의 전 시설을 포함하고, 전체의 경영에 통합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조정 노력과 연결이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갈등해소 교육에는 교육과정, 또래 중재, 평화적인 교실, 그리고 평화적인 학교와 같은 4가지 일반적인 접근법이 있다. 프로그램들은 종종 이러한 접근들로부터 나온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① 교육과정

수업 혹은 코스로 갈등해소 과정을 가르치려는 교육자들은 교육과정 방법을 사용한다. 하버드 중재 프로젝트에 근거를 둔 청소년 중재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법의 전형이다. 청소년들, 교사들, 행정가들은 목표를 성취하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화된 중재방법을 사용하도록 교육받는다. 실시결과는 학생들이 논쟁을 해결하고 또래들과의 싸움을 피하도록 하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북 캐롤라이나의 한 중학교에서는 정학이 42% 줄었고, 퇴학이 97% 줄었다.

4) 갈등해소교육의 내용은 미국정부 간행물에 소개된 내용으로, 다음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 LeBoeuf, Donni & Delany-Shabazz, V. Robin (1997), *Conflict resolu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JJDP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Fact Sheet #55 March 1997.

② 또래 중재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또래 중재를 폭력 예방의 종합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 채택하고 있다. 훈련된 청소년 조정자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또래들과 작업을 한다. 라스베이거스의 클락 카운티 학교 위원회와 클락 카운티 복지 서비스는 3개 중학교의 2,500명의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학교 기준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95년의 프로그램의 결과, 또래 조정자들은 그들이 조정한 갈등의 86%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학교에서의 싸움과 갈등이 줄어들었으며, 조정자들의 조정기술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

③ 평화적인 교실과 평화적인 학교

평화적인 교실은 갈등 해소의 기술, 원칙,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갈등해소 교육은 교육과정의 핵심과목과 교실 운영전략과 통합되어진다. 평화적인 학교 프로그램은 갈등해소를 전체 기관의 운영에 통합시킴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갈등해소를 배우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평화적인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평화적인 학교 풍토는 다양한, 비폭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평화적인 교실과 평화적인 학교 프로그램은 갈등을 줄이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켰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7,500~10,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갈등해소/또래 조정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갈등해소 프로그램들은 폭력이 없고 안전한 청소년법 시설, 대안교육 프로그램들, 폭력에 대항하는 지역사회 노력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④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갈등해소 프로그램들

분쟁 조정을 위한 뉴멕시코 센터의 청소년 교정 조정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직원들에게 의사소통 기술들을 가르치며, 갈등해소 교육과정과 조정 요소들을 결합하여 가르치고 있다. 프로그램의 재통합 단계에서는, 가족들은 그들의 아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매일의 생활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 프로그램 평가에 의하

면, 조종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훈육문제가 12% 줄어든 반면, 청소년 조정자들은 37%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또한 조정자로서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지역사회로 돌아간 연후에 6개월간 재범율이 18%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역사회 조정센터는 600개 이상의 지역사회에 세워져 있다. 비영리적인 지역사회 기관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센터들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갇단, 학교정학, 결석,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갈등들에 있어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조정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조정 센터들은 지역사회에 근거한 종합적인 폭력 예방과 대책을 발전시키고 시행하기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학교, 그리고 다른 청소년 관련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10) 전국 청소년 네트워크⁵⁾

청소년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 네트워크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 네트워크는 1997년 6월 16일 볼티모어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졌다. 이 네트워크는 전국의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14~21세 사이의 다양한 청소년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졌다. OJJDP가 네트워크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단체들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전국적인 모임들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간의 협력과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다. 이 모임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청소년과 성인간의 특별한 협력관계이다.

① 비전과 사명

전국 청소년 네트워크는 청소년 지도력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과 성인을 단결시키고, 의사소통과 행동을 통하여 청소년단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5) 전국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은 Gruber(1998)의 글을 재정리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국가 내에서 적극적인, 그리고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전국 청소년 네트워크의 사명은 첫째, 전국, 주, 지역사회에 근거한 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촉매자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둘째, 성공적인 프로그램들과 전략들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입안자들에게 청소년의 관점을 주창하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인 청소년 활동들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다섯째,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들, 특히 수용시설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② 조직구조

청소년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들을 구상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함께 일한다. 세 명으로 구성된 지도자회의(Leadership Council)가 네트워크의 모든 계획과 활동들을 감독한다. 지도자회의는 또한 네트워크와 OJJDP간의 직접적인 연결선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가 한 모든 일들은 OJJDP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OJJDP가 재원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청소년, 범죄, 그리고 지역사회’가 네트워크의 매일의 작업을 조정한다. 스폰서들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청소년과 스폰서 성인들의 5개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는 완수되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해 놓고 있다. 사업위원회는 네트워크 모임과 다른 큰 규모의 행사들을 계획하고, 전국적 지역적 회의에 네트워크가 참석하는 일을 주관한다. 출판위원회는 Network's Youth In Action 출판이나 인터넷을 위한 정보제공을 담당한다. 공공정책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법을 이해시키고, 청소년에게 법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리고, 청소년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홍보위원회는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고, 청소년관련 뉴스나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다. 스폰서/현장위원회는 스폰서를 확보하고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일을 한다.

(11) 중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사례⁶⁾

청소년들은 폭력범죄의 위험성이 높다. 12~18세의 청소년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이지만, 전체 폭력범죄의 30% (190만명)가 청소년에게 행해졌다. 청소년에 대한 범죄들은 주로 같은 나이, 같은 성별과 같은 인종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들간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이중의 도전이다. 청소년들은 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는 16개월에 걸쳐 뉴욕의 2개 중학교에서 1993년 2월부터 1994년 6월까지 다음의 두 가지 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다. STOP (Schools Teaching Options for Peace : 평화를 위한 학교 교수 대안들)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갈등해소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과 또래조정을 포함한다. 안전항구 프로그램 (Safe Harbor Program)은 20회로 구성된 교육과정, 카운셀링, 그리고 전교적인 폭력반대 캠페인을 포함한다.

6) 중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사례는 Travis (1995)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V.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1. 청소년과 지역사회

1) 지역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의미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촌 인류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영어권에서 “모두 혹은, 다수와 함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한 “community”¹⁾는 일찍부터 지방분권주의가 잘 실시되어 온 서양의 대표적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개념 등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물론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일찍이 F. Tönnis가 정의한 이론바 혈연·지연 중심의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계약사회(*Gesellschaft*)로 넘어오면서 현재에 와서는 사회 시스템의 중요한 조직 구성요소로서 그 위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기능주의적(*structural-functional*) 개념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개념이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라는 의미 안에서 그를 생동하게 하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 개념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미 Poplin이 잘 명시하고 있듯이 전기 산업사회에서 탄생한 대중사회가 “소외(*alienation*), 도덕적 붕괴(*moral fragmentation*), 이탈(*disengagement*), 분절성(*segmentation*)

1) J. Bernard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전될 수 있는 공동유대 및 정신적 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와 “지역적 차원을 가지는 사회조직단위”로서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the community”를 구분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지역적 사회조직 내의 청소년폭력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 유대의 의미로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혼합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Bernard, J.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Glenview*, III.; Scott, Foresman and Company, In Poplin, D. E./홍동식, 박대식 편역(1985), *Communities - A Stud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Kentucky : Murray) / 《지역사회학》(서울 : 경문사), p.39에서 재인용.

tion)"을 특성으로 후기 산업사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면 전통적인 공동체는 "동일시(*identification*), 도덕적 일치(*moral unity*), 참여(*involvement*), 총체성(*wholeness*)"을 그의 특성으로 하여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²⁾

한편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특성들은 과거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국가 중앙집권체제의 하위 행정체제로 그의 원초적 의미와는 달리 국가의 권력체계 안에서 중앙집권체제와 지방분권체제의 대립된 개념으로 변색되어 지역사회가 가지는 자율적, 자생적, 참여적 공동협력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결국 중앙체제의 하위체제로 통제되고, 귀속되며, 전제되는 대상으로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 민주시민사회가 출범하고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시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한편 비대해진 국가 행정체제는 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차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지역사회가 공동체 집단 전체와 개개인에게 하나의 정치적 요구로서 강요되다시피 하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그의 의미는 더욱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고, 또 있어야 할 시대적 요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특징인 개별화와 탈통합화의 성격은 바로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개개인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자생적 공동체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주권을 가진 한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공익이 나의 이익이 된다는 이론바 "개별적인 것들의 총체적 조화"라는 이상적 사회상(社會像)에 수렴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개념은 한 국가 사회의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위에서 말한 전통적 공동체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공동의 문제해결 위한 지역사회내의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역시

2) Poplin, D. E./홍동식, 박대식 편역(1985), *Communities - A Stud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Kentucky : Murray) / 《지역사회학》(서울 : 경문사), p. 21.

필요한 것임을 의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언급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사회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과 사회의 관계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과거 청소년의 위치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의 가치와 의미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21세기의 문턱에 다다른 바로 오늘날의 시점에 와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와 함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는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자처하는 성인들의 성인 위주의 가치판단과 행위로 오히려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적, 폭발적 에너지와 다양한 창조적 가능성을 가로막으면서 성인들의 가치관, 규범, 행동양식을 주입식으로 강요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자 형태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일방적인 인간관계가 있게 되며 따라서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관계는 상호 불신과 갈등, 물이 해, 증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 외부에 대한 공격성으로 인한 자살이나 폭력의 형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지역사회 내에서부터 청소년 세대와 성인세대들의 갈등이 해소되어 상호 신뢰하고, 이해하며 서로 돕는 상호주체적(*intersubjective*)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구성원들이 수직적 관계로부터 개개인의 인권과 시민권의 존중을 기초로 세대간에 서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하나로 되는 국민적인 수평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이러한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역할

지역사회는 국가조직의 작은 단위의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막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한 국가의 각 지역사회가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문화적이고, 복지적으로 균등하게 잘 발전되어 있으면 그 국가의 발전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사회가 발전되어 있지

못하고 중앙의 권력에 의해 타율적,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지역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각자의 주어진 일과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를 가진 국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동구권 사회가 붕괴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인적자원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결국 청소년이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볼 때나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밀접한 상호 관계이므로 청소년 자신들은 그들이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현재 자기 위치에서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어야 하는 한편,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해주어야 할 것들을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가장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발달기의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도하며, 건전 환경을 개발하고 조성하여 그들만의 자율적·창조적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도 인간적인 물질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박성희, 1995:1~17).

(1)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로가 필요로 하고 또 상호 이로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의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와 역할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청소년 자신들의 “구체적 생활의 원천적 거점이며 청소년들의 관습과 태도, 가치의식을 길러 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교육의 장”(이영숙, 1992:15)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삶의 일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로 그들이 24시간 머무르면서 호흡하고, 배우고, 놀며, 익히고, 교제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곳이다. 따라서 신선하고 맑은 공기와 산수, 학업환경, 풍족한 음식, 높은 문화수준 등 좋은 환경의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 개인적으로 볼 때 행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환경은 천혜의 자연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는 현대의 산업기술과 과학의 힘,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들은 바로 '지역사회의 미래'로서 환경보호활동, 봉사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폭력 자경대(自警隊) 활동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에의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의 장(場)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 (社會化)의 의미는 흔히 청소년이 장차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의 구성요원으로서 그 사회의 통합(integration)과 안정(status quo)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는 가치관, 규범, 행동양식을 수동적으로 배워 익히는 것만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역사회는 청소년 개인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場)이고(김성수, 1995:185) 지역사회로 볼 때에는 청소년 자신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활동은 지역사회 미래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발전이 국가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일이기도 한 것이다.

(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유형과 문제점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형태는 먼저 학교활동을 통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청소년단체를 통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활동은 청소년이 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는 청소년의 사회화 기관 중 가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그 어느 관계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학교를 통한 청소년활동은 교육의 연장의 차원에서, 참여시키는 학교측이나 학생 청소년 개개인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활동이 요구된다.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은 주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동원되는 봉사활동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이 밖에도, 예를 들자면 학교와 학생간에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자체 내에서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경대 활동 등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를 통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의 형태는 대부분 활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 자신의 참여의사가 배제되고 이를 주관하는 학교도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주문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활동이 되어 버리는 수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단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의 참여활동은 대표적인 청소년 지역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화된 형태의 청소년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그 의미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고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총 청소년인구 11,865천명 중 18%인 2,193천명만이 단체에 가입하여 있고 기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비가입단체 청소년회원의 수를 합쳐도 20%를 넘지 못하며 활동의 내용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회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회원들만을 위한 활동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청소년단체가 가지는 기능상의 사회운동적 역할을 통한 청소년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해 참여, 활동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민·관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인식과 의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의 참여활동의 실천을 위해 지도자의 확충, 지역사회의 특성분석에 따른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조체제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등의 실천적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이영숙, 1992:186~202). 끝으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유형 중 가장 선진형이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모이고, 토론하고, 기획하고, 활동하는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반적인 참여민주주의의 문화 저변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지방자치제도의 확고한 뿌리내림,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보장과 함께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사회전반의 의사결정에서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 참여문화가 우리 사회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구현될 때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³⁾

(3)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단계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스스로의 참여의지가 우선이었지만, 청소년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심리적으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때때로 미숙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3) 최근 우리나라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제2의 건국이념”에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첫 번째 이념으로 내세웠고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정부의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도 지난번의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청소년수련활동 위주에서 급변의 청소년참여, 청소년인권, 청소년자율, 지역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기관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그들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관계는 넓게는 사회와 교육의 관계와 같아서 교육이 잘되어야 사회가 잘되고, 사회가 잘 되어야 좋은 교육을 위해 재투자되어 이는 결국 사회전체를 위한 재투자의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청소년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개발·발전되고, 지역사회는 다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결과와 효과는 지역사회를 위한 재투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정부기관에게 제시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연계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유도방법은 아래의 단계와 같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6:22~23).

1. 지역사회 청소년단체가 그들의 소속원들 모두와 함께 청소년활동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 리더십(*leadership*)을 가지도록 한다.
 - 1) 청소년활동의 개발과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임무 수행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또는 임무수행을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방문한다.
 - 2) 단체의 환경을 소속원들이 정부기관과 제휴해서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창조한다.
 - 3) 근린(近隣) 정책, 지역사회 체계 —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 세력 있는 활동가,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파벌, 그리고 그들의 의제(議題)들에 관하여 숙지한다.
 - 4) 진정한 지역사회의 개발자는 지역사회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과 같이 조력자와 지도자가 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시킨다.
2.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전원이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시적(可視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 1)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특히 지역사회의 부분으로서 정부기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단체에 대한 인식고양 방법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지역사회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다른 정부기관들과의 연계를 만들어낸다.
 - 3) 지역사회가 필요에 따른 변화를 의제(議題)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한다.
3. 리더십 원칙과 관련된 일과는 다른 일들을 기획·수행한다.
- 1) 정부기관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기꺼이 앞장서도록 한다.
 - 2) 청소년과 성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회적 변화과정을 수립한다.
 - 3) 지역사회에 성공의 기회를 주는 현실적인 단기간 목표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간의 감동적인 목표를 세운다
 - 4)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얻기보다는 더 자주 잃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사회 변화 과정과 증가하는 변화의 속성에 대한 가치의 이해, 그리고 “잃음”속에 서조차 있게 되는 승리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도와준다.
 - 5) 모든 구성원 중 변화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단체가 변호해 주어야 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6)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성공에 기초하도록 노력한다.

(4) 외국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관한 외국의 실례를 돌아보면(천정웅, 1995:127~174) 미국의 Washington D. C. 의 아담스-모간 지역사회에서는 1980 년대에 AWC(Around the Corner to the World Washington D. C.)를 조직하여 다양한 인종의 청소년들과 전과자들을 지역사회 재개발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단결과 협동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노동을 통한 사업결과와 발전을 통해 자신감, 자조(自助)능력을 키워 주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정치참여와 경제개발, 비행으로부터의 보호와 선도, 직업능력 배양 등의 효과를 통해 청소년 자신과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돕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리건 주(州) 포틀랜드시(市)에 조직된 JCF(Junior Crime Fight-

ers)의 청소년범죄 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는 청소년폭력,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학교 1~2학년의 청소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초동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국민학생들에게 영화, 역할연극, 오락활동 등의 실습활동과 지역안전, 마약, 학교문제, 폭력문제, 예절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 스스로가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범죄를 줄여 나가는 데 앞장서서 건전한 지역사회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초로 J. J. Rousseau에 의해 어린이의 자주권이 주장되고 '대혁명'을 통하여 민주시민사회를 성립시킨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이미 70년대 말부터 알사스지방의 작은 마을 Schiltigheim에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의회 시대표자회의'를 조직한 이후 현재 약 750개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 시의회'가 조직되어 청소년들과 관련된 과제를 만들고, 제안하고 수행하는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인 운영자와 함께 토론하고 일하며, 스포츠와 문화 및 여가활동, 환경과 인권문제, 연대의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본 규범의 결정과 개선, 학교와의 연계 등의 일들과 관계하고 있으며 보통 자율적으로 예산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능동적이며 동시에 준비된 사회인으로 지역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들을 쌓고 있다⁴⁾.

3)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

청소년과 지역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지역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일으키는 신선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이러한 중요한 인적 자원

4)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의 사례에 자극을 받아 경기도 광명시 지역사회에서는 97년 3월부터 35만의 광명시민 중 약 30%를 차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수립에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학생 1천7백 여명이 참여하는 학생모니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지역사회 형성과 나아가서는 제2의 건국이념 중 하나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인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깊이 숙고해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어떻게 이를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청소년 자신들에게도 유익하고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도 유익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역시 청소년들의 “사회화(社會化)”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⁵⁾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사회화 구성요소에 가정, 학교, 사회를 들어서 말할 때에는 가정과 학교의 사회화 기능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그의 중요한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화 요소 중 “사회”대신 “지역사회”를 넣을 경우에 우리가 위에서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를 기초로 말한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이제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사회화 요소로 각기 개별적인 기능과 책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의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가 되어 기능해야 하며 그러할 때 그의 효과는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정과 학교 스스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들을 바르고 건전하게 사회화하기에는 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대의 문제 해결은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즉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통한 바른 성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5) 과거에는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를 들었으나 이제는 그 자리에 “지역사회”(community)가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며 비록 한 사회 전체가 가지는 가치관, 규범, 행동양식 등이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행동환경은 지역사회이므로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문화의 질적·양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들의 발달과 성장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로부터 있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들을 보호·선도하여 바르게 성장토록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은 이제 우리시대에 와서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다.

(1)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의 역할이 중요한 것과 같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좁게는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의 가정, 학교, 청소년 관련 민·관기관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청소년과 함께 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이 필요하고, 넓게는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청소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른바 권한부여(empowerment)가 있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료(*community as partners*)라는 접근 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이웃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둘째, 심한 가난과 심각한 범죄가 있는 지역사회들조차도 최대한의 노력과 능력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셋째, 지역사회의 권한부여 과정은 지속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 최적의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6:20). 이러한 원칙을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사회화 구성요소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먼저 지역사회 내의 한 가정의 부모가 이혼을 하려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 지역사회의 이웃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최대한도로 동원하여 가정의 해체를 중재하거나, 이혼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을 돌볼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빈민 지역과 우범지역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먼저 그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개인이나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때 이 지역의 청소년담당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양쪽에 ‘참여’(participation), ‘권한부여’(empowerment), 그리고 ‘책임’(accountability)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그 효과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에 지역사회의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가지고 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를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앞 자료, 1996:20).

-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여러 문제와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의 특별한 어려움들을 편안한 곳에서 대화하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의 문제점보다는 청소년의 능력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 개인적인 발달에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상황적 변화보다 사회적 변화를 중시해야 한다.
-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간에 책임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 가정, 지역사회를 동시에 지원해야만 한다.
- (세계의 대부분을 비롯한 — 역자 삽입) 미국의 문화에서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신분보장이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상황에 따르는 리더십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쌓아 가는 법을 훈련시키지 않거나 관련된 책임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청소년 권한부여 모델”(youth empowerment model)은 방지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진행보다는 긍정적인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 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활동들에 참여시켜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①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방향 전환의 주도(主導)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는 무엇보다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중앙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체제로 전환되도록 중앙의 청소년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정책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일찍부터 주장되어 왔다(표갑수, 1992:378~397; 최충욱, 1996:143~150). 이러한 명제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여러 고찰을 제외하고라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청소년이 소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접근해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은 어릴 적부터 지역의 정서와 문화적 특성 그리고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취미나 기호, 습관, 규범, 행동양식, 가치관 등의 발달적 특성이 다르게 수용되거나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인류학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우선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양식,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정보화시대에 외서는 매스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화적 희석(稀釋)이 있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청소년육성정책의 지역별 시행결과와 효과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이 중앙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의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배려된 예산규모도 크게 차이가 나며⁶⁾ 이는 곧바로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국가의 균형 없는 발전이 있게 됨으로써 많은 사회문제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비롯한 자치단체

6) 실제로 김영삼 정권 당시 우리나라의 1996년 청소년 시·도별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당된 부산(20,121.4백만원)과 가장 적은 전라북도(2,083백만원)가 10배 가량의 차이가 났고 청소년인구가 2.5배 이상 많은 수도 서울(6,890.4)보다 3배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정하성, 1996:117).

행정부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형평성에 맞는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중앙에서 시달된 청소년정책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연구·검토하여 개선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한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⁷⁾

②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정책 수행

중앙으로부터의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 다음으로 하여야 할 지역사회의 과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의 수행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인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지역사회의 주민과 청소년들의 욕구는 어떠한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따른 자료가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었을 때에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고순철, 1995:84~85).

지역사회 자원의 조사에는 먼저 자원의 유형을 따라 조사하여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자원은 대체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자원으로 그 유형을 크게 분

7) 서울의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구에서는 금년 5월에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강남구 청소년환경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에는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과 유익 환경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특히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다. 이 지도는 지역사회의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되어 홍보되고 있어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리할 수 있다. 인적 자원에는 지역주민, 지역사회지도자, 청소년자신 등을 들 수 있고, 물적 자원은 기후, 토지, 물, 천연자원 등의 자연자원과 산업자원, 기존 각종 지역사회 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자원으로는 지역사회의 제도와 조직, 여러 사회집단, 서비스 단체, 각종 정보자원 등을 말할 수 있다.⁸⁾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은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청소년과 상호주체적(*intersubjective*)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끌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중 지역사회 내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참여의사,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통로 및 연계망 형성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사업의 성패를 가능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김남선, 1995:119~139).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느냐도 인적 자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이는 인적자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간(基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각종 청소년관련 제도와 조직의 재정비 및 개선, 그리고 각종 청소년관련 단체들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시간적, 공간적 변화와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사회의 조사방법으로 질문, 면접, 관찰, 델파이 등의 방법과 청소년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집단사고법인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등의 방법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채택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순철, 1995:99~110). 아래는 이러한 지역사회조사 내용의 한 예로서 제시될 수 있다.

8) 고순철과 김남선은 지역사회자원의 유형을 각각 인적자원, 물적자원, 제도 및 조직,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그리고 인간자원, 자연자원, 물적 자원, 제도로 나누었는데(고순철, 1995:90~98; 김남선, 1995:115~148) 여기서는 자연자원과 물적 자원을 물적 자원으로 통합하고 제도 및 기타 지역사회 인간관계 관련조직 등을 사회자원으로 분류하였다.

1. 지역사회의 기본적 특성

- 1) 지역사회의 면적이나 크기(예 : 용도별 면적 등)
- 2)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예 : 약수터, 공원, 학교, 성인교육 시설, 교회 등)
- 3) 주요 특징물(예 : 덕수궁, 보라매공원, 남산타워 등)
- 4) 지역의 일반적 모습(예 : 청결도, 도로상태 등)
- 5) 지역의 자연적 특성(예 : 기후, 지형과 지세 등)
- 6)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구변동 추세(예 : *Bed town*, 상업지역 등)
- 7)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예 :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생활수준별 등)
- 8) 지역사회 주민의 평균 거주 연한
- 9) 가족의 평균 자녀 수 및 가족의 특성(예 : 생활보호대상자의 수, 이혼율 등)
- 10) 인구밀도

2. 지역의 기능

1) 물리적·생리적 욕구

- (1) 의식주 활동에 대한 접근성
- (2) 의료시설
- (3) 도로와 교통체계
- (4) 대기 및 수자원
- (5) 하수 및 쓰레기 처리
- (6) 이들 물리적·생리적 욕구의 유지 정도

2) 사회적·감정적 욕구

- (1)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감(예 : 치안, 소방 등)
- (2)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 (3)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자부심, 당혹감, 두려움, 즐거움 등)의 근원
- (4) 주민들의 문제해결 능력
- (5) 지역사회 일에 대한 참여의지
- (6)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조직 조직체(예 : 조기축구 모임, 낚시모임 등)
- (7) 일탈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예 : 폭주족에 대한 인식, 불건전 이성 교제에 대한 인식 등)

(8) 주민의 여가활동 및 여가 지원

3) 정치적 욕구

- (1)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동심
- (2) 시민권리 의식
- (3)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
- (4) 공식적 행정구조 및 장의 이름, 직위
- (5)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비공식적 의사결정 과정
- (6) 의사결정에 대한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자
- (7)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 인식도
- (8) 권력의 기초

4) 경제적 욕구

- (1)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접근 방법(예 : 주요 쇼핑장소 등)
- (2) 특정 집단의 소득과 직업(예 : 여성의 부업유형, 노인 층의 소득원 등)
- (3)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제적 자원
- (4) 지역사회 내 상공업 유형의 발전 추세
- (5)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5) 교육적, 커뮤니케이션 욕구

- (1)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 방법
- (2)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문이나 사실의 확인방법(예 : 주요 정보습득원 등)
- (3) 지역사회 내의 신뢰성 있는 인사
- (4)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 재정지원, 접근성
- (5) 지역사회 내 언론기관의 유형 및 편집이념, 철학적 배경, 신뢰성
- (6) 지역사회 주민들이 타인과의 대화를 즐기는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자료 : Homan, S. M. (1994). *Promoting Community Change : Making it happen in the Real World*, pp. 79~107.⁹⁾

9) 고순철(1995), “지역사회자원 조사방법,”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과 지역사회》(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pp. 81~113 재인용.

③ 공동 참여 지원체제로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며 가정, 학교, 이웃, 종교단체, 청소년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청소년동아리 등의 연계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노력의 형태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network)라는 용어는 원래 J. A. Barnes(1972)가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인류학적 관계망 분석에서 사회적 개체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한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들 사이에, 특히 인적자원들과 사회자원들 자체들간이나 상호 사이에서 있게 되는 총체적 관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K. Hurrelmann에 따르면 청소년을 위한 전형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또래 등의 비제도적인 지원자들과 교사와 전문직업인으로서 의학·심리학·사회사업 분야, 청소년관련 공공분야 등의 제도적 지원자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청소년관련 사회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지원단체, 청소년여가활동단체, 그리고 제도적, 비제도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단체 등을 함께 넓은 의미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성의 틀로 생각할 수 있다(K. Hurrelmann, 1995:246). 이러한 긴밀한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체제가 없는 경우에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단일 지원체제만으로는 그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야 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환자와 치료자의 도식적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총체적인 생활을 고려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에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개별적 지원체제가 연합되어,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한 학생이 심한 약물중독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제도적인 가족, 이웃, 친구, 또래 그리고 제도적인 교사, 정신의학자 등의 전문직업인, 한편 청소년관련 종사자들이 하나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이 위협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체제야말로 지역사회가 원래 가졌던 “공동체”의 의미를 되찾고 또한 기능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2. 청소년폭력과 지역사회

1) 청소년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위하여 일할 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차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또 이들의 이러한 욕구가 정당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등의 청소년문제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청소년문제가 이제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시대의 모든 사회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청소년문제는 곧바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청소년문제는 이웃의 문제고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문제가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곳과 그때에 바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청소년폭력은 여러 청소년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폭력성향은 어릴 적부터 잘 승화시키거나 순화시키지 못하면 히틀러와 같은 세계를 위협하는 인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폭력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예방하는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청소년폭력은 이미 앞에서 그의 원인을 살펴본 것과 같이 그의 책임이 단순히 청소년 자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넓게는 국가에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상황이나 가해자 개인에게만 집착해서는 문제해결의 효과가 없고 폭력의 원인제공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요소들을 단계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폭력 원인제공의 종합적 분석결과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분석·검토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의 일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L. Winecoff와 C. Powell가 제시한 7단계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단계에서는 “문제의 존재에 대한 인식”(Recognize There is a Problem) 으로서 여기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왜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둘째 단계에서는 “문제의 사정(査定)”(Assess the Problem) 단계로 인터뷰, 관찰, 질문지, 표본조사, 양적 조사 보고 등을 통한 상세한 정보의 수집이 진행되며, 셋째 단계로는 “문제 규명과 목표 설정”(Clarify the Problem & Set Goals)의 단계로 무엇을 갖기를 원하며, 무엇이 지금 일어나야 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밝히고 정하는 단계이고, 넷째는 “제약(制約)들과 자원(資源)의 확인”(Identify Constraints and Resources)의 단계로 무엇이 목표달성의 방해가 되는가,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단계이고, 다섯째 단계는 “지도서 계획 개발”(Develop Planning Guide)로 무엇을 하나, 누가 할 것인가, 언제, 얼마나 잘하나, 어떤 자원들이 이용될 수 있나 등을 개발하는 일이고, 여섯째는 “지도수행을 위한 활동 계획서 설계”(Design Activity Plan to Implement Guide) 단계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나, 각 단계를 어떻게 계획하는가에 관한 일의 수행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로는 “문제 교정의 검토 및 확인”(Check and See If the Problem Is Corrected) 단계로 일이 수행되

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교정이 있어야 하는가와 같은 효과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Winecoff, L. & Powell, 1977:61~81).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단계는 결국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 자세로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효율적 시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과 관련해서 하나의 폭력사건이나 한 개인의 폭력에 관한 행동분석보다는 청소년폭력을 넓게 지역사회 문제로서 보고 접근하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분석에 의한 접근단계로는 다음과 같은 J. S. Stumphauzer의 일곱 단계를 들 수 있다(J. S. Stumphauzer, 1986:190~191).

1. *지역사회의 초기 분석(Initial Analysis of the Community)*
 - 1) *지역사회의 좋은 특성들로는 무엇들이 있는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장점들은?
 - 2)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나 비행들은 무엇들인가?*
 - 3)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현재 결여되어 있고 결손되어 있나?*
2. *지역사회의 상황의 규명(Clarification of Community Situation)*
 - 1) *누가 문제행동들과 관련되어 있고 누가 그것을 지원하는가?*
 - 2) *누가 선행(善行)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누가 그것을 지원하는가?*
 - 3) *정확히 어떤 환경 아래에서 그것들이 발생하는가?*
3. *동기 분석(Motivational Analysis)*
 - 1) *이 지역사회는 어떻게 유인(誘因: incentive)들이 이용되는가?* (보상과 벌은?)
 - 2) *누가 유인들을 통제하는가?*
 - 3) *어떤 유인들이 행동변화에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4. *개발 분석(Developmental Analysis)*
 - 1) *이 지역사회는 경제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가?*
 - 2) *이 지역의 자연적 이점들은 무엇이고 제한점들은 무엇인가?*
5. *자기관리 분석(Analysis of Self-Control)*

- 1) 이 지역사회는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2) 어떤 환경들이 지역사회의 자기관리를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가?
6. 사회적 관계 분석(*Analysis of Social Relationships*)
 - 1) 이 지역사회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인가?
 - 2) 정확히 얼마나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행사하는가?
7.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의 분석(*Analysis of Socio-Cultural- Physical Environment*)
 - 1) 이러한 행동들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는 어떤 규범들이 있는가?
 - 2) 행동 문제들의 변화를 위하여 어떤 지역사회와 지원과 저항이 있는가?
 - 3) 이 분석으로부터 어떠한 지역사회의 개입들이 논리적으로 따르겠는가?

이상과 같이 살펴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단계적 접근방법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L. Wincoff와 C. Powell이 제시한 7단계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이나 J. S. Stumphauzer가 제시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동분석에 의한 문제행동 해결 일곱 단계나 모두 지역사회 청소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폭력의 문제가 대부분 상황논리와 개인적 특성에만 집착되어 분석되고 판단되는 경향이 많아서 문제 해결의 효과가 매우 낮고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고 둘째, 청소년폭력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비행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셋째, 청소년폭력의 문제나 기타 다른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없이 대부분 즉흥적·표면적이며, 물리적인 강압적 방법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 위협요소

지역사회 내에는 청소년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다. 청소년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선도(善導)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함으로써만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청소년폭력 관련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미국의 법무부 소속 청소년법무비행 예방국(OJJDP)에서 제시한 위험요소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약물이나 알코올 편력이나 빈곤가정에서의 건강과 교육의 문제, 가정의 불화, 부모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들이 청소년들의 폭력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들이고, 학교에서는 어린 나이에 소외된 아이들의 반사회적 행동, 초등학교 말기의 성적 불량, 학교에의 무관심들이 위험한 요소로 제시되었고, 개인적이거나 또래집단에서의 위험요소로는 반항심, 또래 비행청소년들의 친구, 문제행동예의 호기심, 조기 학교탈락, 개인의 비행체질 등이 제시되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적되는 청소년폭력 관련 위험요소로서는 먼저 쉽게 약물이나 알코올 그리고 총기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지역사회 법·제도들, 대중매체의 폭력묘사, 상급학교로의 이동이나 전학, 낮은 이웃간의 유대와 지역사회 조직의 부재(不在), 극심한 경제적·사회적 침체 등을 들고 있다(J. C. Howell, 1995:18~22).

미국의 청소년폭력과 지역사회의 상황과 역사가 우리와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의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요소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 또래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지역사회 내에서는 마약 등의 약물류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이보다는 우리의 대학 입시에 대한 청소년들이 가정의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폭력과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로 가정 내에서 부모세대와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크게 달라지면서 심리적, 정서적 갈등이 심해 이 또한 폭력 유발의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가정의 전통적 교육기능이 산업화 이후에 학교교육에만 의존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생활영역이 가정이므로 가정

의 원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히 요청된다(최충욱 외, 1998:274). 한편, 최근의 IMF관리체제 이후 극도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따른 실직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결식아동, 청소년비행 등의 증가와 같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위험요소는 미국의 경우에서 지적한 것들이 우리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의 운영으로 — 특히 상급학년일수록 — 인하여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학교성적에 대한 비판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처럼 청소년들이 학교 교과과정과 생활에 매우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문제와 폭력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이 밖에도 시설이나 교육의 질로 보아서 전반적인 교육여건과 수준이 뒤떨어져 청소년들의 폭력을 방지하는 기본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의 위험요소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위험성의 정도는 총기와 마약단속 외에는 우리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미국은 이미 산업화로 인한 지역의 해체라는 상황을 이미 겪고 나서 다시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청소년폭력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제야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풀어 나간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훈련을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10) 1997년 서울 강남구 중·고등학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폭력 실태조사에서 강남구 청소년들의 40.3%가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청소년폭력을 증가시키는 학교관련 원인의 일순위로 지적했다(최윤진, 1977:70).

2)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전략

우리는 청소년폭력의 상황을 접했을 때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서 바라보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준 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 이러한 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폭력은 폭력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법치국가를 유지하고 일벌백제(一罰百戒)의 교육적 가르침을 통해 폭력의 재발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청소년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보다도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청소년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을 ‘폭력’에 두는 것과 ‘폭력예방’에 두는 것은 두 의미가 다르듯이 그 대책의 효과도 다른 것이다. ‘폭력에 대처한다’는 것은 폭력의 상황을 인정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응한다는 소극적 의미이고, ‘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폭력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상황의 개연성을 없애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지역의 모든 자원과 구성요소를 동원하고 연합하여 청소년폭력의 상황을 만드는 위험요소들을 찾아 제거하는 동시에 이러한 위험요소의 근거도 말소하여 청소년폭력이 없는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생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시도에서 나타나는 효과보다 훨씬 큰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의 기본원칙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미 앞에서 서술한 지역사회 내의 가정, 학교, 개인이나 또래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거나 잠재하여 있는 청소년폭력 관련 위험요소들을 찾아 없애거나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미연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폭력의 위험요소들이 뿌려질 토양과 씨앗 자체도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원칙을 가지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원칙들을 열거하자면 아래와 같다.¹¹⁾

①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노력들은 먼저 지역사회 내 이미 알려진 청소년폭력의 위험요소들을 알아야 한다—가정의 위험요소들은 이웃이나 친구의 가정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학교의 경우에는 자녀가 학교 가기를 갑자기 싫어한다든가, 우울해 보이고 말이 없어졌다든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은 어떠한가 자녀나 자녀의 친구들이 그곳에 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노력들은 명확히 예방 프로그램 활동들이 청소년폭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만 한다—가정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도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를 맡겨 키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린 아이의 행동에 대하여 탁아소나 학교, 기타 보호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받고 부모로부터 결핍된 애정과 관심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어릴 때부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신념을 주고 받아야 하며 표준을 명확히 하고 결속력을 복돋우어야 한다—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와 확고한 참여의식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서로 지도하며 상호 봉사하는 헌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독려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장 고유한 특성들로서 이러한 과정은 결과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지역사회 전체를 상호 신뢰와 결속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11) 아래의 청소년폭력예방의 원칙과 전략에 관한 내용은 미국의 청소년법무비행예방국(OJJDP)에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비행 예방에 관하여 제시한 원칙과 전략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것들을 비교 언급하였다(J. C. Howell, 1995:24~25).

④ 청소년폭력의 위험요소를 줄이려는 활동들은 위험요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이나 위험 발생 즉시 위험들에 집중하여야 한다 —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폭력의 위험요소에 관한 한 일찍 개입하는 것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심지어 미국의 청소년법무비행예방국(OJJDP)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예방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하기 전이나 유아기(幼兒期) 때부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⑤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개입은 복합적인 위험요소들에 노출된 개인들이나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한다 — 복합적 위험요소들, 예를 들면, 가정의 해체와 동시에 학교의 중퇴 후 유흥업소와 같은 유해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나, 지역사회 전체로 볼 때 요즈음 우리나라의 IMF 관리체제 이후 실직에 따른 이혼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은 청소년들이 여러 비행상황이나 폭력상황의 위험요소들을 접할 수 있는 최대의 심각한 급성 상황이므로 지역사회는 이를 예방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이웃들과 학교, 사회단체, 종교단체, 정부기관들은 서로 연합하여 위험이 심각한 어린이들과 위험이 적은 어린이들을 연계시켜 함께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⑥ 복합적인 지역사회 영역 내에서의 복합적 위험요소들로 청소년폭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한 일원화된 폭력예방체제가 가정, 학교, 개인이나 또래, 지역사회 범주들의 중요 위험요소들에 투입되어야 한다 — 여기에서 일원화된 예방체제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 자신들을 포함한 가정, 학교, 단체, 기관, 개인직업 등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합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경찰과 학교가 연합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합하는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과 사회자원들 사이에 결합될 수 있지만 여러 자원들이 함께 연합되었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⑦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지역적, 문

화적, 사회경제적 그룹들과 접촉이 있어야 하며 그들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 이 사항은 결국 청소년폭력예방에 대한 계획과 수행의 모든 면에서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적(資源的) 그룹들의 완전한 참여가 제시되었을 때 가장 폭력예방의 성취도가 좋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의 주도로 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지역사회 정부기관이 반대한다든지 필요한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정부기관이 폭력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때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로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폭력예방의 프로그램들은 전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실제로 청소년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전략

위와 같은 가정,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지면 이를 지키면서 종합적인 청소년폭력예방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교육개혁의 실효에 따라 이제 학생들을 학교에만 붙들어 놓지 않고 지역사회 내 생활권과 자연권에 풀어놓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청소년을 위한 건전 시설과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청소년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비행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 별로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청소년법무비행예방국(OJJDP)에서 제시한 종합전략의 계획과 실행의 틀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상황에 비교하여 고찰하기로 한다(위의 책, 25~26).

① 지역사회 전역(全域)에의 접근

먼저 청소년폭력을 위하여 지역사회 전역에 접근한다는 의미는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지역사회 전체의 규범, 가치관, 정책들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해서 여러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능동적 접

근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조직, 기관들 간에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주어 의식을 깨우치고 지역사회의 넓은 지원과 협동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② 지역사회 주민의 소유권 의식 창조

소유권이라면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에의 참여나 그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에 대하여 주인의식이나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폭력의 위험요소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폭력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폭력예방 시민단체의 지역사회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함께 결합될 때만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빈번한 이사로 지역사회 거주민들이 이러한 애착과 소유권 의식을 가지고 청소년폭력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③ 지역사회 내 다양한 그룹과의 접촉

종합적인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동의 협조와 자원을 나누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들, 여러 조직들, 그룹들, 사회봉사단체들, 시민단체들 등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폭력문제에 하나가 되어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를 예를 들면 교사, 교무직원, 특수교육자, 보조교사, 자원봉사 부모, 학생들 모두가 장벽을 허물고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서로 다리를 놓아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폭력의 문제도 작게는 이렇게 학교 내에서부터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지역사회 전체가 연결되는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④ 열쇠역할의 공무원과 지역사회 지도자의 가담

청소년폭력예방의 전략은 지역사회 자원들과 직접 정책을 다루는 중심 지도자를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의지와 지도력을 가져야만 하고 임기만료 등으로 지도권을 넘겨주었을 때에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동협조를 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의 여러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조(共助)의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예방의 노력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지도자중에는 정치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는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는 바이다.¹²⁾

⑤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문제들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들에 우선권 부여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정한 구역에서 가장 심각한 폭력의 위험요소가 있는 곳부터 관심을 쏟아야 한다. 모든 위험요소에 한꺼번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청소년폭력예방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각 지역사회는 구역에서 가장 위험한 폭력의 요소들에 집중해야만 한다.

⑥ 모든 참가자들의 장기적, 지속적 노력에 대한 약속의 확보

청소년폭력예방의 문제는 단시간에 그 효과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예방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폭력의 가해 청소년을 원만한 가정과 결연하여 위탁하였을 때 결연 가정은 결연 학생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결연 관계를 유지하여야 신뢰가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가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2) 이러한 의미에서 Corvo는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공동 협조는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참여 기관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위장되어서는 안되며 사회복지 체제 속에 있는 기관들과 정부기관들은 공동의 협조를 위하여 청소년폭력예방을 그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손상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K. N. Corvo, 1997:312).

⑦ 잘 훈련된 자들로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청소년폭력예방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맞도록 가능한 한 각종 청소년폭력의 위험요소에 맞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들은 청소년폭력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그 예방과 치료의 효과가 더 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근무 트레이닝을 받고, 지원을 감독하며, 높은 질(質)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사회에 기초한 청소년폭력 관련 전략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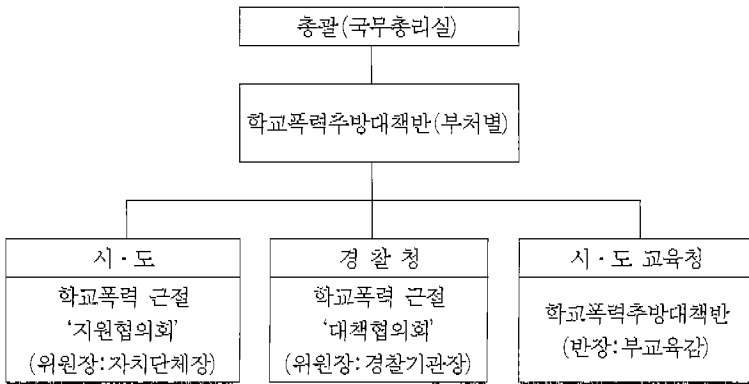
지역사회에 기초한 청소년폭력예방 모델과 관련하여 K. N. Corvo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기본적 약점을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다양한 유형과 형태를 가진 복합적 현상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발적 폭력이거나 지속적인 폭력과 가장 가깝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한 요소들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K. N. Corvo, 1997:306). 이 말은 폭력에 관한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길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한 학생을 따돌리는 심리적인 폭력의 형태나, 보이지 않는 언어적 위협과 같은 형태의 폭력에 관한 이해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지 하는 것처럼 폭력개념의 모호함에서 오는 폭력의 유형과 형태에 대한 기본적 인지(認知)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여러 형태와 유형의 폭력에 대한 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Corvo의 이러한 지적은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은 주민들의 의지와 공동협조의 네트워크 형성만이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폭력에 관한 이론과 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준비되었을 때만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서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이론적 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청소년법무비행예방국(OJJDP)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노력의 효과는 예방전략을 선택하는 과정, 특정한 예방프로그램의 사용,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

초한 청소년폭력예방 종합대책 전략 모델로 CTC(Communities That Care)를 소개하였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에 지역의 위험과 예방적 요소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을 기초로 지역사회 내 위험요소들을 확인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들과 프로그램들을 인지하고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위험들을 감소시키고 예방적 요소들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과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모델로 14년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이 모델은 먼저 이미 앞에서 서술된 지역사회조사,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단계,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 위험 요소,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의 기본원칙들, 종합전략의 계획과 실행의 틀 등에 관하여 1년 동안 준비기간으로 계획되었고 또한 시장(市長)들, 경찰간부들, 판사들, 학교 교육감들, 상인, 시민, 종교지도자들의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결집시켜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두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와 비전(vision)에 대하여 이해시키면서 지역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영속적인 지역사회 기관으로서 청소년비행과 약물남용에 관한 지역사회 예방위원회를 만드는 데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가 개발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에는 몇 명의 회원들이 지명되어야 하나? (지역사회의 크기에 달려 있고 15인에서 30인 정도가 필요하다)
- ②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인종적, 윤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③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또래들과 같은 청소년의 중요한 생활 지역이 위원회에 시사되고 있는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봉사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공식적인 성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비영리 조직이어야 하나, 정부조직의 부분이 되어야 하나?
- ⑤ 위원회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나?
- ⑥ 위원회 회원과 중심 지도자들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나?
- ⑦ 어떻게 위원회는 기회·기술의 제공과 회원들의 인정으로써 그룹에 결속하게 하는 모델로 사회개발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가? (J. C. Powell, 1995:27)

〈그림 V-1〉 정부의 청소년폭력 대책 추진체계



이렇게 결성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위원회를 우리의 지역사회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폭력예방위원회(가칭)에 대입해 보면 많은 개선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이미 소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이렇게 마련된 계획은 지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준비된 청소년폭력대책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에서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고 실제로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폭력예방의 기구는 〈그림 V-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 관계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에서 시·도나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경찰청의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교육청의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반’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유관기관·단체·주민 등이 총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과전되고 있고,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이미 과거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되었던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와 같은 단체가 참여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로 문제청소년들을 형사적 차원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수준

에 머무르고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시도로 보기에는 매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3. 청소년폭력 예방대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1)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

(1) 청소년폭력예방 종합대책으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의미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소년폭력예방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기존의 가정, 학교, 경찰, 검찰,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해 온 예방대책이 검찰이나 학교의 개별적인 노력이거나 학교와 경찰 및 검찰, 가정과 학교 등의 연계된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여 보자면 위에서 이미 우리 정부의 청소년폭력 대책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렇게 지역사회 내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먼저 각각의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들로서 청소년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청소년을 방학 전후로 하여 집중단속하는 실적주의나 형사처벌주의로 단순화되고 있고 또한 청소년폭력을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들이 각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의 구성원들 사이에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신고를 기피한다든지 아예 덮어두고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원인과 대책의 위협요소로서 지목된 가정은 이제 IMF의 관리체제하에 들어간 현금의 정치경제 환경에서 아주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가정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정의 해체에 따른 청소년탈선과 비행이 증가하고 청소년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유관 부처간 상호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일원

화된 체제가 없어서 유관부처간 업무 중복에 따른 정책 혼선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민이 청소년문제, 특히 청소년폭력에 관한 관심과 의식을 많이 가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개별적 대책인 학교내외의 청소년상담 전문가·자원봉사자의 청소년 대상 상담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지방단위 청소년보호 전담 행정기관 신설, 예컨대 검찰에 신설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관련 부서,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조직,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에서 자치적으로 조직된 지역교회 학부모들 중심의 “청소년지킴이 어머니 순찰단,”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청소년폭력예방 참여조직, 예를 들면 역시 노원구에 조직된 “청소년지킴이 봉사단 및 기자단”¹³⁾과 같은 자경대(自警隊)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요소 및 구성원 모두가 공조(共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황에 따른 긴밀한 정보 교환과 대책마련 및 즉각적인 협조지원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청소년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시책이다. 이는 결국 보다 넓은 차원에서 청소년폭력예방과 관련하여 도울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청소년폭력을 추방하는 데 노력하려는 청소년폭력에 관한 종합대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단위로 주민 모두가 지역사회의 문제인 청소년폭력 문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아간다는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지역사회 협력공동체로서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훈련으로서의 필요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13) 자경대(自警隊)의 역할을 하는 이 조직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위탁운영하는 노원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조직으로 지역 내 청소년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활동은 노원구 지역사회 내의 유해환경 조사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이 많은 곳을 조사하여 이를 “블루존 맵”(Bluezone-Map)이라는 지도로 제작함으로써 청소년폭력을 유인하는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고발활동을 시작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순갑, 1998:23)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예방의 대책은 이미 독일에서 하나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¹⁴⁾

(2) 독일의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

독일은 1995년 3월부터 1996년 말까지 연방정부의 모델로서 ‘지역사회 공간 내 폭력예방과 폭력추방’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비록 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한 큰 두 가지 자극에 의해서 급격히 추진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1993년 12월 9일,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¹⁵⁾ 독일 전역 16개 주(州)에서 모인 청소년담당 주(州) 장관(Jugendminister)¹⁶⁾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독일 전 지역의 청소년지원 공무 담당자들에게 각 지역사회 청소년사무소(Jugendamt)에 각 지역의 관할을 넘어서서 학교, 외국인단체, 청소년민간단체, 경찰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계자 모두가 청소년폭력과 외국인폭행에 대한 대책 시행을 위한 작업그룹을 일컫는, “원탁”(圓卓: Runde Tische)을 만들 것을 천명하였다. 또 하나는 독일연방수상인 Helmut Kohl 박사가 계획하고 주재한 “원탁”이었는데, Kohl 수상은 독일 전역의 교회대표자들과 민간복지단체들, 지역사회유명단체들, 그리고 청소년폭력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였고, 여기서 모아진 견해가 바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시민전체의 참

14) 이후의 내용도 지역사회 폭력예방에 관한 독일의 “공격성과 폭력 대항 활동프로그램”(AGAG)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청소년폭력예방 운영팀에서 발간한 ‘지역사회 폭력예방’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다(I. Bohn 외, 1997:15~16).

15) 1997년 봄 독일소년지원사업단체(DKHW)의 조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에 구 서독의 절도·폭력 등의 소년범죄는 42%가 증가했으며 구 동독은 무려 1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 특히 구 동독의 대도시인 Dresden은 같은 기간, 806%라는 끔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G. Brenner, 1997:254~256).

16) 독일의 청소년장관회의는 독특한 독일의 정치체계 중 하나인데 독일은 연방공화국으로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연방(Bund)은 오직 KJHG(어린이·청소년 지원법)의 제정 및 개정과 독일청소년연구소(DJI)에 재정을 지원하는 일 정도만 관여하고 거의 모든 청소년 관련 정책은 16개 주(Land)에서 담당하고 있고, 16개 각 주(州) 정부에서는 청소년 장관을 두어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청소년장관회의’(Jugendministerkonferenz)는 연방정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2~3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년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다.

여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형성하자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구상은 전문기관, 지역사회 대표자들, 주(州) 정부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문정책 위원회 주재하에 당시의 독일연방정부의 ‘여성·청소년부(部)’에서 개발되어 시행되었다. 처음 4개월 동안은 준비기간으로 선택된 지역에서 프로젝트에 따른 활동이 그 지역에 수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시험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폭력”이라는 테마를 공개화하여 행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움직임이 매우 적었던 것과 청소년폭력관련 기관들의 서로 다른 입장들, 예를 들면 경찰과 청소년유관기관들의 인력부재라는 입장들과 특히 지역의 생활조건들에 대하여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앉아서 불러들이기만 하는 편에 박힌 관공서의 구조에 기인하였다.

이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화 프로그램은 독일 전역의 지역사회에 있는 최고 명망 있는 단체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Ulm시(市)의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사회 내 개신교와 카톨릭 구교에 의해서 고무적으로 지원되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작 준비단계인 1995년 2월까지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도화선이 충분하지 않아 1995년 3월부터 모델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전문가인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자(coordinator)를 전문가로 고용하여 상근시키면서 진행과정의 심도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전문적으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요소들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수집하여 아직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사회에 계속 전달하여 관심 있는 지역사회들이 점차 늘면서 그 효과가 진작되기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목적

(1)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목적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목적을 말하자면 먼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와 경험의 교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동조(同調),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의 출현에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우리나라 청소년폭력과 관련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 학교, 정부는 각각 청소년폭력의 책임을 다른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에게 서로 전가하고, 숨겨서 스스로 청소년폭력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도 본다면 청소년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청소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청소년폭력예방은 부모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물론 학교의 교사나 청소년관련 정부기관 담당자 또 민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도자들에게도 스스로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나 가정의 안정과 부모들의 의식개혁이라는 과제는 모든 가정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보다 큰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를 단지 부모에게만 맡겨 놓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국가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무책임한 일이다.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폭력은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요소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청소년폭력의 원인들을 지역의 사회조사분석과 함께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찾아내서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2) 전국적 차원에서의 목적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적

인 조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이 정부가 지난 1997년 6월 청소년폭력 대책회의 이후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반’을 총리실에 설치하고(반장: 사회문화조정관, 7개 부처 국장)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에 ‘대책본부’를, 그리고 대검찰청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추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지방단위에는 시·도에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민·관 합동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는 경찰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비행 및 불량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점점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의 성격이 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구성원들의 참여를 기초로 운영되지 않고 단지 청소년폭력의 전국적인 합동단속적인 성격이 지나쳐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예시한 서울시 노원구의 자치적으로 조직된 지역교회 학부모 중심의 ‘청소년 지킴이 어머니 순찰단’과 청소년 자신들의 ‘청소년지킴이 봉사단 및 기자단’ 또, 경상북도 사회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지난 1998년 4월에 22개반 1,000여명을 편성하여 시·군별 발대식을 가진 ‘학교폭력예방 자율순찰대’를 살펴볼 때에는 아직 미흡하고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각 지역사회에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 모델들의 과정과 경험, 결과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전국의 다른 지역사회에 전하여 하나 둘씩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전국적인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될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의 모델들을 비교·분석하여 최선의 종합적 실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수행과정 개요

(1)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수행과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의 기본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네트워크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진행자(coordinator)와 이 진행자와 함께 청소년폭력예방을 상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이 필요하다. 진행자는 물론 청소년폭력예방의 전문가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폭력예방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자와 같은 경험자가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서 보면 아직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므로 우선 필요한 대로 지역사회 내의 교사들 가운데에서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원¹⁷⁾,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 투입해야 하고 청소년폭력예방 관련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담당하고 이끌어 가는 데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지역사회 내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들이 작은 단위의 지역을 담당하여 기타 다른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⁸⁾ 시

17) 청소년상담원(靑少年相談員)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아직 양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날로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부, 학회, 기타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아직 그 필요성의 시급함에 미루어 청소년상담원이 전문적으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18) 실제로 대검찰청 주재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서는 교회와 검찰이 손을 잡고 검찰복음화협의회에서 98년 8월 28일 서울 봉천동 판악교회에서 '제1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위한 세미나'를 주관하고 이 운동을 전국 교회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 협의회는 운동을 완성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번호를 각 교회가 교회주보에 매주 기재하여 교인들의 자녀는 물론 이웃의 청소년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참여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부를 설치해 교회가 청소년폭력을 추방하는데 앞장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 비록 작은 시작이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을 함께 나누고 실천의 첫걸음을 내 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작단계에서는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결과도 미흡하겠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또 축적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종합하는 가운데에서 그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관련기관들의 임무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들의 지도자들로, 예를 들면 청소년, 학부모, 종교단체, 교사, 민간 청소년단체 및 기관, 전문가(상담원, 정신과의사 등), 경찰, 검찰, 정부기관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지도자협의회’(가칭)를 전문적 지식과 정보로 지원하고 이 협의회 작업들을 자료화하고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수행계획과 지원방법 및 절차, feedback된 결과들에 따른 계획의 수정 및 개선작업 등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기초계획이 여기서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계획된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관련기관들은 이미 앞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단계적 접근방법으로서 L. Winecoff와 C. Powell이 제시한 7단계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이나 J. S. Stumphauzer가 제시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동분석에 의한 문제행동 해결 일곱 단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사회 구조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는 주로 정부의 청소년관련 지원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폭력의 위험요소들과 청소년들의 생활 형편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폭력과 관련되어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사회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욕구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후에는 청소년폭력과 관련된 기관들과 서비스들 그리고 여러 대책들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 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작업의 결과는 지역사회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도자 협의회의 형태와 수행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2) 전국 차원에서의 수행과정

전국 차원에서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기본작업은 역시 지역사회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경험들에 관한 전국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정(査定)하는 일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전국의 프로그램 진행자들(*coordinators*)과 관련기관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일년에 수 차례 회의를 하여 공동으로 전국의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프로그램 수행의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feedback을 위한 평가는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서 나온 평가결과는 중앙정부의 청소년담당 대표자들이 전국의 민·관 청소년관련 대표기관 및 종교단체 등의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다시 전달하고 협의하여 이 프로젝트의 종합적 견해를 공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최종적인 개선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 수행의 전체 조건들이 확정되어야 하고 셋째, 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경험들을 종합·요약한 기본 강령들이 세워져야 하며 넷째, 프로젝트의 궁극적 중요목표인 가능한 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initiative*)들이나 국가적, 사회적 지도력들이 청소년폭력의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를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구성된 네트워크는 작은 정성과 노력 그리고 참여의지와 실천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청소년폭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에서 예로 들었던 서울시 노원구의 ‘청소년지킴이 어머니순찰단’과 ‘청소년지킴이 봉사단 및 기자단,’ 그리고 경상북도 사회교육지도자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자율순찰대’ 구성은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수행과정과 모델제시에 비교하면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첫 시도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청소년폭력 종합대책으로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조사

(1)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분석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분석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초작업 중 하나이다. 모든 지역사회는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인적자원, 물적자원, 사회자원이 각각 다르므로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구조도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사회 구조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서로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현황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어야 그 효과가 높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분석에 관하여 독일의 “공격성과 폭력 대항 활동프로그램”(AGAG) 개발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역사 및 건축구조, 기간산업, 경제구조, 인구구조, 사회적 상황, 교육구조, 사회적 서비스들과 기관들, 생활과 여가 상황, 청소년폭력과 예방 등에 관한 구조분석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I. Bohn 외, 1997:26~27).

- 지역사회 역사와 건축구조: 거주상황(전세, 자택 등), 스포츠 공간, 공원, 놀이터 등, 중심지역의 개발과 변화, 교통연결수단 등
- 기간산업구조: 평지, 거주지, 교통구조에 관한 자료
- 경제구조: 정착된 경제요소들, 직업과 직업교육 상황, 거주민의 직업이동 관련 자료
- 사회적 상황: 빈부 차이, 사회복지구조(연령, 성별, 원인, 복지형태, 기타 수입원 등)
- 교육구조: 학교자료(학교구조, 학교형태, 학교개발, 학생구조), 거주민 학력
- 사회 서비스와 서비스 기관: 탁아소, 유치원, 민·관 청소년관련 시설(청소년클럽, 상담소)
- 생활 및 여가상황: 문화시설(극장, 영화관), 스포츠시설, 수영장, 편의시설(상점, 금융기관), 일상생활장소(카페, 주점), 거주민의 비공식적 만남의 장소

(공공장소, 거리구석 등)

- 청소년폭력과 예방자료 : 경찰 통계, 범죄자의 연령구조, 범죄자와 피해자의 출신성분, 성별관계, 가해자-피해자 구조, 개인이거나 집단비행 형태

(2)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조사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욕구가 어떠한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앞에서의 딱딱한 지역사회 구조분석과는 달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의사와 욕구제시를 통하여 다른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은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구성원들이 표출하는 일종의 욕구불만의 한 형태로 생각할 때 이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특히 실례로, 우리의 IMF 관리체제하에서 공장이나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량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하여 취업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약해지고 외식주에 관련된 삶에 대한 기본적 욕구와 더불어 여가생활 등의 여러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이 지역사회는 전체적으로 폭력의 위협성에 대한 수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여러 신체적·정신적 욕구가 왕성하고 자기통제가 쉽게 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청소년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들의 생활과 의식, 활동, 문제행동 등을 욕구조사를 통하여 미리 감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앞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청소년폭력 발생의 책임과 예방의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결과를 주시하여 지역사회 성인들, 특히 부모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가정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들끼리 관계는 불만정도가 어떠한가를 조사하여 지역사회 내 가정들의 욕구불만의 수위가 높을 때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사회 내 가장 위험한 폭력의 위험요소 중 하나인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가치판단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의 생활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제공해 주는 필수적인 도구로 최소한 객관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구조분석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위의 책, 28).

(3)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실태조사

위의 지역사회 사회구조분석과 구성원들의 욕구조사 다음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들에 대한 수와 종류, 이용자들의 구조, 주변여건들, 비용, 종사자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청소년지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3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서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분석과 청소년시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제목으로 경기지역의 청소년들의 욕구조사와 청소년지원 실태조사를 보고서로 제출했다(도종수 외, 1993). 이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경기도 청소년의 활동과 문제행동,’ ‘청소년 육성여건과 시책 및 사업,’ ‘청소년 시책 활성화 방안’ 등의 소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비록 경기지역의 성인들에 관한 의식 및 욕구조사가 결여되어 있지만 이러한 보고를 기초로 경기지역의 청소년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폭력을 추방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청소년지원의 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세밀히 알고 있을 때 바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위의 경기지역의 조사에서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자들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에 관한 자세하고 다양한 실태를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폭력예방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와 지원 실태에 관한 조사와 함께 경찰서와 관련 공무원들, 종교단체, 시민단체, 긴급전화, 각종 상담 등의 지원실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4) 조사결과와 제시

이렇게 이루어진 조사들이 종합적인 지역사회 실태조사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보고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전문공공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하나의 “지역사회 사회지도(*socialatlas*)”로서 소개되어야 한다. 이 지도에는 앞서 이야기한 사회구조분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조사, 청소년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들이 종합정리 되어야 하며 이 이외에도 앞에서 예를 든 서울시 노원구에서의 ‘청소년지킴이 어머니순찰단’과 ‘청소년 지킴이 봉사단 및 기자단’의 노력처럼 지역사회의 작은 사회적 공간 내에서도 행해지는 구성원들 스스로의 자조(自助) 형태의 각종 지원들도 이 지도의 지표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사회지도”의 용도는 위에서 보고된 경기지역 조사처럼 넓은 범위보다는 특히 중소도시나 읍·면·동 단위의 작은 지역사회에 훨씬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5)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열린 사회공간의 조성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차원의 활동들은 추측이나 분위기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지역상황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대책 모델이라는 의미는 청소년폭력예방의 수행과정의 틀에 관한 모델이지 한 표준 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지역사회는 각 지역사회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각 사회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 기본 모델을 융통성 있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구석구석의 근린생활과 구성원들간의 밀착생활에 대한 의견과 정보들이 개발되어야,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의 사회공간이 열려 있어야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과 공공기관 전체와 공조(共助)를 이룰 수 있고 이는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일을 수행할 시 단순한 원인결과 고찰이나 범죄통계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思考)와 구성원들 중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협조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간에 대화가 없는 지역은 청소년폭력을 비롯한 지역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반대로 이웃간에 늘 대화가 있는 지역은 청소년폭력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문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공감대가 생기고 이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로 의식화하여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알리면서 함께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폭력의 예방과 대책의 수행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피해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성공여부는 이 형성된 네트워크에 얼마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간에 열린 교류가 흐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¹⁹⁾

5)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전제조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진행자(*coordinator*)의 투입이 필요하고 둘째, 현존(現存)하거나 추가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투입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의 홍보자들과 전문인력들을 위한 전문성 고려와 청소년폭력예방사업 전반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계속교육이 있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람들이 공동으로 함께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19) 실제로 우리에게서 청소년폭력 실태에 관한 통계를 볼 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와 학계, 교육부 및 교육청, 경찰 및 검찰의 통계가 제 각각 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청소년폭력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자신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태도로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는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폭력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보다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들이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는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접근할 때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노력하는 의지가 요구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폭력의 예방은 국가에 의하여 고무된 활동들이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와 동맹을 얻어 계획되고 수행될 때만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무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청소년 지킴이 운동’과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미흡하나마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 운동이 국가적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1)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자(coordinator)의 투입

활발한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사업의 진행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주부, 청소년 등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의 형태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원구가 다른 지역사회보다 앞서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원구에는 지난 97년 6월부터 서울특별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지난 1995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청소년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단으로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대표적 청소년폭력예방 관련기관이라 할 수 있다. 노원구의 청소년폭력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도 비록 노원구 지역사회 내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노원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그만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여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자(coordinator)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투입으로 청소년폭력예방의 테마에 관련된 책임 있는 여러 전문 활동범위의 인력들을 의식화할 수 있고, 능력들을 결속할 수 있으며, 청소년폭력예방 대책의 계획과 조직, 수행, 구체적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은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각 지역사회는 이를 양적·질적으로 확보하고 계속적

인 재교육을 통해 개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화를 통한 청소년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취약점인 이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간에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진행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양성과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²⁰⁾ 독일의 “공격성과 폭력 대항 활동프로그램”(AGAG) 개발 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임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L. Bohn 외, 1997:39~40).

발상(發想)과 과정관리 및 조정

- 주변조건들의 분석
- 장애물들과 한계들의 사정(査定)
- 현존하는 지원자들, 프로젝트들, 기관들, 시민단체들 등의 참여형태 가능성 개발
- 폭력예방과정 활동의 아이디어 창출과 해결가능성 기초 지원
- 조직과 계획과 활동진행에 대한 책임

진행조정과 중재(仲裁)

- 여러 사회의 전문인력들과 이니셔티브들의 접촉주도와 계속적 공동작업의 보장
- 조정되고 중재된 전체과정에서의 폭력예방활동의 조율
- 민간과 공무원들의 기관과 단체를 포괄하는 활동에의 고무와 지원
- 폭력예방활동에서의 협동 노력에서 기관들 사이의 갈등의 중립적 중재

전문적 상담과 중개(仲介)

- 사회의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과 정보들의 종합

20)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 청소년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의 청소년폭력을 위한 재교육 연수과정을 마련하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청소년폭력 관련 전문 민간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회공간분석들과 문학, 법, 프로그램과 전문개념들의 조사를 토대로 한 아이디어 수집 공급
- 토론자료들과 작업초안들의 개발
- 사회적, 경찰적 일의 활동범주로부터 폭력예방 관련 지식들의 중개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진행자는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정부기관과의 의사소통과 이용의 길을 쉽게 하고 정보망을 일찍 결성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여러 단체나 기관, 이니셔티브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가 개발되고 진행자들의 활동과 경험들이 확대되면서는 이들만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이 교환되고 각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청소년폭력예방이 평가되며,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다음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논의하는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나온 모든 결과는 이들 자신들과 각 지역사회의 지도자 그룹들에게 feedback 되어서 프로젝트 수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고의 효율을 가진 수행과정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청소년폭력 프로그램 진행자의 임무와 수행과정을 살펴볼 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진행자는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 개발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열쇠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를 전문직업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행자의 역할은 폭력예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고 수행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구조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의 활동영역에서 독립되어 있으며²¹⁾ 동시에 이들 영역에 높은 수용성도 지니고 있는 진행자를 양성 확보하는 것에 프로젝트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

21)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청소년폭력예방의 프로그램 진행자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진행자는 지역사회의 수직적, 수평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어떠한 장애와 압력, 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 청소년상담원, 자원봉사자 등의 층이 매우 얇고, 전문성도 취약하며, 근무조건도 열악한 우리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정부나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현존(現存)하거나 추가적인 자원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투입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의 초기에는 진행 활동들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 자원들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는 외부 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들은 매번 보조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회의나 그룹작업을 위한 공간의 이용이 작업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 이외에 이들에게 지역사회 내 여러 민·관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청소년폭력의 예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들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책임감을 더욱 북돋워 줄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여 투입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프로그램 진행자는 외부에서 투입되는 자원일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고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역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호응이 없으면 지도자그룹과 프로그램 진행자들만으로는 전체 프로젝트의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잘 서로 연결시키고, 참여토록 고무하고 자극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행자들은 이미 현존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간에 망을 연결시켜 주어 유기적인 흐름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제각기 따로 흩어져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지킴이 운동,’ ‘청소년지킴이 어머니 순찰단’과 ‘청소년지킴이 봉사단 및 기자단,’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치단체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경찰의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그리고 교육청의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노원구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진행자를 확보하고, 노원구 지역사회 각 구성

요소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협의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계몽과 참여를 유도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원구에는 이미 지역주민들 사이에 청소년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에 따른 기존의 부분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자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의 홍보자들과 전문인력들을 위한 계속교육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의 질적 발전과 수준 확보의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의 협회와 단체들, 공공기관들과 청소년폭력예방 관련 다른 기관들의 지도자급들은 장기적으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자격이 갖추어져서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관점들이 지역사회 발전계획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속교육의 진행 형태를 살펴보면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초기에는 진행자들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청소년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투쟁을 의식화하며, 계속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한편, 네트워크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특정한 모델지역이나 지역의 지도자 그룹을 겨냥한 행사들, 그리고 때로는 지역구성원 모두가 흥미 있어 하는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교육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진행자나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가운데 전문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계속교육은 프로그램 진행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령, 프로젝트나, 공공기관 및 다른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거나 공조(共助)를 발전시킬 시작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자를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문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초기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결국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6)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독일사례²²⁾

아래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었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를 소개하는데 먼저 대도시의 예로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Nordrhein-Westfalen 주(州)의 수도 Düsseldorf와 다음으로 독일의 전형적인 지방 지역사회 Lüneburg의 예를 들어 그들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행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배울 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Nordrhein-Westfalen주(州) 정부 수도 Düsseldorf 사례

<사례 1> 주(州) 정부 수도 - Düsseldorf

- Frankfurt 사회사업 및 사회교육 연구소(ISS)의 보고 -

Düsseldorf는 중앙관리의 주도적 위치로서,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무역의 국제적 중심지로서, 전문박람회와 문화의 메카로서 최근까지 알려져 있다. 도시는 700년이나 되었지만 19세기말에 와서야 대도시가 되었다. 1964년 이래로 Düsseldorf는 인구가 가장 많은 Nordrhein-Westfalen주(州)의 수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1965년에 세워져 학생수가 21,000명에 달하는 대학에서부터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정부당국이나 기관들에 36,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용자가 있는 주이다.

Düsseldorf는 217Km²로 비교적 작은 도시로 10개구(區)에 49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주민 수는 571,064명이며 그중 89,714명이 외국인으로 독일의 대도시 중에서는 상위에 들지 못한다(1995. 12. 31). 약 443,000 일자리가 도시에 있고 매일 200,000명이 도시로 출퇴근한다.

"Düsseldorf는 상업과 서비스업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심한 구조변화를 겪었다. 모든 일자리의 2/3 이상이 오늘날 서비스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다: 1950년에는 50%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했었으나, 오늘에는 24% 정도에 겨우 가깝다. 그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생겼다: 일자리를 잃는 자로 자력기술이 적은 자는 도심지에서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 (주 수도 언론서비스)

95. 12. 31에 도시에는 32,100명의 실업자(12,2%)가 있으며 그중 8,055명이 외국인이다. 연평균 개인소득 34,006 DM으로 Düsseldorf는 NRW 주(州)와 전국의 도시들과 지역 중에서 선두그룹에 있다(1994년). 1994년에는 28,662명(5%)이 생계지원비를 받았고, 1995년에는 30,050명(5,3%)이었다. Düsseldorf에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11.1%가 사회구제에 의존했고 도시구역간에 차가 컸다: 도시의 10구(區)에서는 거의 4명에 한 명 꼴로 사회구제를 받은 반면 5구(區)에서는 100명중 오직 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해당되었다.

Düsseldorf에는 어떠한 게토(Ghetto) 성격의 공간 분할도 없다.

22) 위의 책, pp. 142~150.

① 모델지역 Düsseldorf의 현황

Düsseldorf에는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지역의 폭력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예방과 안전을 위한 작업그룹”(이후, AK V&S로 표기)과 행동그룹 “Düsseldorf Appell”(이후, DA로 표기)의 두 그룹이 있다. Düsseldorf의 프로젝트 수행자는 DA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초기 임무는 AK V&S와 DA의 지도부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과 이들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일이다.

② “예방과 안전을 위한 작업그룹”(AK V&S)

AK V&S는 1994년에 Düsseldorf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 관공서 그리고 시민단체가 네트워크가 되어 결성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의 대표들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 행정관리국 · 교육청 · 외국인 협의회
- 사회사업국 · 기획국 · 노인 협의회
- 경찰 · 보건국 · 여성사무소
- 청소년국 · 경찰협의회 · 체육국
- DA/ISS 진행자 · 동사무소 · 반(反) 민주주의 대책 전문기구

AK V&S는 4개월마다 모임을 가지고 본부는 시청에 두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경찰, 시청, 예방사업의 전문가그룹의 협동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즉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공동으로 활동함으로써 각 단계와 분야의 노력들을 상호 보완하는 시너지효과가 있도록 조정하는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네트워크 그룹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들을 주고 문제해결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다. AK V&S의 네트워크에는 폭력과 범죄예방을 술선수범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다.

- 약물예방 · 동성연애자 폭력 대항
- 도심가의 일탈그룹들 · 학교폭력
- 외국인들 · 안전 거주
- 스포츠와 안전

③ “예방과 안전을 위한 작업그룹”(AK V&S)에 대한 평가

협력하는 네트워크로서의 AK V&S는 범죄와 폭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심화시켜야만 한다. 또한 지역사회 폭력예방 네트워크 개발의 지도그룹으로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전문영역에서의 수행들을 정하고 이들을 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특히 대책 결정의 효과성과 신속성이 높도록 경찰과 관공서를 주도적으로 가담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볼 때 AK V&S는 지역사회 Düsseldorf의 중심적인 폭력예방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수행과 진행을 조정하는 지도 그룹인 것이다.

④ 행동그룹 “Düsseldorf Appell”(DA)

행동그룹 “Düsseldorf Appell”(DA)은 1992년 폭력예방의 네트워크 시민단체의 형태로 결성되었는데 결성의 동기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인들과 독일인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을 호소하며 만들어졌다. 이 그룹은 계절마다 시청 청사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정보들을 교환하고 활동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정당들과 단체들, 협회, 노조, 시민단체들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속해 있고 여러 도시의 관공서들과 개인 후원금, 그리고 공공 수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1995년부터 앞서 소개한 독일 정부의 범국민적 폭력 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AK V&S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DA는 결성 동기와 같이 지역사회 내 외국인 적대, 인종차별주의, 극우주의에 대항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을 위해 계몽하고, 지원하며 관련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업의 구조는 해당되는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고 예방대책을 전개하는 것으로써 시민단체들의 행동을 지원하고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워크숍과 시민참여의 지원과 고무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24시간 긴급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전화연결망이 이루어져 있는데 10개 구(區)에 17개의 전화망이 형성되어 있고, 기관과 단체들에는 23개의 전화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2개월마다 전화망 대표자들의 모임이 있다.

⑤ 문제점들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폭력예방 활동에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유급(有給) 프로젝트 진행자(*coordinator*)를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그룹들을 제도화하고 법적 형태로 보장받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1995년 3월부터 1996년 말까지 연방정부의 모델로서 시행된 ‘지역사회 공간 내 폭력예방과 폭력 추방’ 프로젝트가 끝난 후 진행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였다.²³⁾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보장 형태의 예방보다는 경찰과 도시 전체가 강압적인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이 있어서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정책이 퇴색하는 위험성이 거론되고 있다.

23) 이러한 독일의 예를 볼 때에 초기에 진행자들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점차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지도자 그룹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을 폭력예방에 관해 교육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Niedersachsen주(州) 지방 구역 Lüneburg 사례

〈사례 2〉 주(州) 지방 구역 Lüneburg

- Frankfurt 사회사업 및 사회교육 연구소(ISS)의 보고 -

① 모델지역 Lüneburg의 현황

주 지방 구역 Lüneburg는 Niedersachsen주(州)의 북동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42개의 동(洞)과 10개의 면(面)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주(圓周)가 300Km에 달하고 면적은 1,323.43 Km²이며 거주인구는 89,986으로 1 Km²당 68명의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전체의 21.5%에 달하고 있다. 10개의 면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19%~23.6%에 달하고 이중 남자가 48.2% 여성이 51.8%로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

Lüneburg는 행정과 상업 지역이고 Lüneburg시(市)는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의 도시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혜택 수혜자 중 50%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약 31%가 생업에 종사하고, 공업과 건설업에 각각 7~8%가 종사하고 있고 5.3%가 유통업에서 일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Lüneburg의 단체와 협회구조인데 1996년의 청소년관련 통계에 따르면 273개의 운영단체에서 365개의 청소년그룹 단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Lüneburg에는 각 동의 지원자 단체로부터 운영되는 9개의 청소년관련 지역사회 기관들이 있고 몇몇의 교회 단체가 있다. 이 이외의 민간단체로부터의 청소년사업은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사업은 단체들과 협회들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극심하게 정부의 공적 참여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② 프로젝트 진행자의 상주(常駐)

Lüneburg의 청소년폭력예방의 성공적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바로 프로젝트 진행자(coordinator)가 Lüneburg의 ISS사무실과 함께 지역 청소년사무소(Jugendamt)에 상주하면서 지역 청소년지원과 보호기관과 계속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확보와 일의 진행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지역의 청소년사무소 기간(基幹)구조가 지역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쉽게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역의 여러 청소년 민간단체들과 협회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일의 수행이 더 쉬었는데, 특히 네트워크 형성 초기에 중요한 지역사회 구성요소들간의 연결에 어려움이 적었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자의 지역 청소년관청에의 직접적 상주

(常駐)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진행자는 네트워크 망(網)의 “거미”와 같은 존재여서 네트워크 안에서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구멍들을 다시 연결하여 있고 메우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주하여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개발, 형성,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③ 프로젝트 진행 지도자협의회와 회원들의 실태

Lüneburg의 프로젝트 진행 지도자협의회는 청소년지원위원회와 진행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청소년지원위원회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프로젝트의 계획과 상태를 점검하고, 지역 청소년관청, 지역 청소년보호단체, 진행자 대표들이 속해 있는 진행팀은 작업의 내용과 개개의 프로젝트들의 직접적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주로 외부의 사항을 담당하여 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진행팀은 구성원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각각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연결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체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와 조직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었으나, 진행팀에 청소년사업의 실천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어서 명예직 대표와 같이 산발적인 프로젝트의 미온적 참여가 실제로 수행과정 중에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협회들의 집중적인 활동은 오직 장기적으로 직접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협회에 단단히 연결된 프로젝트에서만 가능했다.

④ 네트워크의 결과

Lüneburg에서는 이미 연방 정부의 프로젝트 계획 이전인 1993년부터 폭력예방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 왔었다. 따라서 정부의 모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찰, 시 및 Lüneburg지역 청소년관청, ISS에 의해 실시된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계속적인 활동들과 제안들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폭력의 피해자에 있어서 여성 청소년들도 남성 청소년들과 같은 정도로 나타난 것이 특이한 사실이었고, 상대의 공격에 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거의

없었는데, 특히 학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교사들로 구성된 지도자협의회에서는 여성들의 폭력예방에 대한 강화와 전문 청소년사업과 학교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지역사회 폭력예방차원에서 요구되어서 1996년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들이 수용되고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또 다른 결과는 ‘유치원에서의 다름훈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실습생들이 참여하여 이미 입학 전 나이부터 폭력예방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고 이론과 실천에 의한 제(諸) 학문관련 네트워크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이론가와 실천가, 그리고 실습생들은 서로의 영역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실습생들은 미래의 진행자(coordinator)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Lüneburg의 네트워크들과 작업형태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폭력예방을 위한 행위지침이 되어 다른 지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⑤ 폭력예방 네트워크의 전제조건들과 주변여건들

이러한 Lüneburg의 네트워크 결과들에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전제조건들은 제(諸) 학문들의 관련성과 전문적인 능력이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는 많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명이 되어야 청소년폭력의 복합적 원인이 이해되고 그에 따라 다각도로 대책이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개별적인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즉 폭력예방의 네트워크에서의 전문능력이 뜻하는 바는, 네트워크는 오직 직접 해당되는 실천영역과 정치영역이 함께할 때만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30개의 서로 다른 생활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Lüneburg에서 하나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가진 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너무 클 수 있어서 특정한 작업영역들의 연결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한국형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관한 단계적 고찰은 주로 표준화 내지는 이상적인 네트워크 개발의 모델에 관한 언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이론과 실천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이론은 실천을 토대로 생각되어지고, 개선되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렇게 제시된 이론은 다시 실천에 의하여 검증(檢證: *verification*) 되거나 반증(反證: *falsification*) 되고 그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이론 없는 실천 없고, 실천 없는 이론이 없듯이 이론과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변증법적인 발전의 관계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자면 위에서 고찰되고 제시된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폭력 현실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의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출발점이자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의 실천적 적용과 효용 및 실용이 또 다른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결코 이론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의 최고 이상향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는 이들의 변증법적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선진사회에서 제시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이상적 모델이 특수하고, 열악한 제반 환경과 조건의 실천의 장(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이론은 실천에 의해서, 실천은 이론에 의해서 수정, 보완, 개선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앞에서 제시한 단계적인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에 관련된 여러 모델적 제시들은 우리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지금껏 고찰한 것을 종합적 토대로 하여 우리의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에 필요한 관점들만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제도, 일명 ‘컴넷(ComNet) 체제도’²⁴⁾를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보고서의 목적이 우리나라에서의 청

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의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실천적 사례 등을 고찰하여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기대하여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외국의 이론과 실천들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기에,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몽하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이었기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사례에 관한 것은 후속연구로 미루어 제한되었다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과 한계로 다시금 말하고자 한다.

(1)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작업영역들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의 작업은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설사 조그마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계획된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것의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거미줄을 짜고, 엮고, 구멍을 메우는 거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프로젝트 진행자(coordinator)는 가장 좋은 지원의 예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작업영역들의 지원실태와 방법,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청소년전담 정부기관 및 인력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정부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사회 개발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뒤늦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위치는 네트워크 운영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전국의 16시·도와 255개 시군구에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 실상을 들여다보면 광역시 같이 큰 행정구역도 청소년업무만을 단독으로 전담하는 부서는 적고, 있다고 하여도 소수가 업무를 보고 있으며 또 공무원들의

24) 'Community Network'의 약자

순환보직 풍토에 의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이러한 청소년관련 전문 행정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부재는 청소년관련 업무에 소극적이며, 미온적이고, 무사안일주의 식의 근무태도를 유발하여 문제해결의 효과에 지원도가 매우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7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는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도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여러 이유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이미 예시한 것과 같이 독일에서는 지방의 작은 행정구역에도 청소년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작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고 또한 이곳에 네트워크 프로젝트 진행자들이 상주(常駐)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비록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중복과 과중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청소년폭력의 문제가 가정과 사회복지와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여러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적극 동참하여 부족한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조정이 따라야 한다.

② 청소년 및 폭력예방 전담 경찰

위의 청소년전담 기관에 관하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청소년폭력만을 전담하는 경찰이 부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찰은 주로 형사적 차원에서 청소년폭력을 바라보고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우리나라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이란 것은 거의 미미한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경찰의 입장도 거짓이 아닌 상황이기에 결국 인력부재와 국가재정의 부족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 현 실태이다. 그나마 검찰 측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1998년 8월에 서울지검에서 학원폭력 등 청소년범죄를 전담할 ‘소년부’를 신설한 것은 좋은 발전 지향적 사례가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경찰이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

하여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사회 경찰의 책임자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지도자들 위원회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에 최대한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또한 중복 업무일지라도 가능한 한 청소년관련 업무 전담자를 배치하여 경험을 쌓도록 배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정치적 지원

앞에서도 거론하였고 바로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청소년 전담기관이나 청소년 전담인력 배치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역사회의 정치가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하여야 하고 이는 곧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가 개인의 발전에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 정치가의 역량에 따라 사회의 각 부분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재정적 지원만 하더라도 지역사회 정치가의 역량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가의 청소년폭력에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결과는 크게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시의 몇몇 지역사회의 구 위원이나 지방의 시·도 위원들도 청소년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지도자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역사회 각 지도자들이 요청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영역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영역에서는 교육관련 관계자들의 참여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청소년폭력 예방에 관한 재교육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우리의 청소년폭력은 주로 학교 안

밖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교사들이나 학교의 대표자들이 청소년폭력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폭력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감추려 하는 것이 학교이고 대표자들이기에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이의 배후에는 교육청과 교육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결국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폭력의 방지를 위하여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의 열린 사회공간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프로젝트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교와 관계자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한편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의 청소년폭력예방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와 지식, 경험들을 재교육을 통하여 전달하고, 배우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 정치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들은 모든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의 실정에서는 교육장소의 제공과 교육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지역사회 지도자 모임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관련 유경험자들을 찾아내 투입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 대표들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일 수 있는 대표들은 학부모 대표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지난 1998년 8월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서울과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학원문제에 관한 응답에서 놀랍게도 50%가 학원폭력이라고 답하였고, 30%가 사교육문제라고 답한 것을 볼 때 그 어느 집단보다도 부모집단이 청소년폭력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한 곳으로 응집되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서울시 노원구의 '청소년지킴이 어머니순찰대'와 같이 교회신도들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조

그만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학교대표들, 즉 교사를 포함한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동문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와 활동을 하느냐가 관전이다.

⑥ 청소년 대표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과 민간 청소년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들의 자생적·자발적 참여에 의한 청소년 단체나 대표기구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여러 ‘청소년위원회’ 형태가 지역사회 내에도 있고 국가의 정책수립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그 활동범위가 다양하고 매우 넓다. 올해 영국의 버밍햄에서 열렸던 G8 서방강국들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G8의 청소년대표들이 똑 같은 주제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대표회의를 가졌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한 대표 모임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성격의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나 학군제의 실시로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그리고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각 학교의 회장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부모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학교단위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자경대(自警隊) 조직을 권장하고 독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루 빨리 국가적 단위로 청소년들의 민주사회 건설에의 참여기회와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청소년위원회’ 조직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군구의 지역사회에까지 조직되어서 청소년 자을 참여 중심의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야 한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는 다행히도 청소년들

의 자율과 참여에 관한 권리와 활동을 위한 정책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서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⑦ 청소년 기관 및 단체들

우리의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은 YMCA나 YWCA와 같이 전국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작은 단위에게서 이들의 대표자들이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참여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우선 가능한 대도시에서부터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예를 들면 앞서 소개한 서울시 강남구 지역사회 환경지도 책자를 발간하는 등 청소년폭력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남구청소년회관 학원폭력신고센터는 서울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비록 지역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의회와 민간 청소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활동은 아직 미미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청소년기관이나 단체들은 이제 회원 수만을 늘리려는 고답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화와 같은 청소년 프로젝트에 적극적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기관과 단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더욱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⑧ 프로젝트 진행자(coordinator)와 같은 실무자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며 동시에 가장 취약한 영역이 바로 프로젝트 진행자 영역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사회구제와 사회사업이 제도화되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고 이들의 기능은 각기 전문화, 특색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도 청소년폭력이 급증하게 되고 사회문제로 쟁점화된 것이 오래지 않아서 역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도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과 방법 자세 등을 잘 훈련받아 갖추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방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 즉시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투입하는데 공급이 태부족이고,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 청소년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의 청소년폭력을 위한 재교육 연수과정을 마련하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청소년폭력 관련 전문 민간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조속히 제도화되기 이전까지는 각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 특히 가장 시간과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 학부모들 중에서 여건이 허락하고, 사회사업 관련 일에서의 유경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과 열의가 많고 가급적 젊고 학력이 높은 자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위한 최소의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토의와 직접적인 경험을 쌓아 가는 훈련을 통해 또 다른 초보의 진행자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비록 수준은 높지 않지만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주어진 지역사회의 현실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과제

1995년 3월부터 1996년 말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역사회 공간 내 폭력예방과 폭력추방’ 프로젝트가 수행된 후 “공격성과 폭력대항 활동프로그램”(AGAG) 개발 팀에서 전국의 각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폭력예방을 위하여 숙지하여야 할 10대 명제는 아래와 같았다.²⁵⁾

- ① 지역사회 생활세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② 현존하는 자원들의 네트워크화와 협력 추진
- ③ 지역사회 구성원への 권한부여(empowerment) 강화
- ④ 자기책임감의 의식과 사회적 능력의 확대
- ⑤ 성(性)에 따른 작업 차별화
- ⑥ 어린 아이 때부터 폭력예방의 실시
- ⑦ 폭력예방의 홍보자의 이용과 이를 위한 청소년 확보
- ⑧ 청소년폭력예방에 대한 인식 확대와 이해 권장
- ⑨ 긴급상황에서의 지원, 협력부재에의 대응, 시민용기 격려, 폭력예방행동 안전 보장
- ⑩ 대중매체의 참여와 여론사업의 강화

위와 같은 10개의 명제는 비록 독일의 결과이지만 우리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명제를 우리의 지역사회에 적용시켜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 검토하여 응용할 충분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① 지역사회 생활세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청소년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단위로 문제의 해결을 꾀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내의 생활세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는 형사정책적인 폭력예방의 대책은 주로 징계나 통제에 의한 방법으로 사회에 경계심을 갖게 한다는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보다 가치 있는 생활로 그들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잘 이해해서 청소년들의 삶에 즐겁고 기쁜 시간과 경

힘들을 사회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는 이를 위한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② 현존하는 자원들의 네트워크화와 협력 추진

어느 지역사회든지 비록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네트워크가 이미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트워크화를 위한 기존의 자원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협력체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주도적 인사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간단체의 장 또는 YMCA, YWCA 지역사회 지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기존 네트워크나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최대한도로 연결시키고, 이를 수행할 전문적 진행자(*coordinator*)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외부의 전문기관들과도 연계해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③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권한부여(*empowerment*) 강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시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과거 지역사회라는 것이 '새마을운동'과 연관되어 이해되고 실천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에게는 부정적 선입관이 자리 잡고 있고 다른 대다수는 아직 지역사회의 의미와 그의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에 관하여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체제가 중앙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체제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기대거나 이끌려 가는 것이 관습화되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타성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보다는 몇몇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정치가들이나 검찰, 경찰, 기업인들 등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체의식과 참여의식이 시작부터 결여되어 그 결과

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결국은 전시적인 효과만을 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은 하루 빨리 제2의 건국이념 중 하나인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의 권한을 구성원들에게 돌려주고, 특히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폭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한편, 이와 함께 청소년폭력예방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협조에도 많은 권한과 지원을 주어야 한다.

④ 자기책임감의 의식과 사회적 능력의 확대

지역사회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폭력문제에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 문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그의 해당 부모들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이 폭력을 하는지 또는 당하는지 전혀 무관심하다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든지, 폭력사건 발생 전후에 말로나 마음으로만 관심을 표명하고 일체 폭력에 대처한 실천적 행위로 옮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신들도 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결과에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물론 부모와 청소년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교사, 전문가, 청소년관련 단체나 기관에 종사하는 민·관 지도자들 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는 이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의식화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적 능력을 확대하여 이러한 힘이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를 통한 작업의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지도자 그룹은 유념하고 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성(性)에 따른 네트워크 작업 차별화

독일의 청소년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역시 여성 청소년들의 폭력실태는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그 강도와 빈도에 있어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폭력의 형태도 심리적 폭력과 같은 섬세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여학생들의 폭력도 그 강도와 방법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폭력 유형과 닮아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의 심각성이 더해 가지만 아직도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므로 청소년폭력의 예방에 있어서도 그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폭력의 형태 등을 차별화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있게 되는 폭력 상황에서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반응과 대처가 훨씬 예민하고 남학생들의 심리와 크게 달라 심리적인 상처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여학생들에게는 노출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과 같은 감춰진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하여야 한다.

⑥ 어린 아이 때부터 폭력예방의 실시

독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폭력 가해자들의 80%가 이미 가정에서 피해자였다는 사실로 나타났는데²⁶⁾ 이렇게 이른 나이부터 가장 쉽게 폭력적 상황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찍부터 탁아소에 맡겨지거나, 외부인에게 맡겨지면서 더 많은 폭력상황에서 자라게 되고, 또한 일찍부터 TV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폭력의 장면과 방법들에 노출되어서 이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폭력적 상황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의 탁아소나 유치원 등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자들로부터 폭력에 대한 예방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즉 어린 아이 때

26) AGAG(2/1996), *Jugendarbeit Live und in Action* (Berlin : Kupijai & Prochnow), p.17
참조

부터 폭력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과 폭력적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의 통제 및 조절에 관한 훈련을 받게 하고 이를 승화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개발하여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사이에 갈등관계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참으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서로가 양보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특히 일본과 우리에게 심각한 청소년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일찍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주지시키고 상벌을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입력시켜야 한다.

⑦ 폭력예방 전문가를 이용한 홍보와 이를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작업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확보와 이러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겠지만 효과적인 것은 청소년폭력예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전라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최초의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단체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청소년지도사, 종교단체의 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사, 지역 자치단체 청소년기관 공무원, 태권도와 같은 체육관 관장 등을 대상으로 섭외하여 적극 행사에 가담토록 하여야 한다. 이후에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워크숍 등을 통하여 활동의 경험을 쌓게 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도록 실천적 작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교육받고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은 자연히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화에 앞장서게 되고 이를 홍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의 네트워크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폭력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이를 홍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칫 폭력그룹의 청소년들과의 대립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지만 우선 앞서 노원구의 ‘청소년지킴이 봉사단 및 기자단’과 같이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보호받으면서 함께 활동하여 참여자

와 참여활동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뜻을 같이 하는 또래그룹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여 이들을 지역사회 폭력예방의 전문 인력으로 교육시켜서 폭력 없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건설하도록 전문가와 홍보자로 확보하여야 한다.

⑧ 청소년폭력에 대한 인지(認知)와 이해 확대

앞서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아노미 이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인간의 공격성은 외부로부터의 소외나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시도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주변에 소외된 청소년 집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청소년폭력이 대입시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는 학생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수의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폭력의 장소와 시간으로는 어른들의 눈에서 벗어난 어린이 놀이터나 어두운 공원구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성요소들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속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청소년그룹들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발견되면 즉시 네트워크를 가동시켜 그들에게 인간적인 접촉을 시도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 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문화에 연결시켜 주어 그들 스스로가 폭력의 욕구를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⑨ 긴급상황에서의 지원, 협력부재에의 대응, 시민용기 격려, 폭력예방행동 안전 보장

청소년들의 폭력은 미리 계획된 폭력은 흔하지 않고 폭력의 강도도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의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도는 긴급전화로 인한 지원이다.

우리의 검찰에서는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으로 각급 지검·지청에 긴급전화(1588-2828)를 설치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대처를 보여 왔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 가출이나 폭력 관련 신고 1만 1천 여건을 받아 4천 여명의 범죄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을 구속시킨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활동에 관한 평가는 언론에 의존한 까닭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실제로 청소년폭력에 관한 전형적인 형사적·전시적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앞서 소개한, 강원도 양양군이 ‘청소년지킴이’로 위촉한 ‘학교지킴이’는 1994년 최초 ‘청룡우리회’라는 이름으로 태권도장 관장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지역사회의 자치적 조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구성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것에 또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호신술을 익힌 자들이라는 점에서 폭력예방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활동이나 ‘청룡우리회’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다른 청소년폭력 예방활동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 그 힘과 효과가 배가될 것이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⑩ 대중매체의 참여와 여론사업의 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모든 범죄의 여론 보도가 그러하듯이 청소년폭력에 관한 보도도 그의 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순기능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작업의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참여와 여론사업의 강화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여론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실태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하여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대중매체의 참여는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만 최대한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해결책의 강구보다는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유형들 중에서 자극적인 것만을 선택하여 여론을 냉정하게 이끌어 가지 못하고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높이려는 시사적 보도거리에 치우치므로 그 후유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도 청소년폭력예방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동참하여 정부의 전시행정 소개에 치우친 보도보다는 성공적인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를 홍보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집중보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데 보도의 목적을 두어야 하겠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대중매체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

지금까지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작업영역들과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들을 독일에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 결과들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가진 환경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폭력이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학교 내에서 보다 학교 밖에서의 폭력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²⁷⁾ 실제로 대책은 학교 내에 폭력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설사 청소년폭력의 원인이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은 역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풀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청소년폭력의 원인의 절반 이상은 가정에게 책임과 해결대책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의 문제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사적(私的)인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가정 하나 하나를 개체로 보고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적 접근과 대책을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 가정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청소년폭력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가정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세미나, 워크숍, 가족단위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가 가정

27) 교육부의 금품 및 폭행 피해학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996년에는 교내에서 26,499명, 교외에서 115,815명, 1997년에는 교내 40,749명, 교외 198,493명, 1998년 전반기에는 교내 20,299명, 교외 93,943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교육부 제10차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반 회의자료)

하나 하나가 모인 공동체의 분위기와 상호 결속력과 신뢰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위험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의 문제들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과 이를 통한 작업 수행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원칙”이 지켜질 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의 다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고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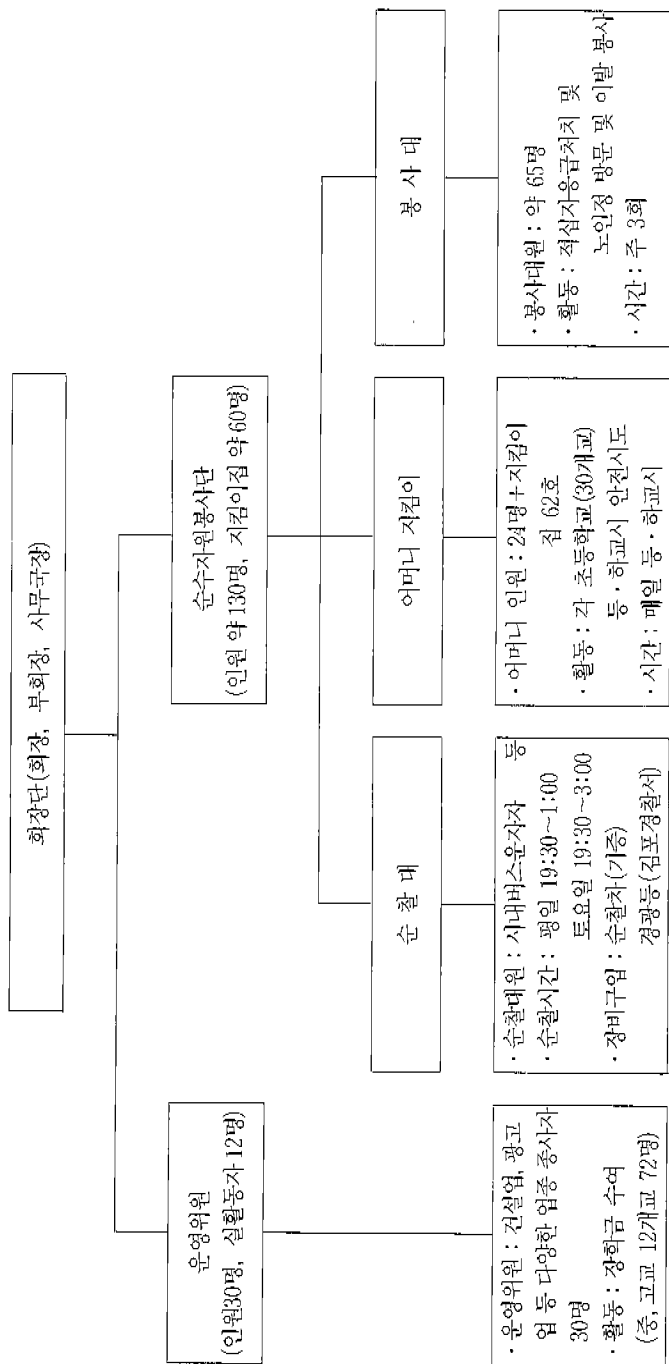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거나 계획 중인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점들을 간단히 지적하며 우리의 최종 목표인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컴넷”(ComNet) 체계를 소개하기로 한다.

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

김포에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틀을 갖추고 운영되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는 처음에는 고려수지침을 배우는 그룹에서 회장단을 형성하고 이를 후원하는 운영위원 30여명 그리고 약 130명에 달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와 지킴이집 약 60여 호가 모여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운영위원들은 처음에는 김포지역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시작하였는데 지역사회 12개 중 · 고등학교의 7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금 까지 건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단은 처음에는 ‘순찰대’와 ‘어머니 지킴이,’ 그리고 ‘봉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찰의 업무는 주로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주축이 되어 평일과 토요일 오후와 새벽까지 순찰을 하고 있고, ‘어머니 지킴이’ 봉사단은 각 초등학교 등 · 하교시의 안전을 지도하였으나 요즘은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봉사대’는 처음에 약 65명 정도가 응급처치 교육과 고려수지침을 교육받은 후 7~8명씩 동별로 노인정을 방문하여 수지침을 놓아주거나 이발 봉사를 주 3회씩 하는 계획으로 출발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활동이 약해지면서 현재는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작할 당시보다 주변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며, 지

〈그림 V-2〉 '정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



역사회 전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그의 활동이 약해졌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는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비춰 주고 또 운영의 문제점을 보여주어 우리의 네트워크 개발에 많은 생각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이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청소년폭력예방 전문 기관으로서 법인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민간사이에서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와 청소년폭력사례집, 전문 상담, 청소년폭력예방 교육실시, 청소년지킴이 운동, 건전 청소년활동 시설 위탁운영 등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화의 시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회장단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의 지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직접 활동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 청소년, 교사, 전문가, 경찰, 검찰 등의 공동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작업 효과가 미흡할 것이 예상되고,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적 고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그 결과 지금은 활동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무엇보다도 김포지역사회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여러 민·관 단체의 지원이 적극 요청되며 이들이 네트워크의 진행자(coordinator)가 되어서 이 활동을 주도하며 각 지역사회 구성요소의 주민들을 참여시켜 활동을 확대하고 이끌어 나아가 갈 것이 요청된다.

②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팀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공동으로 최근에 개발하여 1998년 9월 학교폭력예방 세미나에서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아직 실천적 적용은 되지 않은 이론적 모형이다(이시형 외, 1998). 이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 내 청소년폭력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청소년폭력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중 한 부분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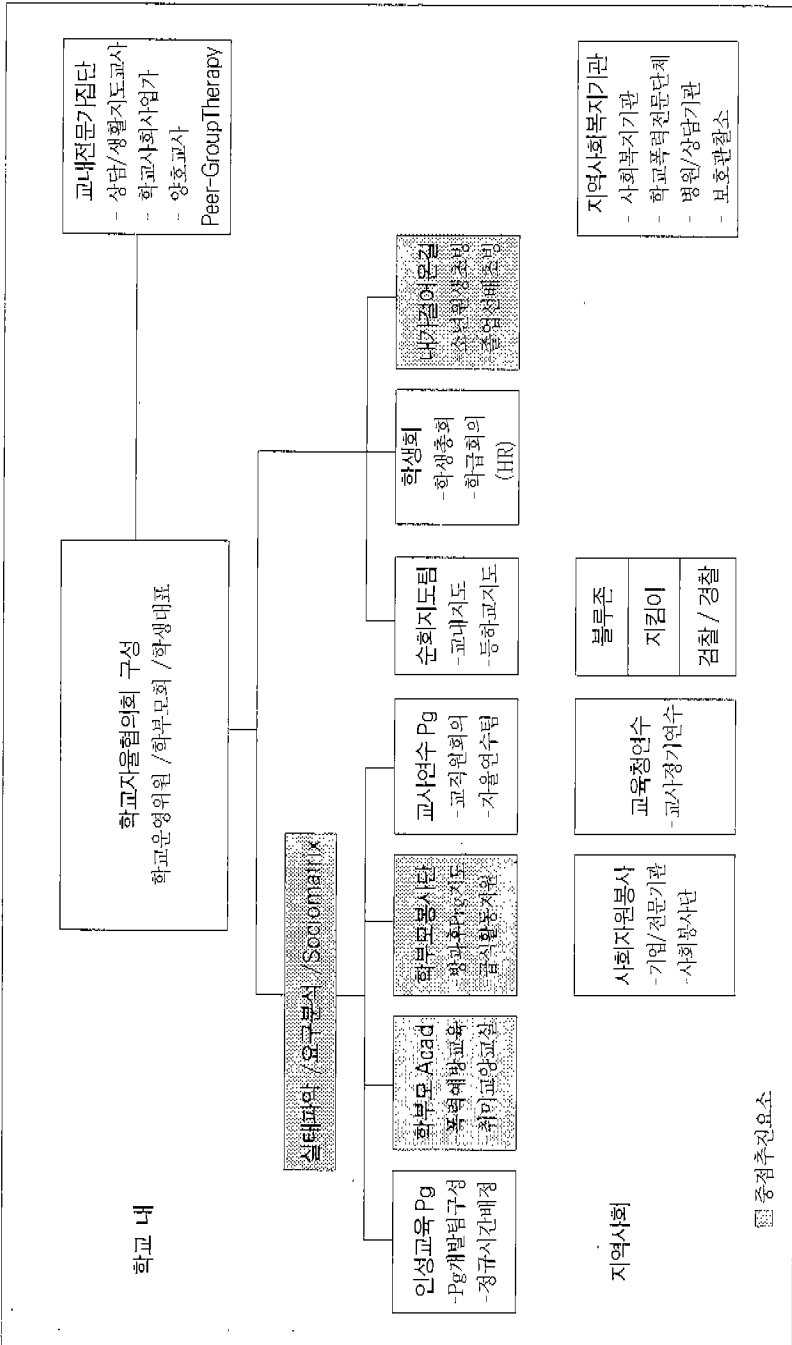
상황이므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그림 V-3〉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 체계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프로그램 수행의 참모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 기구인 학교자율협의회가 지도자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의 구성으로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수행은 크게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에는 외부전문가와 교사가 함께 학생들의 폭력문제를 비롯한 성문제, 진로문제 등의 주제를 테마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고 교내에서 청소년폭력에 관한 교사들의 정보교환 및 폭력실태와 대처방안, Peer-Group Therapy의 이론과 기법 등에 관한 자율적 협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예, 컴퓨터 강좌)을 활성화하여 상호 긴밀한 유대와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 봉사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활동과 방과후 활동이나 급식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학교폭력 빈발지역과 시간대에 교사와 학부모 봉사단으로 구성된 순회지도 팀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토록 하여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회 활동을 강화하여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같은 주제로 HR시간 등을 이용하여 역할극을 준비하는 등 각성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이라는 졸업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그들의 걸어온 삶의 체험에 관한 강연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무를 핵심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coordinator의 역할은 상담·생활지도 교사, 학교사회사업가,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전문가 집단이 맡고 있는데 생활 및 상담지도교사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24시간제 Hot-Line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사회사업가는 외부의 지역사회 자원과 지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초기에 담임교사가 사회성측정행렬

〈그림 V-3〉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 체계도



(sociomatrix)을 통해 파악한 학급 내 학생들간의 관계와 집단형성 및 특성들을 토대로 교내 상담전문교사나 외부의 전문가에게 Peer-Group Therapy를 받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에 연결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부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이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폭력예방재단 등을 통해 일찍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실행되어 온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2Km내의 안전지대인 “블루존”(Blue Zone) 설정이나 ‘지킴이 운동,’ ‘학교담당감사제,’²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등과 순회지도 팀이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그밖에 학부모 봉사단은 지역사회 내 사회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고,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교육청 연수와 연계하며, 교내전문가 집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학교폭력전문단체나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쉼터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연계에 있어서 역시 지역사회 전체를 연결해 주는 활동본부(headquarters)와 서로 연계된 전체의 활동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각 구성요소에서의 지원체계가 통일되고 단시간 내에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수행자(coordinator)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내전문가 집단은 주로 교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담역할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의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성이 취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치단체장의 지원체계가 없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심본부가 되어 있는 것과 학부모와 교사 중심으로만

28) 1998년 상반기 현재 전국의 각 검찰청에서 총 348명의 학교담당 지도점사가 배치되어 학교·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학교폭력 전문기관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범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학교를 선정하며 지역사회의 유능한 선도보호위원으로 운영조직을 보강하여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향이 지배적인 관계로 지역사회 각 구성원들의 참여체계가 미약한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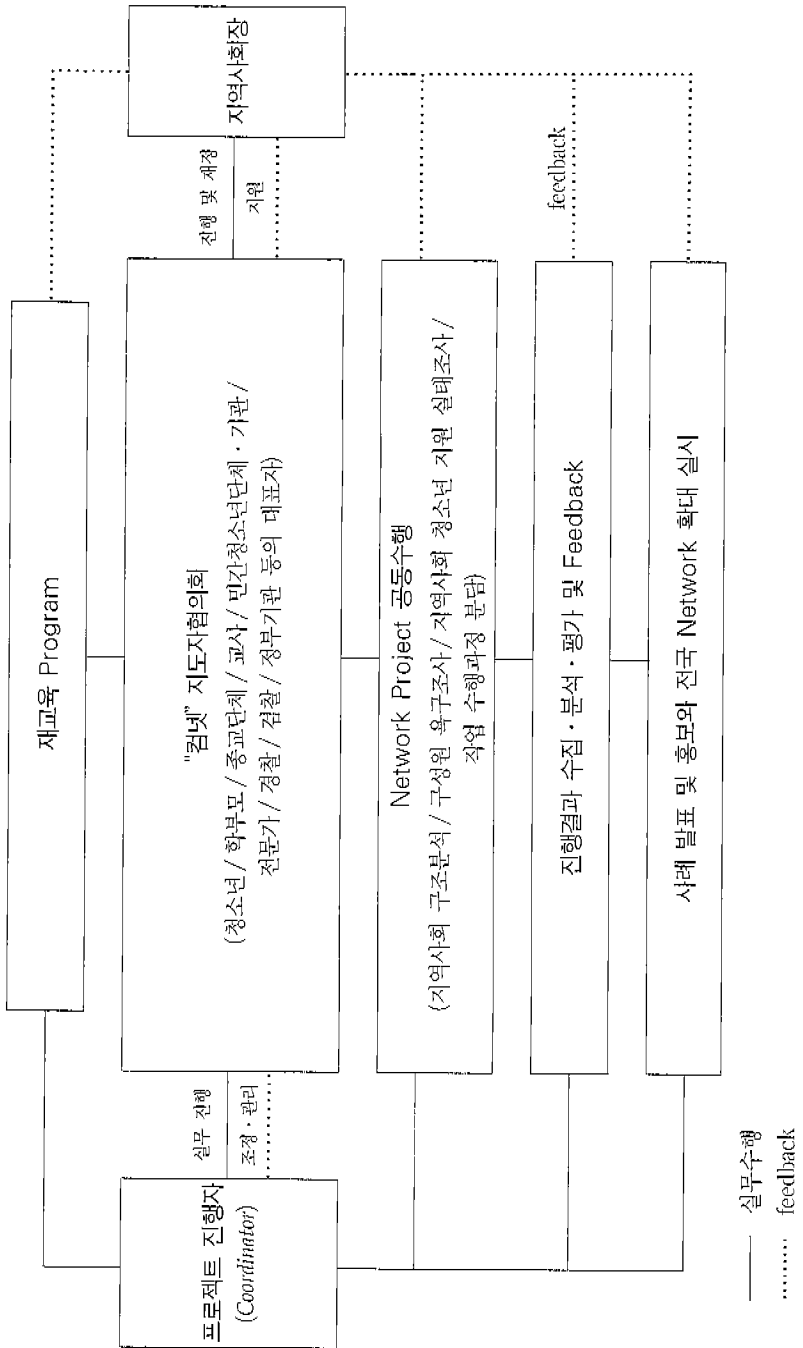
③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

위에서 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와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팀의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서서히 청소년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은 이러한 필요성에 맞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생태체계와 구성체계가 서로 다른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영역과 읍·면·동 지역사회 영역에 차별화하여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읍·면·동과 같이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로 내려갈수록 “컴넷”(ComNet) 체계도에서 제시한 모델을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상위의 지역사회 영역에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자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상호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의 “ComNet” 시스템에서의 각 인력의 구성과 작업 수행 관련 현황과 역할 그리고 책임, 문제점, 구성 및 수행방안들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를 사례로 들어 살펴보면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가 어떻게 김포시 지역사회 전체를 네트워크화하여 ‘김포 ComNet’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A.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의 인력 구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은 이미 앞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에 필요한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그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각 위치에서 직접 참여하여 “컴넷”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지도자 협의회 대표들이

〈그림 V-4〉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체계도



소속되어 있는 민·관 관련단체 및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있고, 네트워크 개발과 네트워크 간 연계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진행자(coordinator), 그리고 이 “컴넷” 체계를 총괄하여 진행과 재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협의하며, 이의 내용을 전달하고 지휘하는 지역사회 자치단체의 장으로 그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④ “컴넷”(ComNet) 지도자 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지역사회 지도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는 앞서 이미 설명했듯이 청소년폭력과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우리의 네트워크 모형들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의 활동과 같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지 않은 작은 부분적 네트워크로 서울시 노원구의 ‘청소년지킴이 어머니순찰단’이나 서울시 강서구의 ‘지역순찰대,’ 강원도 양양군의 ‘청룡우리회’ 등의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민간조직 활동이 그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작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컴넷”의 구성체제에서 보면 하나의 부분 “컴넷”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지역사회에는 부녀회, 학교운영위원회, 노인회, 새마을 운동 조직, 반사회 조직, 청소년관련 단체 및 기관, 청소년관련 정부조직 및 기관, 청소년 자치그룹,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 의사·판사·변호사·기업인 등의 전문가 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조직들이 있다. 이들의 활동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에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의 힘이 하나로 응집될 때에 청소년폭력예방의 작업은 훨씬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김포시 지역사회의 지도자협의회 역할을 하는 회장단의 구성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만 구성되어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요소로부터 지원을 받을 기회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에서는 회장단이 필요 없으며 운영위원 30여명에 회장단도 함께 들어가서 “컴넷”에서처럼 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다양한 업종의 대표자들이 소속된 종업원들 중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청소년폭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장단 대신 김포시도 지역사회 자치단체장인 김포시장이가 중심이 되어 위에서 열거한 김포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들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함께 논의하고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김포시의 네트워크 개발을 천명(闡明)한 후 결성하여 정기적 집회를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예상해 보면 먼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있고 각 구성요소들의 대표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에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중지를 모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지역사회장은 체계도 <그림 V-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기구인 지도자협의회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진행과 재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기능만을 줌으로써 지도자협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각 대표자들의 이해관계는 네트워크화 진행자(coordinator)가 조정하고 화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㉞ “컴넷” 프로젝트 수행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사회 내에는 위에서 열거한 지도자협의회 대표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관 관련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청소년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들의 구성원들이 있다. 지도자협의회가 “컴넷”의 머리라고 할 수 있으면 이들은 수족(手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네트워크의 많은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움직여 주는 정도에 따라 “컴넷”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단위가 큰 곳일수록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의 원인으로 지역의 세대들이 1년이나 2년 주기로 자주 이사를 다니게 되므로 스스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의식과 참여의식이 낮아

서 청소년폭력예방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포시의 경우 시(市)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개발시기에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되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의 네트워크가 성립된 것도 김포시의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김포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 전체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김포시 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를 펼쳐야 하며 이미 조직되어 있는 김포시 지역사회 조직들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이에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이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청소년들의 문제에 청소년들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익히도록 하고 이들이 성장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의 청소년폭력예방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김포시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회장단과 함께 김포시 전역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도자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적극적인 참여 단체나 개인에게는 포상제도 등 참여에 대한 혜택을 주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컴넷” 프로젝트 진행자(coordinator)

“컴넷” 프로젝트 진행자(coordinator)의 역할과 기능 및 책임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하여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읍·면·동과 같이 작은 지역사회 단위로 내려갈수록 coordinator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연역적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 즉, 중앙정부가 진행자의 수급에 관한 총괄 관장을 맡아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자들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유통을 관리하여 점차로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말하자면, 전국의 거미줄과 같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맡을 “컴넷” 프로젝트 진행자인 거미가 거미줄을 짜듯이 전국

의 광역시들로부터 위어 나가면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진행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점차적으로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까지 공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کم넷” 프로젝트의 어려움은 이러한 진행자들이 시작단계부터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작업의 양과 질을 어떻게 확보하며, 이들이 확보되기까지는 어떻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진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요소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회장단의 사무국장이 이 역할을 맡아 네트워크 전문 진행자가 투입될 때까지 당분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진행자들의 상근과 비상근 등에 따른 보수문제와 이들이 전담하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등 많은 비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김포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국 각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사무소의 인력과 공간은 정부의 많은 부서가 서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에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중앙에서 개발하여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인 동사무소에서 직접 동사무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동사무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시·군·구와 같은 더 큰 지역사회 단위에 모여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각 지역의 재정적·교육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큰 지역사회 단위이므로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서울에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본부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작은 지역단위인 동(洞) 단위까지 네트워크 진행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정한 수준이 오를 때까지 미흡하나마 진행

자들의 역할을 말씀으로써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㉔ 지역사회의 장(長)

“컴넷” 체계에서의 지역사회 장의 역할은 “컴넷” 체계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네트워크 수행의 진행과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단위의 네트워크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지역사회 “컴넷” 네트워크 체계의 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적인 위치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혹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컴넷” 프로젝트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도덕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역사회의 장의 삶의 자세에 따라 달라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누구를 위한 일인건 간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장과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지역사회의 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인인 지역사회의 일을 위하여 선출하여 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어야 하는 대표자이기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원들 다수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원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컴넷”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김포시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의 네트워크 경우에도 김포시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김포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 네트워크에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요소 대표자들을 참여시키고 진행과 재정에 지원을 확대하여 청소년폭력의 예방을 위한 “김포 컴넷” 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수행과정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행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과 인력, 프로그램들을 확보하는데 김

포시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지역사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도자협의회 대표자들의 구성시 최대한도로 각 지역사회 구성요소의 대표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정과 중재의 기능을 맡은 진행자(*coordinator*)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B.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의 작업 수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의 작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지도자협의회 대표들이 소속해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작업수행,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각 사례들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축적하고 이들 결과들의 지속적인 각 구성요소들에의 feedback,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험과 결과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발표 및 홍보를 통한 최종목표인 전국의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화 작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작업수행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작업수행은 앞서서 서술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구조분석, 구성원 욕구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실태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팀의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와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에 적용하는 일과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김포지부’ 네트워크와 같이 기존해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컴넷”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이들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김포지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진행자와 함께 김포시의 구조분석과 청소년을 비롯한 김포시민들의 욕구조사, 김포 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실태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이들의 활동을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즉 김포시에 현존하는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학교담당검사제,’ 내무부와 ‘청소년폭

력예방재단'의 '지킴이운동,'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Blue Zone' 설정 등의 지역 사회 청소년폭력예방 활동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⑥ 진행결과 수집·분석·평가 및 feedback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킴넷” 네트워크 작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평가 그리고 이의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와의 feedback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는 좁게는 네트워크의 최종작업인 사례발표와 전국적 홍보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전국 “킴넷”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중요한 사전 작업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모두 협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누구보다도 네트워크 작업의 진행자 (coordinator)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 진행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그리고 feedback 내용을 선별·정리하여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로 나오게 할 수 있으려면 청소년폭력예방의 네트워크에 관련하여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내 작은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들은 이러한 전문적 진행자의 확보가 미흡하므로 이러한 중요한 과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사업의 발전과 확대가 부진한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서 임시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 네트워크의 예를 들면 현재의 네트워크에서 회장단의 사무국장이 서울 중앙본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이 과정을 포함한 청소년폭력예방 전반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과정을 떠맡아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중앙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coordinator의 양성문제로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 청소년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의 청소년폭력을 위한 재교육 연수과정을 마련하거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청소년폭력 관련 전문 민간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킴넷”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㉔ 사례발표 및 홍보와 전국 Network 확대 실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폭력이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고 지역사회가 개발되고 발전되어 지역사회 단위의 생활이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청소년폭력의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지방의 작은 지역사회는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폭력을 미리 예방하려는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은 전국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 청소년폭력과 나아가서는 사회의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컴넷” 프로젝트는 위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작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평가 그리고 feedback의 결과들에 대한 사례발표와 이에 대한 전국적 홍보를 통해 “컴넷” 프로젝트의 최종목표인 청소년폭력예방 전국 “컴넷” 네트워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몇몇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폭력예방 활동은 정부기관들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로 홍보되고 있는 형편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동은 거의 사례발표나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포지부’ 네트워크의 예를 보면 이 네트워크에 김포시 자치단체가 전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시작된 네트워크가 김포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 나아가서는 전국으로 강화되고 확대·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정부 관련부처는 이러한 작으나마 시작단계에 있는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모범사례 발표회를 가지면서 “컴넷”과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VI. 요약 및 결론

청소년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청소년폭력 문제는 폭력에 직접 가담한 청소년들이나 학교, 부모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고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소년폭력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조사의 결과에서도 청소년폭력의 가해자들은 이미 가정을 비롯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부터의 피해자인 것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모두 원초적인 폭력적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청소년폭력의 생득적인 원인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대책을 세우기 전에 청소년폭력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폭력의 원인들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소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을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의 모델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청소년폭력의 개념 정립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청소년폭력에 관한 여러 설문조사의 결과가 서로 다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청소년폭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실태가 분석 평가되고 이에 따라 대책이 마련된다고 볼 때에 청소년폭력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 고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폭력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청소년폭력의 유형, 청소년폭력의 관련자, 청소년폭력의 목적, 청소년폭력의 원인, 청소년폭력의 상황 등 청소년폭력의 개념규정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고찰을 종합하여 요약 정리해 본다면 “청소년폭력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란 특정한 생득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말한다”

라고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폭력적 “공격”(aggression) 성향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폭력의 형태는 크게 물리적, 심리적, 구조적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공격적 행위는 한 특정 개인의 생득적(生得的) 성향이나 아니면 인간사회 속에서의 인간 상호(相互) 간의 작용(interaction) 과정 속에서 생겨난 주변환경으로부터의 반응(reaction) 이나 혹은 이러한 생득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의 복합적 원인이나 하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청소년폭력의 원인에는 인간의 일반적인 공격적 충동과 본능이 청소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충동이론과 본능이론, 인간의 일반적인 공포와 위협,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가 청소년들에게 공격성의 유발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정신분석학적 견해,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모방욕구가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폭력행위도 배워진 것이라는 학습이론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생득적 원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 이론들에서는 인간의 사회화과정에서 있게 되는 사회현상으로부터의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에 따라 청소년폭력을 소위된 일탈행위로 간주하고 있고 한편, 사회적 통제에 따라 인간의 공격성향이 강화되거나 조장된다는 사회적 통제이론에 따르면 특히, 요즈음의 집단적 형태의 청소년폭력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부당한 사회적 통제를 거부하고 그 속에서 상충받은 자기 자신의 동질성을 찾고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좋은 사례라는 것으로 청소년 폭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변증법적인 발전의 관계인 것과 같이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이론으로 청소년폭력의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기는 어렵고 이러한 이론 또한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현상에서부터 다각도로 고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 우리의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책의 현황 및 평가는 청소년폭력의 이론과 실천영역의 발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었기에 기존의 실태조사와의 차별성을 두어 청소년을 설문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서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학부모 288명, 교사 150명, 청소년지도사 84명, 관련공무원(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 시·도 청소년담당과, 소년원, 경찰) 148명 등 670명을 대상으로 1997년 7월에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청소년폭력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폭력의 책임에 관하여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부모라고 보고 있고, 청소년폭력에 책임이 있는 제도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불안한 가정환경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청소년폭력의 원인제공에 가정과 부모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에 있어서도 설문조사된 네 집단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여기는 청소년 폭력예방대책은 항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화한 가정분위기와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청소년폭력과 가정의 상관관계는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네 집단 모두 '청소년들의 비행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는데 평범한 사실이지만 이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주목해서 건전한 청소년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로는 이번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폭력 관련 성인의 대부분이 그의 심각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 자신들은 청소년폭력에 대하여 크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건강한 가정형성에 관한 정부와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비롯한 청소년폭력예방에 관한 대책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먼저,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관련하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의 책임도 있지만, 청소년폭력에 관해 성인들은 청소년 자신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청소년폭력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청소년들 대부분을 부정적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폭력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가정, 학교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 있는 폭력문화, 성인들의 청소년폭력에

관한 개별적 책임의식 부재 및 청소년폭력에 관한 신고의식과 문화의 부재 등에 관한 철저한 자아성찰적인 비판적 의식이 대책수립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기초로 해서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많은 대화,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최대한도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하며 입시교육위주에서 벗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노력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까지 진행된 정부의 청소년폭력 대책을 종합평가 해보아면 정부는 지금껏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실효가 적은 편이며, 대체로 학교폭력에 대해 미온적이고, 특히 IMF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의 해체에 따른 청소년탈선과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전형적인 유관 부처간 상호협조체제의 미흡과 업무 중복에 따른 정책 혼선이 많은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고려한 향후 정부대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면 먼저, 청소년상담 전문가·자원봉사자의 정기적인 학교방문 상담제 등의 학교 내외 상담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활동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단위 청소년보호 전담 행정기관,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신설이 요청되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학교-가정-사회단체-유관기관 간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공조(共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권 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대책이다.

특히 여러 대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책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자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폭력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방 및 해결 방안이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상호주

체적 관계에서의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참여민주주의의 문화 저변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들자면 첫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방향 전환의 주도(主導)하여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며 셋째, 공동 참여 지원체제로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원인과 예방의 책임이 가정과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는 것으로 가장 높게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도 결국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출발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들이 맞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지역사회의 이웃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대한도로 동원하여 먼저 그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개인이나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때 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담당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기회와 지원을 제공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폭력은 여러 청소년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청소년폭력을 청소년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예방하는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전전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상황이나 가해자 개인에게만 집착해서는 문제해결의 효과가 없고 폭력의 원인제공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요소와 청소년폭력 관련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내 위험요소들을 단계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폭력 원인제공의 종합적 분석결과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소년폭력예방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이다. 이는 기존의 가정, 학교, 경찰, 검찰,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해 온 예방대책이 개별적인 노력이거나 중앙정부에서 종합

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도나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폭력대책들은 주로 문제청소년들을 형사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체적 형성과정 및 방법은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분석,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조사, 청소년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실태조사 및 결과 제시,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열린 사회공간 조성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진행자(coordinator)의 투입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폭력예방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문성 고려와 청소년폭력 예방사업 전반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계속교육이 있어야 하며 진행 결과에 대한 feedback과 청소년폭력예방에 대한 대(對) 국민 홍보를 통한 전국적 인식 확대와 대중매체의 참여와 여론사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청소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마련해도 모든 국민들이, 특히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의 이웃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실시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몇몇 청소년폭력 근절대책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국 정부는 청소년폭력예방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에 시간과 재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한편, 청소년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에게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기지 말고 오히려 전국의 각 지역사회 주민들이 솔선하여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도 독일에서 최근에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정,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정부기관, 전문직업인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또

한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이 지난 올해 우리의 제2의 건국이념인 ‘참여민주주의’의 실천과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아쉽게도 청소년폭력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안타깝다. 특히 올해부터 2002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은 그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여 청소년들의 자율과 참여에 관한 이념을 가지고 사업도 청소년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폭 전환되었다. 사실 청소년폭력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아가야 그 의미가 큰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미래의 진보적인 방향은, 비록 청소년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에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네트워크”(Youth Network)가 형성되어서 청소년의 폭력문제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경대(自警隊)를 구성하는 등의 직접적인 참여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결론으로 제시된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은 이러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이 우리의 지역사회에 실천적으로 시범 적용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이 더욱 발전적으로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폭력이 점차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화 사업과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없는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의 안정된 발전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한국 문헌

- 고순철(1995), “지역사회자원 조사방법,”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과 지역사회》(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81~113.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1998. 7. 7), 제10차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반 회의 자료.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6. 26), 미성년자 불법고용근절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 자료.
- 김남선(1995), “지역사회자원의 유형과 활용,”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과 지역사회》(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115~148.
- 김성수(1995),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과 지역사회》(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181~204.
- 김은경(1997),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어떻게 볼 것인가 :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부처,”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9호, pp. 22~29.
- 김준호·김선애(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곽대경(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김은경(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숙·송종용(1994), 《매맞는 아이들》(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도종수 외(1993),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분석과 청소년시책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화체육부 편(1996), 《'96 청소년육성정책 지역공청회》(서울: 문화체육부).
- 박성희(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과 지역사회》(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1~19.
- 신순갑(1998), “청소년 지킴이 운동주체는 지역주민이,” 《좋은세상》 1998/7·8 통권 18호(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pp. 22~25.

- 아사히신문 사회부 편(1996), 박정은 역, 《학교폭력, 당신의 아들, 딸이 무너지고 있다》(서울: 두레박).
- 안선옥(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청소년행동연구》 제3집, pp. 19~36.
-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올베우스, 단(1996),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서울: 삼신각).
- 이민희(1998), “폭력적 인간,” 《청소년행동연구》 제3집(경산: 경산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pp. 5~18.
- 이상오(199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활동>, 청소년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한·일 국제세미나, pp. 95~120.
- 이시형 외(1998), 《함께 가꾸는 신나는 학교 - KISP 학교폭력예방 교내 프로그램》(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숙(1992),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정하성(1996), “지방 청소년육성시책 검토와 발전방향,” 문화체육부 편, 《'96 청소년육성정책 지역공청회》(서울: 문화체육부), pp. 113~213.
- 천정웅(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대화의 광장 편(1997),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7), “'96 학교폭력관련 상담통계 분석,” 《좋은세상》 4월호, pp. 6~11.
- _____ (1998a), “'97 학교폭력관련 상담통계 분석,” 《좋은세상》 4월호, pp. 15~21.
- _____ (1998b),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제2호(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_____ 편(1996a), 《폭력은 싫어요》(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_____ 편(1996b),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윤진(1997), “강남구 청소년 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4권 제1호, pp. 63~85.
- 최충욱(1996), “지방화시대의 청소년육성 전략과 과제,” 문화체육부 편, 《'96 청소년육성정책 지역공청회》(서울: 문화체육부), pp. 143~150.
- _____ 외(1997), 《청소년의 유해간행물 접촉 실태와 비행과의 관련성》(서울: 간행물윤리위원회).
- _____ 외(1998), 《청소년 교육론》(서울: 양서원).

표갑수(1992),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374~408.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2), 《청소년문제론》(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1994), 《가정지도편람》(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일본 문헌

가ートナー, R. (1996), 影山任佐 譯, 《暴力と殺人の國際比較》(東京: 日本評論社).

芹澤俊介(1994), 《子供の暴力, 子供への暴力》(東京: ポーター インク).

小寺やす子(1995), 《いじめ撃退マニュアル》(東京: 情報センター 出版局).

屋久孝夫(1991), 《校内暴力・いじめ》(東京: 黎明書房).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1997), 《青少年白書》(東京: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檜山四郎・山崎森(1983), 《少年暴力の背景と豫防》(東京: ぎょうせい).

■ 영미 문헌

Barnes, J. A. (1972), *Social Networks* (Reading: Addison Wesley).

Brown, Robert M. (1987), *Religion und Violenc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Burbach, H. J. & Decker, L. E. (eds.) (1977), *Planning and Assessment in Community Education* (Michigan: Pendell).

Corvo, Kenneth N. (1997), “Community-Based Youth Violence Prevention,” *Youth & Society*, vol. 28, no. 3, pp. 291~316.

Elliott, D. S. (1994), “Serious Violent Offenders - Onset, Developmental Course and Termination,” *Criminology*, vol. 32, pp. 1~21.

Empey, LaMar T. & Stafford, Mark C. (1991), *American Delinquency* (3rd edition) (The Dorsey Press).

Gruber, Paul (1998), *The National youth network*,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JJDP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Network's Youth in Action #1. March 1998.

H. J. & Decker, L. E. (eds.) (1977), *Planning and Assessment in Community Education* (Michigan: Pendell), pp. 61~81.

- Homan, S. M. (1994), *Promoting Community Change : Making It Happen in the Real World*.
- Kelly, T. K., Huizinga D., Thornberry, T. P. & Loeber, R (1997), *Epidemiology of Serious Violence*, U.S. Department of Justice. Juvenile Justice Bulletin, OJJDP(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ne 1997.
- LeBoeuf, Donni & Delany-Shabazz, V. Robin (1997), *Conflict resolu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JJDP(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Fact Sheet #55 March 1997.
- Mulvey, E. P., Arthur, M. W., & Reppucci, N. D. (1993),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cy : A Review of the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13, pp. 113 ~ 167.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 Casu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 pp. 644 ~ 660 (1-7).
- Olweus, D. 저 / 이동진 역 (1996),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서울 : 삼신각).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2), pp. 329 ~ 335 (12-14).
- Poplin, D. E. / 홍동식 · 박대식 편역 (1985), *Communities - A Stud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Kentucky : Murray) / 《지역사회학》(서울 : 경문사), p. 39.
- Powell, J. C. (ed.) (1995), *Guide for Implement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 C.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Silverman, R. A., & L. Kennedy (1993), *Deadly deeds : Murder in Canada. Scarborough* (Ontario : Nelson Canada).
- Snyder, H. N. (1996), *Addendum to National Juvenile Violent Crime Trends : 1980 ~ 1994* (Pittsburgh, PA :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 Stumphauzer, J. S. (1986), *Helping Delinquents Change : A Treatment Manual of Social Learning Approaches* (New York : The Haworth Press).
- Travis, Jeremy (1995), *Evaluation of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in Middle School*,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pdate), August 1995.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1996), *Reconnecting Youth & Community : A Youth Development Approach*, <http://www.acf.dhhs.gov/programs/fysb/publicat/>

Whitmer, B. (1997), *The Violence Mythos* (New York : State Uni. of N.Y. Press).

Winecoff, L. & Powell, C. (1997), *Community Involvement : A Model for Systematic Planning*. In Burbach.

■ 독일 문헌

AGAG (2/1996), *Jugendarbeit Live und in Action* (Berlin : Kupijai & Prochnow).

Bohn, I., Kreft, D. & Segel, G. (eds.) (1997), *Kommunale Gewaltprävention* (Münster : Votum).

Böttger, A. (1997), "Und Dann Ging So 'Ne Rauferei Los..." in Holtappels (H.G.), Heimeyer, W., Melzer, W. & Tillmann, K.-J(eds.) (1997), *Forschung über Gewalt an Schulen* (Weinheim und München : Juventa) pp. 155~167. .

Brenner, G. (1997), "Neue Diskussion über Jugendkriminalität," *Deutsche Jugend*, 97/6 (München : Juventa), pp. 254~256.

Bründel, H. & Hurrelmann, K. (1994), *Gewalt Macht Schule* (München : Droemer Knauer).

Bystrich, H., Fuchs, U., & Liebermann, B. (1996), *Jugend - Hilfe - Polizei* (Institute f. soz. u. kultur. Arbeit).

Elias, N. (1969),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Bd. I. (Frankfurt/M : Suhrkamp).

Ferchhoff, W. & Olk, T. (eds.) (1988), *Jugend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Weinheim und München : Juventa).

Freud, S. (1920), "Jenseits des Lustprinzips," in Freud, S. (1982), *Psychologie des Unbewußten, Studienausgabe*, Bd. III (Frankfurt /M. : Suhrkamp), pp. 213~272.

—— (1923), "Das Ich und das Es," in Freud, S. (1982), *Psychologie des Unbewußten, Studienausgabe*, Bd. III (Frankfurt/M. : Suhrkamp), pp. 273~325.

- _____. (1930), "Das Unbehagen in der Kultur," in Freud, S. (1982), *Fragen der Gesellschaft, Ursprünge der Religion, Studienausgabe*, Bd. IX (Frankfurt/M. : Suhrkamp), p. 246~247.
- _____. (1933), "Warum Krieg?" in Freud, S. (1982), *Fragen der Gesellschaft, Ursprünge der Religion, Studienausgabe*, Bd. IX (Frankfurt/M. : Suhrkamp) p. 271~286.
- Hacker, F. (1971), *Aggression*. Wien-München-Zürich : Verlag Fritz Molden.
- Holtappels(H. G.), Heitmeyer, W., Melzer, W. & Tillmann, K.-J(eds.) (1997), *Forschung über Gewalt an Schulen*(Weinheim und München : Juventa), pp.63~79.
- Hurrelmann, K. (1995), *Lebensphase Jugend*(Weinheim und München : Juventa).
- Krappmann, L. (1992), "Misslingende Aushandlungen - Gewalt und andere Rücksichtslosigkeiten unter Kindern im Grundschulalter," in *Zeitschrift für Sozialisationsforschung und Erziehungssoziologie* 14 (ZSE) (1994), pp.102~117.
- Krumm, V. (1997), "Methodenkritische Analyse schulischer Gewaltforschung," in Holtappels(H. G.), Heitmeyer, W., Melzer, W. & Tillmann, K.-J (eds.) (1997), *Forschung über Gewalt an Schulen*(Weinheim und München : Juventa), pp.63~79.
- Lorenz, K. (1963), *Das sogenannte Böse*(Wien : Dr. G. Borotha-Schoeler Verlag).
- Tiersch, H. (1995), *Lebenswelt und Moral*(Weinheim und München : Juventa).
- Shorter, E. (1988), "Jugend, Gewalt und soziale Kontrolle in drei Jahrhunderten," in Ferchhoff, W. & Olk, T. (eds.) (1988), *Jugend im internationalen Vergleich*(Weinheim und München : Juventa), pp.45~51.
- Weidner, J., Kilb, R., und Kreft, D. (1997), *Gewalt im Griff*(Beltz).

ABSTRACT

A Study to Develop the Countermeasure Model for Youth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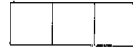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youth violence and to develop the countermeasure model for youth violence. For this purpose, previous studies about youth violence were reviewed and youth-related four adult groups (parents, teachers, youth leaders, government officers) were surveyed.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mmunity Network Model "*ComNet*"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problem of youth violence.

The results of survey about the situation of youth violence are as next. First, all groups answered that the problem of youth violence is serious. Second, all groups answered that they use some kind of violence to youth at their home and/or at their working place. Three-fourth of parents, youth leaders, youth-related officers and four-fifth of teachers use violence to youth at their homes and/or at their work place. Parents and teachers mainly use threats, and youth leaders and youth-related officers mainly use foul languages. Third, they answered that the most responsible group for youth violence is parents group.

The results of survey about countermeasures for youth violence are as next. First, they answered that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youth violence at the family level are the most effective. Second, they answered that 'abolishing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and providing healthy environment for youth' is also very effective to prevent youth violence.

This study presented the Community Network Model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problem of youth violence. The contents of the Community Network are as next. The leader groups of the Community Network are composed of community leaders and all community members shoul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Network systematically. The community Network should be refined and developed to be more suitable to the community situation as it is doing projects in the community.

◆ 부 록 ◆



청소년폭력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청소년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자, 교사, 학부모, 관련 공무원의 견해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나라와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청소년 폭력문제의 해결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 7.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137-715

문의처 : 복지교류팀(Tel:578-7926, Fax:578-9356)

다음은 청소년폭력의 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 표해 주십시오.

1	2	3	4	5
매우 동의	동의하 는 편	보통	동의 안 하는 편	전혀 동 의 안 함

- ①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에너지
가 정상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억압되
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 2 3 4 5
- ②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청소
년들이 심리적 불안이나 무기력감에서 벗
어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1 2 3 4 5
- ③ 가정이나 학교, 매스컴 등 주변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황을 보고 학습하는 것이
다.1 2 3 4 5
- ④ 입시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
우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
게 되어 폭력행동이 유발되는 것이다.1 2 3 4 5
- ⑤ 공격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
성해 자신들의 동질성을 찾고자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1 2 3 4 5

다음은 청소년폭력에 관한 귀하의 의식과 행위를 묻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현재의 청소년폭력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하다
☐ ③ 늘 있는 일이다 ☐ ④ 별로 관심 없다
3. 청소년들은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왜 사실을 말하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해청소년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②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 ③ 부모, 교사 등 주변 어른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므로
☐ ④ 창피하게 생각하므로
4. 다음 중에서 청소년폭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인간의 폭력본성 ☐ ② 가해청소년 자신
☐ ③ 피해청소년자신 ☐ ④ 가정(부모)
☐ ⑤ 학교(교사) ☐ ⑥ 국가(정부)
5. 다음 중 청소년폭력의 발생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제도는 무엇이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불안한 가정환경 ☐ ② 열악한 교육환경
☐ ③ 유해한 사회환경 ☐ ④ 국가정책의 부재
6. 귀하는 가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을 주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위협 ☐ ② 욕설
☐ ③ 체벌 ☐ ④ 모욕
7. 귀하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폭력(언어, 심리적 폭력포함)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안한다 ☐ ② 매일한다
☐ ③ 자주한다(1주 평균 1~2번) ☐ ④ 가끔한다(한달 평균1~2번)

다음은 청소년폭력의 대책과 예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만일 귀하의 자녀가 폭력(성폭력)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___ ① 폭력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 지식
 ___ ② 항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온화한 가정분위기
 ___ ③ 폭력상황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상담활동
 ___ ④ 교사들의 학교주변폭력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___ ⑤ 정부주도의 지역사회 민관 폭력예방 협조체제 개발 운영
9. 귀하는 청소년폭력의 여러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___ ①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___ ② 대학입시제도로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___ ③ 법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___ ④ 학교나 교사가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이 부족하다
 ___ ⑤ 청소년들의 비행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___ ⑥ 폭력에 관한 신고문화와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부족하다
10. 가정에서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다음의 예방 및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서 귀하가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2	3	4	5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 ① 자녀와 많은 대화 시간 갖기 1 2 3 4 5
 ②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1 2 3 4 5
 ③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 운영..... 1 2 3 4 5
 ④ 부모 스스로 올바른 교육관 갖기 1 2 3 4 5

11. 학교에서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다음의 예방 및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서 귀하가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2	3	4	5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 ①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에 의한 개별 및
전화상담 강화.....1 2 3 4 5
- ② 전문가를 초빙하여 폭력에 대한구체적인
대처 교육 실시1 2 3 4 5
- ③ 교사들에 대한 학교주변폭력 인식 및 예
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1 2 3 4 5
- ④ 정기적인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이폭
력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폭력에 대항
하는 학급규칙을 만드는 것.....1 2 3 4 5
- ⑤ 폭력문제에 대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
경찰,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폭력
대책 협의체를 만드는 일.....1 2 3 4 5

12. 사회와 민간단체에서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다음의 예방 및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2	3	4	5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 ①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근절 및 청
소년 인권존중 강화1 2 3 4 5
- ② 유해매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 놀이문화 공간조성.....1 2 3 4 5
- ③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내 업소들을 “지킴
이 업소”로 지정하여 긴급피난처 제공.....1 2 3 4 5

④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참여

유도 및 지역사회조직 구성.....1 2 3 4 5

⑤ 폭력이 빈발하는 현장위주로 활동하는 ‘거

리청소년활동가’(street worker) 양성·지

원1 2 3 4 5

13. 청소년폭력에 대한 다음의 예방 및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2	3	4	5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①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1 2 3 4 5

② 총리실 산하 상설 ‘청소년폭력예방대책

본부’ 설치 운영.....1 2 3 4 5

③ 폭력가해 청소년 및 부모에게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적극활용 1 2 3 4 5

④ 경찰, 지방자치단체, 보호관찰소, 소

년원 등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의 전

문직화1 2 3 4 5

⑤ 정부주도 폭력신고 문화조성 및 계몽1 2 3 4 5

14. 귀하가 알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또한 제안하고 싶은 대책적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① 알고 있는 법·제도 : _____

② 제안하고 싶은 법·제도 : _____

다음은 귀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 ① 남 ____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_____ 세

3. 이 문항은 **학부모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지를 가져온 귀 자녀의 성별과 교급, 계열은? (교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중에서 학부모는 **제외**)

3-1. 성별

____ ① 남 ____ ② 여

3-2. 교급

____ ① 중학생 ____ ② 고등학생

3-3. 계열 (이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만** 응답)

____ ① 인문계 ____ ② 실업계

4. 이 문항은 **교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청소년 관련 업무 재직 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 단위로 응답해 주시고 일년이 안된 경우에는 1년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